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690000-001995-01

#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

DEFENSE ARTICLES  
COST CONTROL  
GUIDEBOOK  
DAPA 2018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690000-001995-01

#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

DEFENSE ARTICLES  
COST CONTROL  
GUIDEBOOK  
DAPA 2018



## 활용시 유의사항

1. 본 「2017년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는 신규·중소 방산업체 원가업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가관리 개요, 비목별 원가산정, 계약 제도로 구성하였으며, 업체 실무자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비목별 계산사례와 원가심사사례, 개정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원가 관련 법규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위사업청 웹사이트(<http://www.dapa.go.kr>)를 통해 공시하는 수정 및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서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특정한 권리·의무를 주장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업무수행 시 계약시점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본 책자 발간 이전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원가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이 점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간사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개청 이래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및 방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1월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하여 방위사업 원가산정의 타당성과 산정절차, 관련법규 적용의 적법성, 산정된 원가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 원가분야는 법체계, 계약방법, 원가산정 방식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각종 회계처리 및 원가, 계약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청 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원가 전담부서와 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신규·중소업체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청은 신규·중소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일반물자 원가관리 가이드 북」을 발간(2016년 개정)하여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방산물자 원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방산업체 실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업무의 전반적 이해와 비목별 계산사례, 원가심사사례, 관련규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합리적인 원가산정으로 원가관리 능력이 증대되고, 능력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쉽게 국방관련 분야에 진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자 발간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원가분야의 업무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매진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2017. 12.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손형찬 

# Contents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



DEFENSE ARTICLES  
COST CONTROL GUIDEBOOK  
DAPA 2018



## 1

### 제 1편 원가관리 개요

제1장 원가의 기초	10
제2장 원가관리 일반사항	13
제3장 방산 원가의 특징	15



## 2

### 제 2편 예정가격 및 기초금액

제1장 예정가격 결정	24
제2장 기초금액 산정	30
제3장 원가산정 업무절차	35



## 3

### 제 3편 방산물자 원가계산

제1장 방산물자 원가계산 일반	42
제2장 재료비 계산	48
제3장 노무비 계산	75
제4장 경비 계산	90
제5장 일반관리비 계산	110
제6장 투하자본보상비 계산	113
제7장 이윤 계산	115



## 4

### 제 4편 방위사업법상 계약제도

제1장 계약관리의 기초 이론	130
제2장 방위사업법상 계약의 특례	132
제3장 방위사업법상 계약제도	137

### 부 록

부록 I. 방위사업청 원가관리 조직	146
부록 II. 원가 심사사례	150
부록 III. 방산원가 관련규정	192





01

## 제 1편 원가관리 개요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

DEFENSE ARTICLES  
COST CONTROL GUIDEBOOK  
DAPA 2018

**제1장** 원가의 기초

**제2장** 원가관리 일반사항

**제3장** 방산 원가의 특징



# 01 제 1편 원가관리 개요



## 제1장 원가의 기초

### 1.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

### 2. 원가와 비용의 구분

- 1) 원가 :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된 경제적 가치
  - 기초원가 : 원가이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
  - 부가원가 :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가로 인정되는 것  
예)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상각완료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 2) 비용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된 경제적 가치
  - 중성비용 :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원가로 인정하지 않는 비용
  - 목적비용 : 비용이 발생하고, 원가로 인정되는 것

### 3. 원가와 비용의 관계



### 4. 원가의 분류

- 1) 기능에 따른 분류
  - 제조원가 : 제품의 제조 및 생산을 위하여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 비제조원가 : 제조원가 이외의 원가로 주로 판매 및 관리활동과 관련한 원가로 제품의 제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수익창출과 관련이 있음.  
예) 판매비와 관리비



TIP

#### ◆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의 구분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직 사원의 노무비</li> <li>•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li> <li>• 공장건물보험료, 수도광열비</li> <li>• 생산부서의 복리후생비</li> <li>• 공장의 세금과공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부서·판매부서 사원의 급여</li> <li>• 본사건물 혹은 비품의 감가상각비</li> <li>• 본사건물의 보험료, 수도광열비</li> <li>• 판매부서의 복리후생비</li> <li>• 본사건물의 세금과공과</li> </ul>

#### 2)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 직접원가 : 특정제품 혹은 특정부문에 직접 관련시킬 수 있는 원가  
예) 자동차의 엔진, 컴퓨터의 경우 CPU나 하드디스크
- 간접원가 :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각각의 제품에 직접 추적 불가능한 원가  
예)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력비, 기계수선비, 보험료 등

#### 3)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

- 변동비 : 조업도(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증감되는 원가  
예) 직접재료비
- 고정비 : 조업도(생산량)의 변화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원가  
예) 감가상각비

### 5. 원가의 구성 및 체계

<b>재료비(직접/간접)</b> <b>노무비(직접/간접)</b> <b>경비(직접/간접)</b>	재료비 :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재료(재화)의 가치 노무비 :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노동력의 가치 경비 : 원가요소중 재료비, 노무비 이외의 원가요소
<b>(제조원가)</b> <b>판매비, 일반관리비</b>	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판 / 관비 : 판매활동/기업의 관리, 유지를 위한 비용
<b>(총원가)</b>	총원가 :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 판/관비
<b>이윤</b>	이윤 : (총원가 - 재료비 - 외주가공비 - 기술료) × 25% * 제조, 구매 : 25%, 수입물품의 구매 : 10%, 용역 : 10% <b>(방산) : 기본보상액 + 위험보상액 + 노력보상액</b>
<b>투자자본보상비</b> <b>세금</b>	<b>(방산) : 총원가 × 투자자본보상비율</b> 세금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b>(계산가격)</b>	계산가격 : 총원가 + 이윤 + <b>투자자본보상비</b> + 세금

## 제2장 원가관리 일반사항

### 1. 원가관리의 의의

#### 1) 회계이론상의 원가관리

설계 및 생산기술을 개선하여 현재 수준의 원가를 절감하고, 절감된 원가수준 달성을 목표로 원가를 통제하는 일체의 관리활동

※ 회계의 분류

구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원가회계)
정보이용자	외부정보이용자	내부정보이용자
목적	외부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내부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보고수단	재무제표	특수목적의 보고서
정보의 특성	과거 지향적	미래 지향적
보고주기	정기적	비 정기적

#### 2) 방위사업의 원가관리

- 적정한 원가산정 및 예정가격 결정에 의한 효율적 예산집행
- 계약제도와 원가계산 기준의 수립 및 법규화
- 진실된 원가자료의 획득
- ☞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한 일체의 관리활동

### 2. 방위사업의 원가관리의 중요성

- 1) 국방획득 예산규모의 증대
- 2) 국방획득 무기체계의 고가, 고도정밀 및 상호운용성 증가
- 3) 국방획득 생산형태의 다양화(제조, 가공, 재생, 정비, 개조, 개량 등)
- 4) 항공기, 전자장비, 미사일 등 고도정밀, 고가장비 위주의 획득체계 변화로 계약 및 원가 관리 업무의 전문성 증대
- 5) 지속적인 설비투자과 신규사업의 개발비용 증가 추세



### 3. 방위사업 원가관리 체계의 특징

구 분	방위사업 원가관리(수요자)	기업 원가관리(생산자)
1. 목표상충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적정 가격으로 구매	이윤 창출 - 높은 가격으로 판매
2. 원가산정 기준차이	정부 원가산정 기준 - 형평성 있는 통일된 기준	기업 원가산정 기준 - 업체 적합성
3. 원가정보 비대칭	수요 주체 - 원가정보 수요자 - 원가정보 획득 제한	생산 주체 - 원가정보 생성 / 관리자 - 원가정보 독점
4. 원가자료 신뢰성	낮은 가격/실적자료 적용 - 확인 가능한 가격 적용 - 감사대비 보수적 성향	높은 가격/예측자료 적용 - 허위/고가자료 제출 사례 빈번 - 최대 이윤 확보하려는 경향
5. 원가인식 차이발생	정상적인 비용 인정 - 정보부족, 적정성 판단 곤란	발생비용 전체 인정 - 업체에 유리한 정보만 제시
6. 원가관리 여건	조기집행 / 순환보직 - 산정기간/실무인력 부족 - 인력에 의존한 관리	전담부서 / 장기보직 - 산정여건/실무능력 - 회계시스템에 의한 관리

## 제3장 방산원가의 특징

### 1. 정부원가계산과 기업원가계산 비교

#### 1) 정부원가계산

- 목적
  - 예정가격결정 기초자료 제공
  - 정부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도모
  - 공공성, 공익성 및 행정능률 추구
- 방법
  - 발생될 원가를 예정하여 계산
  - 불특정 다수 기업에 대한 개별 원가계산
- 원가산정 방법
  - 재료비 :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 통상적인 구입가격 등
  - 노무비 : 시중 노임단가(방산 : 실 발생 노임단가)
  - 경 비 : 특정 비목 한정
  - 일반관리비 : 광고선전비, 대손상각, 접대비 등 판매성격비용 부인
  - 이 윤 : 전 업종 일정률 적용(방산 제외)

#### 2) 기업원가계산

- 목적
  - 재무제표작성 기초자료 제공
  - 정부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도모
  - 공공성, 공익성 및 행정능률 추구
- 방법
  - 실제 발생된 원가를 계산
  - 당해 기업 종합원가계산 / 개별원가계산

- 원가산정
  - 재료비 : 구입가격 적용
  - 노무비 : 실발생 노임단가
  - 경 비 : 실발생 전 비목 인정
  - 일반관리비 : 판매성격 비용 인정
  - 이 윤 : 업체 자체 설정이윤 적용(금융비용 등 포함)

## 2. 기업원가와 방산원가 비교

구분	기업회계	방산물자
적용법규	일반기업회계기준 (or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방법 : 기초재료재고액 + 당기재료매입액 - 기말재료재고액</li> <li>• 재료의 소비수량 : 계속기록법 계산, -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재고 조사법/역산법으로 계산하고, 둘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li> <li>• 재료의 소비가격 : 취득원가로 계산하며, 동일재료의 취득원가가 다를 경우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 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방법 : 소요량 × 단위당 가격</li> <li>• 재료의 소요량 : 정상적인 작업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정미량에 손실량, 시료량, 불량량을 포함하여 산출</li> <li>• 재료의 단위당 가격 : 원가계산시점에서의 통상적인 구입가격 또는 구입가능가격</li> </ul>
	간접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 : 보조재료비, 소모공구, 비품비</li> <li>• 계산방법 : 일정기간의 발생실적을 근거로 하여 적정한 배부기준에 의해 계산</li> </ul>

구분	기업회계	방산물자
직접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무비 : 당해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여 계산</li> <li>• 작업시간 또는 작업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노무비는 실제작업시간/실제작업량에 임률을 곱하여 계산 - 임률은 개별임률/평균임률</li> <li>• 상여금 또는 특별수당 등과 같이 월별, 분기별로 지급금액 또는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노무비는 회계연도 중의 원가계산기간에 안분하여 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방법 : 노무량 × 노무비단가</li> <li>- 노무량 : 제조과정별로 투입인원 시간 및 제조수량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집계하여 산출</li> <li>- 노무비단가 : 원가계산시점에서의 실지급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의 합계액</li> <li>- 기본급 : 업체 실지불 실적을 조사하여 계상</li> <li>- 제수당 : 업체 실지불 실적을 조사하여 계상</li> <li>- 상여금 : 업체가 실제로 지불하는 상여금 인정</li> <li>- 퇴직급여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에 1/8범위내에서 업체가 설정한 퇴직급여설정액을 인정</li> <li>* 다만, 당해업체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액 범위내에서 퇴직보험료 납입액을 추가 인정</li> </ul>
	간접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방법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li> <li>- 간접노무비율은 매년 업체별 (공장별)로 산정, 적용</li> </ul>

구분	기업회계	방산물자	
경비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비는 제조원가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세부과목을 구분하여 개재</li> <li>경비는 당해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여 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목별 직접계산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시운전비, 공식행사비</li> </ul>
	간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 또는 수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실제시간/실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계산</li> <li>※ 외주가공비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 제품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주가공비는 당해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여 계산</li> <li>- 외주가공비는 그 성격에 따라 재료비/경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과목으로도 기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산방법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간접경비율</li> <li>- 간접경비율은 매년 업체별 (공장별)로 산정, 적용</li> </ul>
일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회계기준 제43조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산방법 : 제조원가(관급재료비 포함) × 일반관리비율</li> <li>- 일반관리비율은 매년 업체별 (공장별)로 산정, 상한율 범위내에서 적용</li> <li>※ 상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립공사 : 100분의 6</li> <li>- 화학, 섬유 등 : 100분의 8</li> <li>- 조립공사 : 100분의 7</li> <li>-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li> </ul> </li> <li>⇒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를 가산한 율을 상한으로 함</li> </ul>	

구분	기업회계	방산물자
투자자본보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산방법 : 투자자본보상비 = 총원가(관급재료비 포함) × 투자자본보상비율</li> <li>- 투자자본보상비율은 매년 업체별로 산정</li> </ul>
이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가격에 의한 이윤발생 : 이윤 = 판매가격 - 총원가</li> <li>판매가격 결정시 : 총원가 + 희망이윤 = 판매가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액 산정 : 기본보상액 + 위험보상액(기술적, 계약위험) + 노력보상액(계약수행, 설비투자, 원가절감, 경영노력)</li> </ul>

### 3. 비용분석과 원가산정 비교

구분	비용분석	원가산정
필요성	획득단계/사업유형별 적정 비용 추정, 불필요한 비용지출 방지	계약가격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관련근거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 관계법령
대상사업	주요 전력투자비 사업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사업
기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학적 추정법</li> <li>- 매개변수(전산모델) 추정법</li> <li>- 전문가 비용 추정법</li> <li>※ Top-Down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요소별로 실적자료(예측) 서면심사, 현장실사 검증 후 적용, 원가산정</li> <li>※ Bottom-up형태</li> </ul>
활용범위	계획, 예산, 사업주관부서 의사결정	계약당사자간의 계약가격 결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의 비용분석자료, 유사장비 비용 분석자료 등 활용</li> <li>- 독립적인 분석기능이나 정확성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 실적/예측자료 활용</li> <li>- 정확성은 높으나 업체자료 신뢰성 검증 곤란</li> </ul>

**TIP**

◆ 용어의 정의

▶ 제조원가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는 제외한다.

▶ 총원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부품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

▶ 관급품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부품 등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치공구·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 개산원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 정산원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할 때에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 사양품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견품·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 계산가격

총원가에 이윤과 투자자본보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비용분석

사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 및 운영유지비를 분석,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본 현재가로 산출하여 대안별 총 순기비용을 집계 비교하는 분석을 말한다.

MEMO



MEMO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02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

DEFENSE ARTICLES  
COST CONTROL GUIDEBOOK  
DAPA 2018

## 제 2편 예정가격 및 기초금액

제1장 예정가격 결정

제2장 기초금액 산정

제3장 원가산정 업무절차



# 02 제 2편 예정가격 및 기초금액

## 제1장 예정가격 결정

### 1. 예정가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에 앞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

### 2. 예정가격 작성목적

- 계약목적물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의 담합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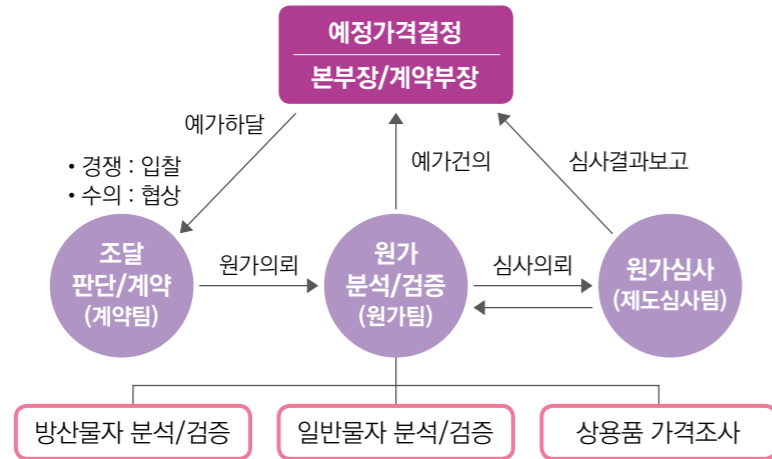
### 3. 예정가격 결정기준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실례가격)
-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3)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4. 예정가격 결정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예정가격(원가)에 미치는 영향
계약수량의 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방법 및 비용 변동</li> <li>• 생산규모별 생산방법 변경, 고정비 부담 증감, 작업준비 시간 증감, 재료 구입가격의 증감(최소발주량 등 고려)</li> </ul>
계약이행 난이도 및 긴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의 위험 부담정도 및 복잡 곤란성 정도</li> <li>• 생산비용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 급구매에 의한 고가 구입 → 재료비 증가</li> <li>- 고용인원 증가 → 노무비 증가</li> </ul> </li> </ul>
수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조업도 변동으로 고정비 부담정도 차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황 : 시설부족 현상으로 이익 많은 수요처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참여 기피, 가격저항</li> </ul> </li> <li>- 불황 : 여유시설 발생, 고정비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 적극참여, 저가투찰(손익분기 수준까지 하향)</li> </ul> </li> </ul> </li> </ul>
계약조건 및 기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관리상 예산액 범위 내 결정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부족의 경우 예산추가 확보/물량조정 필요</li> <li>- 예산(본조, 국채, 선금금 지급 유무)</li> </ul> </li> <li>• 원시 적용자료의 신뢰성 : 오판/수입면장, 견적서/세금계산서 등</li> <li>• 업체 제시자료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의 원가회계시스템, 내부통제/외부감사제도, 과거실적 자료 (실적원가, 예가, 계약가 결정관계) 등</li> </ul> </li> <li>• 계약형태 : 확정계약, 개산계약(개산원가/정산원가)</li> <li>• 기타 : 국산화 유도, 긴급조달요구,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li> </ul>

### 5. 예정가격 결정절차



- 접수/검토**
  - 조달판단서 접수 (계약팀 → 원가팀)
  - 원가산정 구비조건 점검(요구내역, 납지, 조달원 등)
  - 원가작업 판단(가격조사, 원가계산)
- 기초자료 수집**
  - 원가 기초자료 수집 / 물가조사
  - 감손율, 제비율 등 기준자료 검토
- 대상업체 현황파악**
  - 조직도, 인원현황, 사규, 임금규정 등
  - 제조공정도, 배치도, 회계시스템
  - 시설현황(기계배치, 자산대장 등)
- 자료검토확인 기준자료분석**
  - 재료소요량 / 단가, 노무공수 / 임률
  - 제 증빙자료 점검 / 적정성 검토
  - 현장 원가자료 획득 / 실사확인(기준/단량 책정)
  - 비용분석 / 개발단계 자료적용 적합성 검토
- 원가분석/검증**
  - 원가요소별 집계 → 원가분석/검증
  - 예정가격조서 작성

### ◆ 원가심사대상

구분	확정원가심사	정산원가심사
심사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0조(개산계약)</li> <li>•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li> <li>•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1조(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li> <li>• 「원가계산관리지침」 (제4장)</li> </ul>	
심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이전, 주임계약관 소관 품목의 확정계약원가</li> <li>*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회계연도 내 추가조달 동일품목</li> <li>- 일반물자 경쟁계약 품목</li> <li>-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 대상품목</li> <li>- 최근 5년 이내 연속 계약된 품목중 과거 3개년동안 원가심사 의견이 없었던 계약품목은 원가심사 제외</li> </ul> </li> <li>• 조달요구금액 50억 원 이상 방산물자 품목의 수익계약 대상업체 공통원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한도액계약,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한도액성과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정산원가</li> <li>*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품목의 정산원가심사는 최초 정산분에 한함</li> <li>-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정산원가는 신규 계약 및 조달요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계약을 대상</li> </ul> </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계약으로서 소관계약관 또는 원가회계검증단장이 요청하는 품목</li> <li>• 심사 의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원가심사 실시 가능</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심사 대상이나 계약소요시기 촉박 등으로 적기에 원가심사 의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임계약관 또는 원가회계검증단장의 승인을 받아 먼저 계약을 체결 후 계획지원 부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li> <li>• 원가심사 의뢰사업과 연관되어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원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li> </ul>	



**TIP**

◆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국계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바목)
- ▶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국계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 ▶ 협상에 의한 계약(국계법 시행령 제43조)
- ▶ 개산계약(국계법 시행령 제70조)

◆ 소액품목(2천만원 미만) 가격결정방법

- ▶ 관련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장 제 2절 제2관(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
- ▶ 가격결정방법
  - 의뢰시점의 가격자료 : 전문물가조사기관 공표가격, 법령에 의하여 통제된 가격, 견적가격 등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을 적용가격  
: 최근 계약실적가격 ×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당해 계약 체결을 위하여 가격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의 기간 중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당해품목의 해당업종 생산자 기본분류 지수(중분류) 등락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격
  - 계약금액 확정
    - 원칙 : 가격분석서의 최저가격 적용
    - 예외 : 가격분석서 최고가격을 상한으로 하여 견적가격 적용
- ※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요령 참조

◆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을 적용방법

- 물가지수 분류는 기본분류지수(중분류)를 적용한다.
-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에 의한다.
- 물가지수 등락분은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최근계약실적)이 속하는 월로부터 당해 계약 체결을 위하여 가격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까지의 기간중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예시

- 품 목 : 000(금속제품)
- 가격분석서 작성 일자 : '17. 10. 10
- 최근 계약실적
  - 계약체결일자 : '16. 5. 20
  - 계약실적단가 : 100만원

《 풀이 》

- 물가지수 : 금속제품(D10)
  - 계약체결일자 : '16. 5월 : 91.4
  - 가격분석서 작성하는 월에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한 날('17. 8월) : 93.4

• 계산

$$1,000,000원 \times \left( 1 + \frac{93.4 - 91.4}{91.4} \right) = 1,021,881원$$

◆ 물가지수 검색방법

▶ 국방통합원가시스템(원가정보) > 입력 원가정보 > 물가지수

보고서 번호 : PF\_002      **생산자 물가지수 현황**      날 짜 : 2017/10/06  
 담당자 ID : ohk01      페이지 : 1 / 14      시 간 : 18:07:49

순번	연 월	국가코드	국가명	자료구분	기능구분코드	기능구분명	물가지수	기준연도
1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009	009-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109.17	2010
2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C12	C12-비금속광물	121.04	2010
3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0	D00-공산품	95.84	2010
4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1	D01-섬유 및 가죽제품(2010)	114.42	2010
5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2	D02-목재 및 종이제품(2010)	110.05	2010
6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3	D03-석탄 및 석유제품(2010)	72.82	2010
7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4	D04-기초화학제품(2010)	81.05	2010
8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5	D05-합성섬유 및 합성고무	94.90	2010
9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6	D06-화학섬유(2010)	80.17	2010
10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7	D07-기타최종화학제품(2010)	105.90	2010
11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8	D08-플라스틱제품(2010)	103.35	2010
12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09	D09-고무제품(2010)	111.18	2010
13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10	D10-금속제품(2010)	102.83	2010
14	2017/07	KR	대한민국	제조업생산자물가지수	D11	D11-일반기계(2010)	108.46	2010



## 제2장 기초금액 산정

### 1.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산정하는 가격으로서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기초금액 산정방식에는 가격조사방식과 원가계산방식이 있음

### 2. 기초금액 산정체계

유형	대 상	
가격조사	거래실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li> <li>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 물가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li> <li>계약담당공무원이 20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조사, 확인한 가격</li> </ul>
	감정가격 등 ① 감정가격 ② 유사한거래 실례가격 ③ 견적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li> <li>「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무를 행하는 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li> <li>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li> <li>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li> </ul>
원가계산	원가계산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물자 원가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당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li> </ul> </li> <li>방산물자 원가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계약의 경우</li> </ul> </li> </ul>

### 3. 기초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1) 의의 : 경쟁계약 입찰품목에 대한 기초예비가격 결정, 사전 공개
- 2) 제도도입 배경 : 예정가격 누설에 대한 의혹 해소,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 3) 내용

구 분	내 용
대 상	경쟁계약 전 품목
공개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기초예비가격,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공개 일자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입찰 2일전)
복수예비가격 개수/산정범위	기초예비가격 ± 3% 범위내 15개 산정
예정가격 결정방법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 추첨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

#### 4) 기초예비가격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 기초금액 산정 : 가격조사금액 또는 원가계산금액
-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의 산정범위 결정
  - 기초예비가격 결정, 복수예비가 산정 범위 ±3%이내 결정
- 정보공개
  -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 (www.d2b.go.kr)에 기초예비가격, 복수예비 가격의 산정 범위
- 복수 예비가격 15개 결정
  -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random방식에 의해 결정 (1~15까지 숫자로 보여짐)
- 업체가 선택한 복수 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 결정
  -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마다 2개 번호 선택, 다수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이 예정가격으로 결정

**TIP**

◆ 용어의 정의

▶ 고시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경쟁입찰에 있어서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음)

▶ 추정금액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예비가격

경쟁계약 입찰품목에 대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

▶ 복수예비가격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random방식으로 15개를 결정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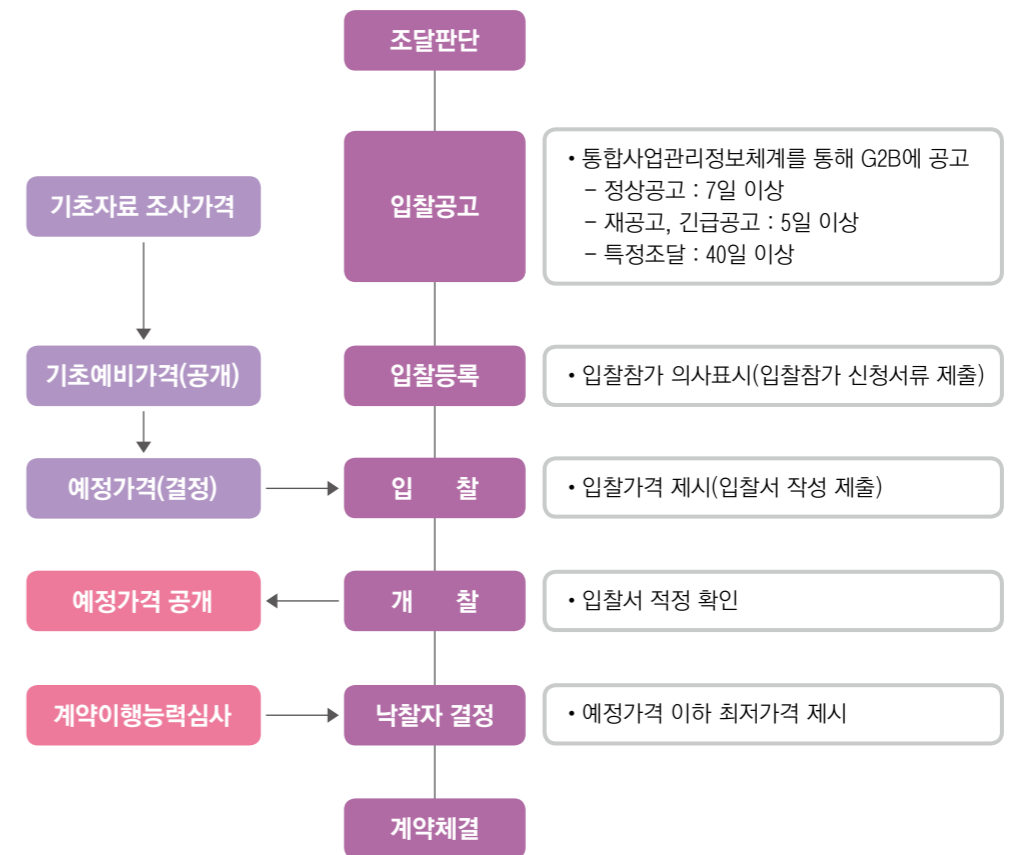
▶ 구분회계

방산업체가 민수와 방산 또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원가회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민수와 방산을 구분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방산자산목록, 각 제품별 원가계산보고서 등의 작성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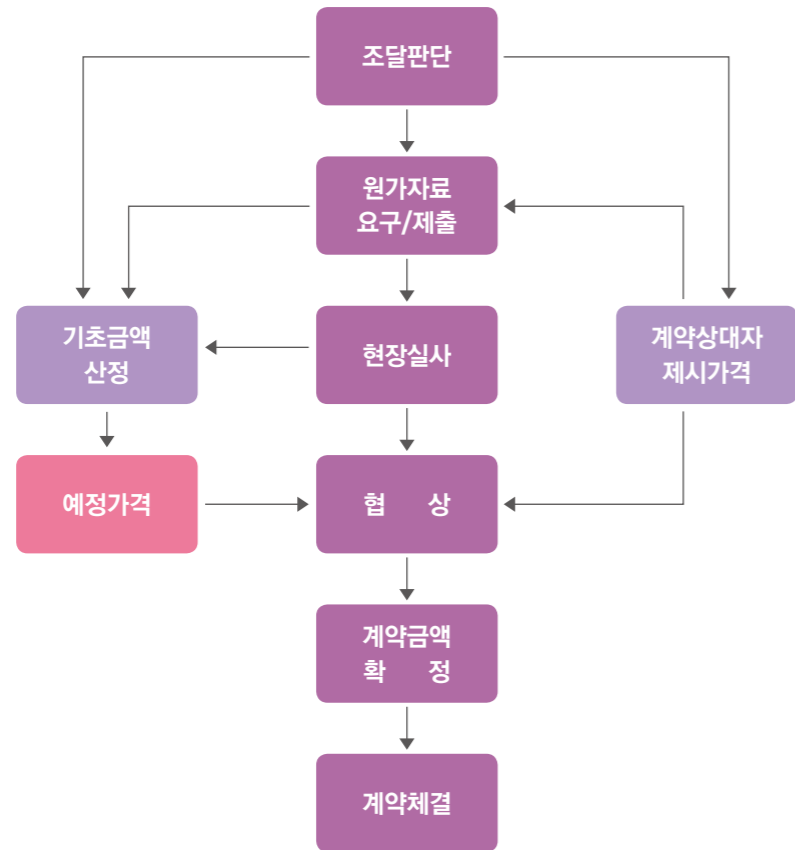
4. 계약가격 확정

계약가격의 확정방법은 계약방식에 따라 경쟁계약의 입찰에 의한 계약 가격 확정과 수의계약의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의 확정이라는 두가지 유형이 있음

1) 경쟁계약의 계약가격 확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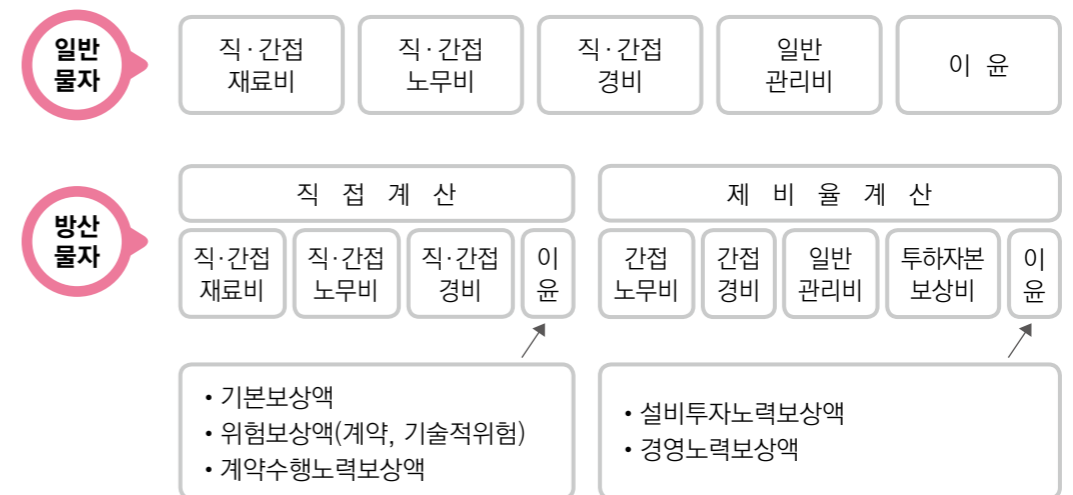


2) 수의계약의 계약가격 확정절차



제3장 원가산정 업무절차

1. 업무 흐름도



## 2. 주요업무 수행내용(공통부문)

수행절차	업 무 수 행 내 용
조달판단서 접수/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부서 계약팀 → 원가검증단 해당 원가분석팀</li> <li>※ 조달판단 즉시 원가산정 의뢰</li> </ul> </li> <li>■ 판단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대상업체, 계약방법, 납기, 납기, 계약특수조건 등 확인</li> <li>•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실적단가 + 물가상승분 고려)</li> <li>• 재료 공급방법 (관, 사급) 확인</li> <li>• 사전 품질보증 지시여부 확인</li> <li>• 국산화개발여부 확인</li> </ul> </li> </ul>
규격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요구 제품규격과 부합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입재료의 규격내용 확인 (재료목록, 재질, 치수, 중량 등)</li> <li>• 재료 소요량 명시여부, 가공방법</li> <li>• 포장규격(포장방법 등) 확인</li> </ul> </li> <li>■ 규격형태(정부규격, 사양, 현품) 및 기존 규격의 수정여부 확인</li> <li>■ 현품 구매 시 현품 확인</li> </ul>
조달실적 자료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실적자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원가, 예가, 계약가, 계약방법, 계약업체 등</li> <li>※ 정부기관 및 부대조달 계약실적자료 확인</li> </ul> </li> <li>■ 제조방법 변경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작 → 외주 / 외주 → 자작 전환 여부 확인</li> </ul> </li> <li>■ 재료 구입형태 변경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구입 → 수입 / 수입 → 개발여부 확인</li> </ul> </li> </ul>

수행절차	업 무 수 행 내 용
원가산정 방법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실례가격이 있는 경우</li> <li>•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격, 유사물품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li> <li>* 2000만원 미만 소액품목 가격분석서 작성(예가생략)</li> </ul> </li> <li>■ 수입품 원가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완성품, 수입재료 단가 적용</li> </ul> </li> <li>■ 원가계산 :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물자(국계법 적용), 방산물자(방위사업법 적용)</li> </ul> </li> </ul>
기초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 대상업체 (일반, 방산)</li> <li>• 경쟁계약 : 2개 업체 이상 (일반)</li> <li>* 조합수의 : 조합등록 전 업체 (일반)</li> </ul> </li> <li>■ 기초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조사 : 물가조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수집</li> <li>• 원가계산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산출에 관한 세부내역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li> </ul> </li> </ul>
현장실사 검증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 제시자료 서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요소별 정밀 서면심사</li> <li>• 실사 검증분야 선정, 출장계획 수립</li> </ul> </li> <li>■ 검증불능 분야에 대한 현장실사,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공통자료 : 조직,임무/기능, 회계처리규정, 업무흐름</li> <li>• 기준 책정자료 : 재료소요량, 노무공수</li> <li>• 가격자료 : 재료단가, 노무임률, 경비발생자료 및 증빙 등</li> </ul> </li> </ul>
가격조사서, 일반/방산 원가계산서 작성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건의, 결정	

MEMO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MEMO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notes.



03

## 제 3편 방산물자 원가계산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

DEFENSE ARTICLES  
COST CONTROL GUIDEBOOK  
DAPA 2018

**제1장** 방산물자 원가계산 일반

**제2장** 재료비 계산

**제3장** 노무비 계산

**제4장** 경비 계산

**제5장** 일반관리비 계산

**제6장** 투하자본보상비 계산

**제7장** 이윤 계산



# 03 제 3편 방산물자 원가계산

## 제1장 예정가격 결정

### 1. 방산물자 원가계산

#### 1) 개요

「방위사업법」 제 46조 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말함

#### 2) 방산물자 원가계산 관련 법규체계

-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국방부령)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방위사업청 훈령)

#### 3) 일반물자 원가계산 관련 법규체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원가계산 관리지침(방위사업청 지침)

### 2. 방산물자 원가계산의 목적 / 구성 / 계산방법

#### 1) 목적

- 양질의 방산물자를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 효율적인 계약집행의 도모
- 방산 기술개발 촉진 및 원가절감 유인

#### 2)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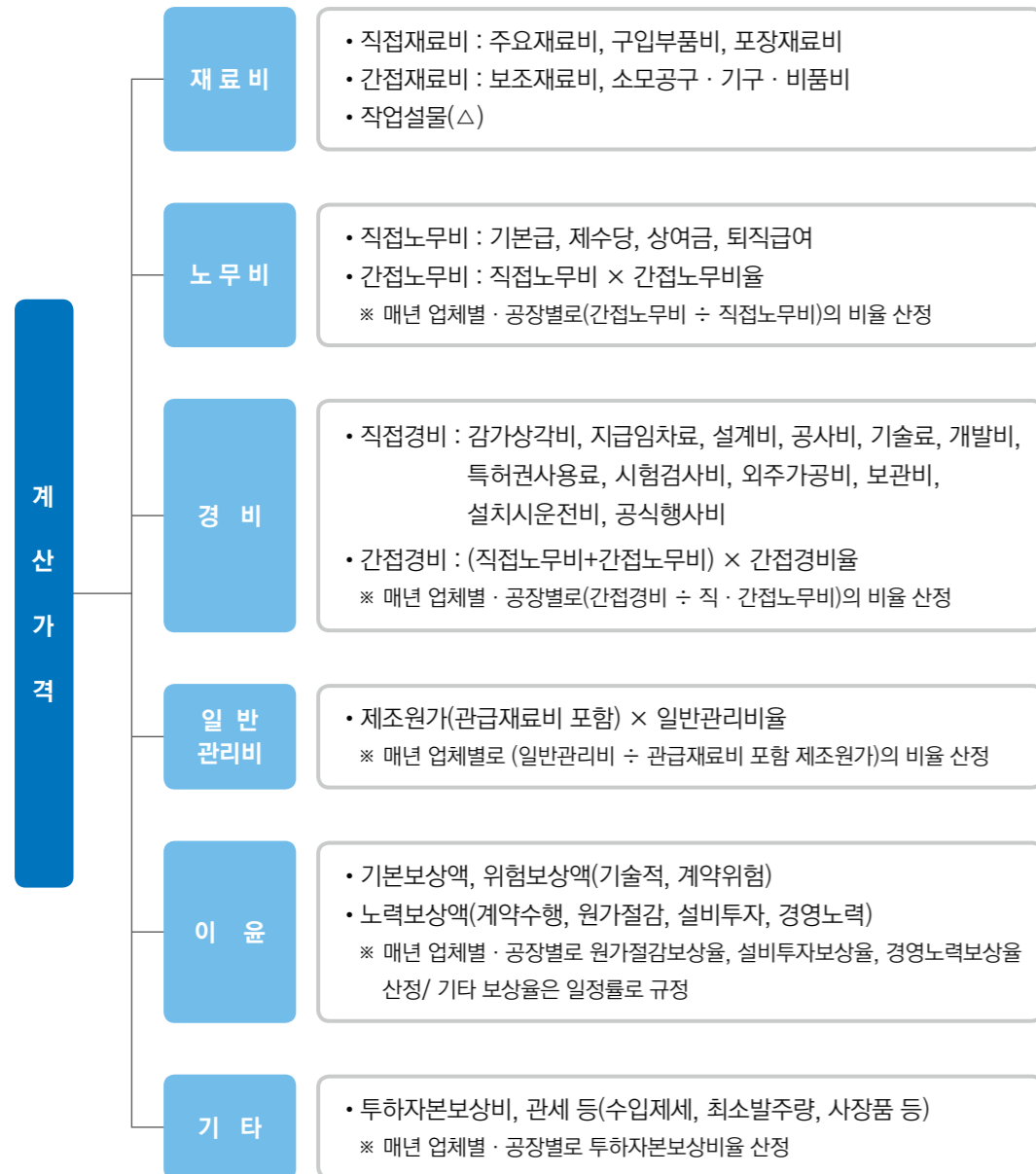
			* 이윤	계 산 가 격
			* 투자자본 보상비	
		* 일반관리비	총원가	
	간접재료비	제조원가		
	* 간접노무비			
	* 간접 경비			
직접재료비	직접원가	제조원가	총원가	
직접노무비				
직접 경비				

\* 간접경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투자자본보상비, 이윤  
: 방위사업청(원가총괄팀)이 매년 업체·공장별 제비율을 산정, 전파 단, 이윤구성항목중 경영노력 평가기준(①품질일관성 유지 노력 ② 생산성 ③ 방산원가관리체계 인 증에 따른 경영노력 평가 점수)는 원가계산시점에 별도 적용

#### 3) 계산방법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간접경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간접경비율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관급재료비 포함) × 일반관리비율
- 투자자본보상비 : 총원가(관급재료비 포함) × 투자자본보상비율
- 이윤 : 총원가에 보상율기준 이윤 적용
  - 기본보상액 + 위험보상액(기술적위험+계약위험) + 노력보상액(설비투자노력 + 계약 수행노력 + 원가절감노력 + 경영노력)

### 3. 원가계산서 작성



### 4. 일반물자와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 비교

구 분	일 반 물 자	방 산 물 자		
재 료 비	계산방법	Σ재료소요량 × 단가	좌 동	
	소요량	소요량 = 정미량 + 감손량 (손실량, 불량량)	소요량 = 정미량 + 감손량 (손실량, 불량량, 시료량)	
		소요량 산정 : 직접산정	소요량 산정 : 매년/품목별	
재료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자 가격</li> <li>관세 :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입가능단계 가격</li> <li>관세 : 부과</li> <li>- '11년 감면율 적용 폐지</li> </ul>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계산방법	Σ노무공수 × 임률	좌 동
		노무공수	공수산정 : 직접산정	좌 동
	임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 시중노임단가</li> <li>* 제수당 : 근로기준법</li> <li>* 상여금 : 400% 상한</li> <li>* 퇴직급여 : 1/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 : 업체 실지급</li> <li>* 제수당 : 업체 실지급</li> <li>* 상여금 : 업체 실지급</li> <li>* 퇴직급여 : 상한 1/8 + 퇴직연금 등 납부율(상한 1/8)</li> </ul>	
	간접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li> <li>* 간접노무비율 : 100%상한 범위내 업체별 산정 "율"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li> <li>* 간접노무비율 : 업체별 산정 "율" 적용</li> </ul>	
경 비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목 : (8개 비목)시험검사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운반비, 연구개발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지급임차료</li> <li>* 계산방법 : 비목별 직접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목 : (12개 비목)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시운전비, 공식행사비</li> <li>* 계산방법 : 비목별 직접계산</li> </ul>	
	간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목 : 14개</li> <li>* 계산방법 : 비목별 배부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목 : 22개</li> <li>* 계산방법 : 직·간접 노무비 × 간접경비율 (업체별 산정)</li> </ul>	
일 반 관 리 비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율	좌 동		
	업종별(규정) "율" 상한 범위내 업체별 "산정률" 적용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업종별(규정) "율" 상한 범위내 업체별 "통보율" 적용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투자자본보상비	없음	총원가 × 투자자본보상비율		
이 율	[총원가 - (재료비 + 외주가공비 + 기술료)] × 이윤율(25%)	* 기본보상+위험보상+노력보상		
부가가치세	부과	영세율		



## 5. 비원가항목

### 1) 개요

방산원가 계산시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 2) 비원가항목 세부내역

-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
  - 계약상대자의 출자자나 출연인, 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 당해 계약목적물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자산
  - 기타 당해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투자자산
  - 투자유가증권
  - 출자금
  - 관계회사 주식
  - 관계회사 사채
  - 투자부동산(종업원교육, 체육, 후생 또는 예비군 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성대여금과 장기성예금
  - 특약금(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물품의 독점적 공급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제공하는 특약금 또는 보조금)
  - 기타
-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 목의 비용
  - 천재지변·화재·도난·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 예기하지 못한 진부화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
  - 지체상금,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 우발채무손실
  - 소송비
  - 대손상각

- 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지출
- 배당건설이자
-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 다음 각 목의 비용
  - 고정자산 처분손
  -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
-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항목
- 「근로기준법」 제 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비용
- 기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물자의 생산·조달에 관련이 없는 비용
  - 접대비
  - 판매수수료
  - A/S비(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 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
  -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비용

## 제2장 재료비 계산

### 1.재료비 기본개념

#### 1)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

#### 2) 재료비의 분류

##### ■ 직접재료비

당해 제품생산에 직접 부과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직접계산이 가능한 재료비

- 주요재료비 : 제품의 제조에 직접소비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 구성 부분이 되는 재료의 가치

예) 전차, 함정의 본체를 구성하는 강철, 알루미늄 등

- 부분품비 :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재료의 가치

예) 전차의 엔진, 자동차의 타이어, 전자공업의 전자부품

- 포장재료비 :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

##### ■ 간접재료비

여러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재료의 가치로서 배부기준에 의거 배부 계산하는 재료비

- 보조재료비 :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

예) 기계의 유류, 화공약품, 연마제, 도료 등

-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연수 1년 미만이거나 가치가 상당가액 미만의 재료의 가치

예) 벤치, 스패너, 계산자, 소모성 사무용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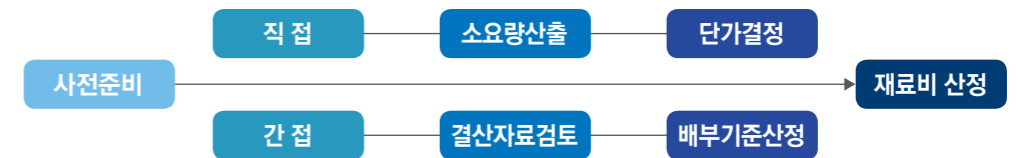
### Q&A

◆ 상당가액 미만(법인세법)이란?

A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 2.재료비 산정절차 및 검토사항

#### 1) 재료비 산정절차



#### 2) 주요 검토사항

구 분	내 용
조달판단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및 분류</li> <li>• 수량 및 단위 확인</li> <li>• 재료의 공급방법(관급/사급) 실적여부</li> </ul>
규격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형태(정부규격, 사양, 현품) 및 규격변경여부</li> <li>• 재료의 구성 및 가공방법</li> <li>• 포장방법</li> </ul>
대상업체선정 및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업체 선정 적정성 여부</li> <li>• 생산실적자료(실적업체)/생산가능 자료(신규업체)</li> <li>• 재료의 분류 : 자작, 구입(수입), 외주가공</li> <li>• 광범위한 물가조사</li> </ul>
업체실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량 책정 적정성 검증(투입량/산출량)</li> <li>• 자료의 신뢰성 확인</li> </ul>

※ 재료비 계산서 작성

### 3. 직접재료비의 계산

#### 1) 직접 재료비의 계산

$$\text{직접재료비} = \Sigma(\text{재료소요량} \times \text{단위당 가격})$$

#### 2) 재료 소요량의 산정

##### ■ 재료 소요량이란 ?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물량

##### ■ 소요량 산출방법

- 제품의 규격, 사양에 의한 물리적/화학적 분석, 검증
  - 제작도면 확인 ⇨ 자재명세서(BOM) 확인 ⇨ 자작재료 및 구입부품 분류
  - ⇨ 자작재료는 재질 및 규격별 구분 ⇨ 소재 구분별 Cutting Plan 작성
  - ⇨ 소요량 및 손실률 산정
  - ※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 한 단위의 제품 생산 시 소요되는 자재를 목록화한 자료
- 제조공정을 고려하여 실제 측정
  - 제작도면 확인 ⇨ 실물모형 제작 ⇨ 경제적인 소요량 결정 ⇨ Marking
  - ⇨ 소요량 산정
- 생산 실적자료를 수집, 검토 판단
  - 재료매입원장 ⇨ 재료수불부, 발주서 및 검사조서, 생산 일보 및 월보 활용
  - 생산량 1단위에 대한 재료소요량 파악  
(기초 재료재고량 + 당기 재료매입량 - 기말 재료재고량) ÷ 당기 제품생산량
- 관련기관의 공표된 자료를 수집, 검토하는 방법
  - 국세청 표준 수출표, 기품원 품질관리부 존안자료 등

#### 3) 재료 소요량 적용방법

$$\text{재료소요량} = (\text{제품수량} \times (1 + \text{손실율})) \times (1 + \text{불량률} + \text{시료율})$$

#### 4) 재료의 단위당 가격 산정

- 국내구입재료의 단위당 가격 (방산원가세칙 제 19조)
  - 원가계산시 파악한 계약상대자의 재료의 통상적인 구입가격 또는 구입 가능가격을 말하며, 재료의 구입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준
  - \* 다만, 소량소액의 제조, 구입 또는 유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도가격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 등을 적용
- 국내재료비 명세서 서식

재료명	규격	단위	정미량	감손율	소요량 (원단위)	단가	금액	비고

- 수입재료의 단위당 가격 적용
  - 수입품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된 가격 : 물자대 + 부대비용
- 재료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
  - 유통단계별 : 공장도가격 적용 원칙
  - \* 소량소액의 제조, 구입 또는 유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공장도가격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 등을 적용 가능
  - 계약형태별
    - 확정계약(확정원가) : 원가계산시점의 가격
    - 개산계약(정산원가) : 실제 구입가격
  - 사전품질보증활동 지시 : 실제 구입가격(미 발생분은 원가계산시점 가격)
  - 비축 원자재 사용 : 원가계산시점 가격(불명확할때는 구입시점 가격)
- 기타 적용방법
  - 부가세 등 세금을 차감한 공급가액만 적용

### 4. 감손 및 감손율

#### 1) 감손율이란 ?

-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공정에 투입된 재료로서 제품을 구성하지 못하고 소진된 재료의 부분
- 감손은 정상적 감손과 비정상적 감손으로 나누어지며, 비정상적 감손은 능률적인 작업조건에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감손이며, 비원가항목임

#### 2) 감손량 계산방법

- 감손량(율) : 손실량 + 불량량 + 시료량
  - 손실량 : 투입원재료의 중량과 제품수량의 차이(투입중량-제품수량)
    - 손실률 = 손실량 ÷ 제품수량
  - 불량량 : 조립,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 불량률 = 불량량 ÷ 완성품수량
  - 시료량 : 원재료, 완제품의 성능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재료
    - 시료율 = 시료량 ÷ 완성품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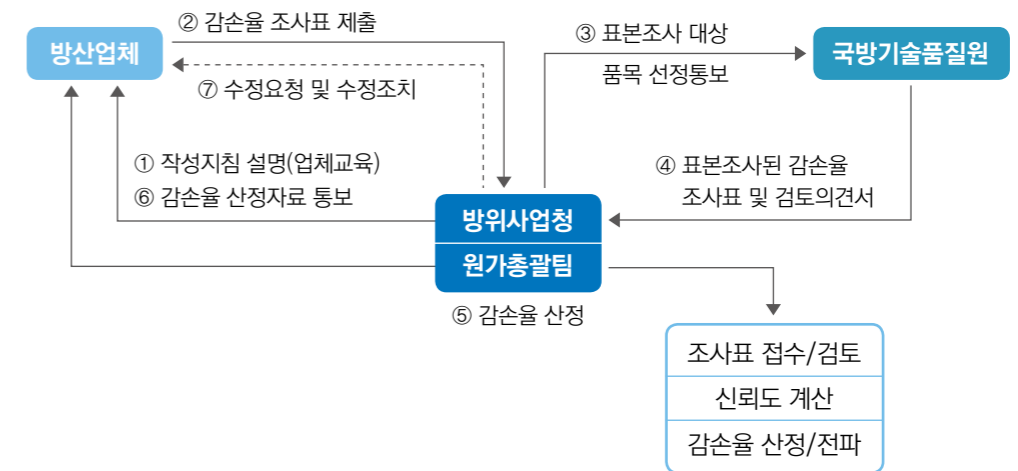
#### 3) 감손율 적용기준

- 재료소요량은 감손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률은 상한으로 적용
- 회계장부를 역산하여 소요량을 계산한 경우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
- 복수지정업체는 업체별 해당 감손율을 각각 적용
- 감손율의 책정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 중
  -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국방기술품질원장(또는 각군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며,
  - 생산실적이 없거나 소량생산, 시제생산 등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기 불합리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감손율을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음

#### 4) 감손율의 적용

- 양산품목에 대한 사전원가 계산시 적용할 감손율
  - : 원가계산시점에 원가총괄팀에서 통보하는 감손율을 적용하며, 통보된 감손율이 없을 경우는 유사한 품목의 감손율을 상한으로 하여 적용
-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품목에 대해 적용할 감손율
  - : 감손율을 산정하기 전 산출된 감손량(실발생 감손량 또는 유사장비 감손량)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담당자가 확인 후 적용
- 정산원가에 적용할 감손율
  - : 년도별 실발생 감손율을 국방기술품질원의 감손발생 사실을 확인받아 원가계산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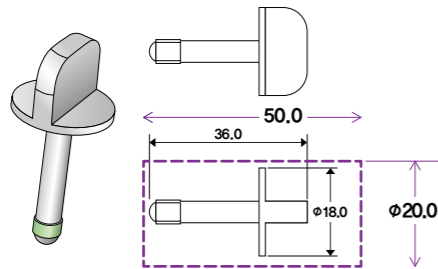
#### 5) 감손율 산정절차



- ① 작성지침 배부 및 업체요원 교육
- ② 감손율 조사표 작성 / 제출(인터넷 활용)
- ③ 표본조사 부품(품목) 선정 / 실사의뢰, 표본조사 관련업무 협의
- ④ 표본조사 실사 후 확인결과 검토의견서 접수
- ⑤ 표본조사 결과 신뢰도 계산 및 감손율 산정
- ⑥ 감손율 산정결과 업체 통보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재
- ⑦ 수정사유 발생 시 수정요청 및 수정조치

**TIP**

◆ 소요량 산정 예시 1)



- 가공공정 : 선삭(선반)2회, 형삭(밀링) 보호피막처리
- 소요량 산정
  1. 정미소요량 : 0.0084kg(예시)
  2. 실제소요량 : 20.0 x 50.0  
(가공여유 포함)
  3. 소요중량(kg)  
{반지름 x 반지름 x π x 길이 x 비중 / 1,000,000}  
= 10 x 10 x 3.14 x 50 x 2.7 / 1,000,000  
= 0.042kg(알루미늄)

◆ 소요량 산정 예시 2)

부품명	재질 및 규격	단위	수량	제품중량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	소요량
브라켓	SPC 2t*250*250	kg	1	0.96	27.24%	3.00%	2.00%	?

《 풀이 》

재료소요량 = (제품수량 × (1 + 손실율)) × (1 + 불량률 + 시료율)  
 0.96 × (1 + 0.2724) × (1 + 0.03 + 0.02)  
 = 1.2825

5. 수입재료비(부품비)

1) 수입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완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부분품·완성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그 수입품의 가격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판매 또는 제조에 투입될 때까지의 발생비용인 수입물자대, 수입관련제세, 수입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

2) 수입물자 원가계산 구성

비 목	구 성 내 역															
물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도착가격(CIF 외화표시가격)</li> <li>• 환율 : 원가계산시점의 환율(5근무일 평균 기준환율, 재정환율)</li> </ul>															
수입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등</li> </ul>															
수입부대비용	<table border="0"> <tr> <td>• 신용장개설수수료</td> <td>• 보세창고료</td> <td>• 통관료</td> </tr> <tr> <td>• 하역료</td> <td>• 국내운반비</td> <td>• 전신전화료</td> </tr> <tr> <td>• 수입관련수수료</td> <td>• 보세운송료</td> <td>• 검사료</td> </tr> <tr> <td>• 부두사용료</td> <td>• 창고보험료</td> <td>• 입항료</td> </tr> <tr> <td>• 입·출고료</td> <td></td> <td></td> </tr> </table>	• 신용장개설수수료	• 보세창고료	• 통관료	• 하역료	• 국내운반비	• 전신전화료	• 수입관련수수료	• 보세운송료	• 검사료	• 부두사용료	• 창고보험료	• 입항료	• 입·출고료		
• 신용장개설수수료	• 보세창고료	• 통관료														
• 하역료	• 국내운반비	• 전신전화료														
• 수입관련수수료	• 보세운송료	• 검사료														
• 부두사용료	• 창고보험료	• 입항료														
• 입·출고료																

3) 수입물자대 계산 = 정상도착가격(CIF 외화표시가격) × 환율

■ 정상도착가격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조건)가격으로서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가격

■ CIF조건이 아닌 FOB조건(본선인도조건), CFR조건(운임포함인도 조건), EXW조건(공장인도조건) 등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운반비 및 보험료 계산

구 분	내 용	
확정계약	과거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운반요율과 보험료율 실적기준
	과거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유사물자의 과거 운반요율과 보험료율 실적을 준용
개산계약	정산원가계산시는 계약목적물의 실지급 운반요율과 보험료율 기준으로 계산	

**TIP**

◆ **정형거래조건**

거래조건	위험이전(A)	비용이전(B)	비고
EXW (Ex Works) 공장 인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 하였을 때	• 매도인은 A까지의 제비용 부담	• 수출입승인 : 매수인의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	• E/L : 매도인 의무 • I/L : 매수인 의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임의처분 상태 하에 놓였을 때	"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
CFR (Cost & Freight) 운임 포함	"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보험료 +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 물품이 약정된 기간 내에 지정 목적지 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한 때	• 매도인은 FCA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 (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	• 매도인은 CPT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	• 접경지 인도 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 매도인은 A까지의 제비용 부담	"
DES (Delivered EX Ship) 선측인도	• 목적항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물품을 인도한 때	"	"
DEQ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	•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을 인도한 때	"	"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납인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 (단, 관세 불포함)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납부인도	"	" ( 단, 관세 포함)	• 수출입승인 : 매도인의무

■ 환율

- 확정계약 및 개산계약시  
: 원가계산시점(원가팀장 원가계산서 결재 전일) 이전 5근무일 평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 조달계약전 생산활동시  
- 확정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시점 이전 발생분 : 실결제환율  
- 확정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시점 미 발생분 : 원가계산시점 5근무일 평균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
-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시  
- 중도확정기준일 이전 발생분 : 실결제환율  
- 중도확정기준일 미 발생분 : 중도확정기준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
-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시  
실결제환율. 단, 실결제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TIP**

◆ **기준환율(Basic rate) / 재정환율(Arbitrage rate)**

-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는 원화와 미달러화간의 매매환율을 기준환율로 정함
- 다른 외국통화는 순수 외국통화간의 환율(Cross rate)을 이용하여 다시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재정환율이라고 함
- \* 예컨대, 기준환율이 USD1 = ₩1,300이고, 미달러와 엔화간의 환율이 USD1 = ¥140인 경우에 엔화에 대한 재정환율은 1,300 / 140 × 100 = 928원 즉 JPY100 = ₩928원이 됨

◆ **기준환율(달러/원 매매기준율)과 재정환율(기타통화/원 매매기준율)**

-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발표
- 달러/원에 대한 매매기준율의 산출은 서울외국환중개회사와 외국환 중개회사(금융결제 원내 외환시장)를 통하여 외국환은행간 미달러화의 매매거래에서 형성되는 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함

■ 수입 관련제세

• 수입제세란?

수입물자가 국내에 도입될 때에 부과되는 제세금으로 수입제세에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있으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로 가산함

• 관세

- 물품이 일국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여 법으로 정한 관세영역을 출입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 감정가격에 「관세법」제50조의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2011년도 이전에는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토록 경과 조치를 설정하였으나, '07.12.31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0.12.31까지 수입 신고된 것에 한하여 연도별 감면율이 적용되며 2011년 이후 수입물자에 대해서는 관세 100%부과 (감면율 미적용)

※ 단, FTA체결 국가별 대상품목 및 적용시기 등에 따라 관세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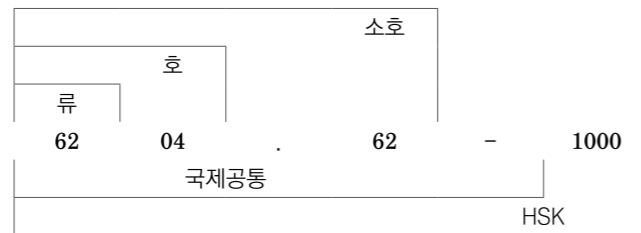
**TIP**

◆ 관세 및 제세의 확정

▶ 관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비율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됨

※ 관세율표(관세법 제 50조 별표) : 수입물품을 분류하기 위해 품목마다 구성된 표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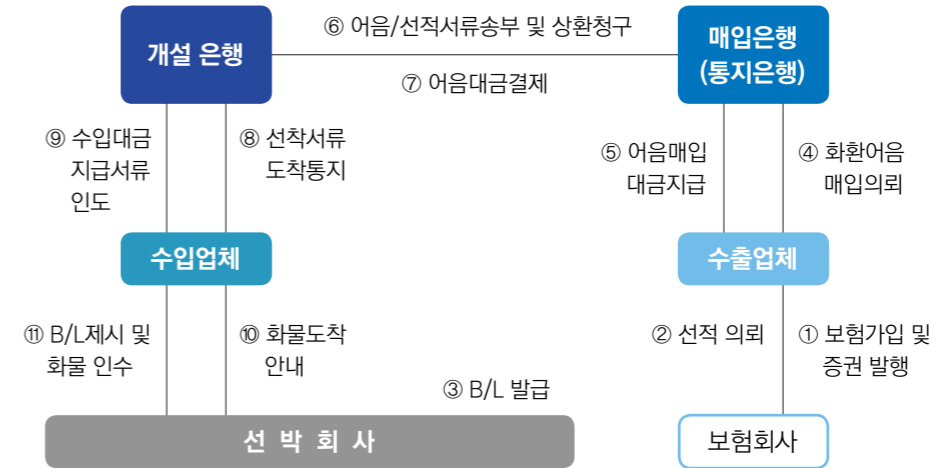


예)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8482	10	볼베어링 1.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 기타	13 8

**TIP**

◆ 수입대금 결제절차



- ① ~ ④ L/C를 받은 수출업체는 상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B/L)을 취득하고 보험증권, 송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에 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 ⑤ 매입은행은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교환하여 수출업체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한다.
- ⑥ 매입은행은 수출업체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L/C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송부하고 어음대금을 상환청구한다.
- ⑦ 개설은행은 어음대금을 매입은행에 결제한다.
- ⑧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업체에게 운송서류 도착을 통지한다.
- ⑨ 개설은행은 수입업체로부터 수입대금을 받고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 수입부품비 명세서 서식

재고번호	품명	단위	소요량			외화(USD)		원화금액	보험/운송	부대비용	수입부품비계	관세		종류
			구성수	감손율	소요량	단가	금액					세율	비율	

※ 아래 양식으로 수입부대비율 산정 후 원가계산

구분	수입부품	
	금액	비율
B/L금액		
결재금액		
보험료		
운송료		
CIF계		
신용장개설수수료		
전신전화료		
입항료		
하역료		
부두사용료		
보세창고료		
창고보험료		
입·출고료		
보세운송료		
검사비		
통관비		
부대비용 계		
CIF+부대비용		
관세		

**TIP**

◆ 수입물자 원가계산 예시

B/L 번호	물자대 (FOB/\$)	결재환율	FOB가격 (원)	운임/보험료	기타 부대비용	관세
A0001	50,000	1,250.50	62,525,000	4,064,125	1,210,000	4,376,750
A0002	60,000	1,320.00	79,200,000	5,940,000	1,530,000	4,752,000
A0003	75,000	1,295.50	97,162,500	8,744,625	2,100,000	7,773,000
			238,887,500	18,748,750	4,840,000	16,901,750
				7.85%	2.03%	7.08%

《 풀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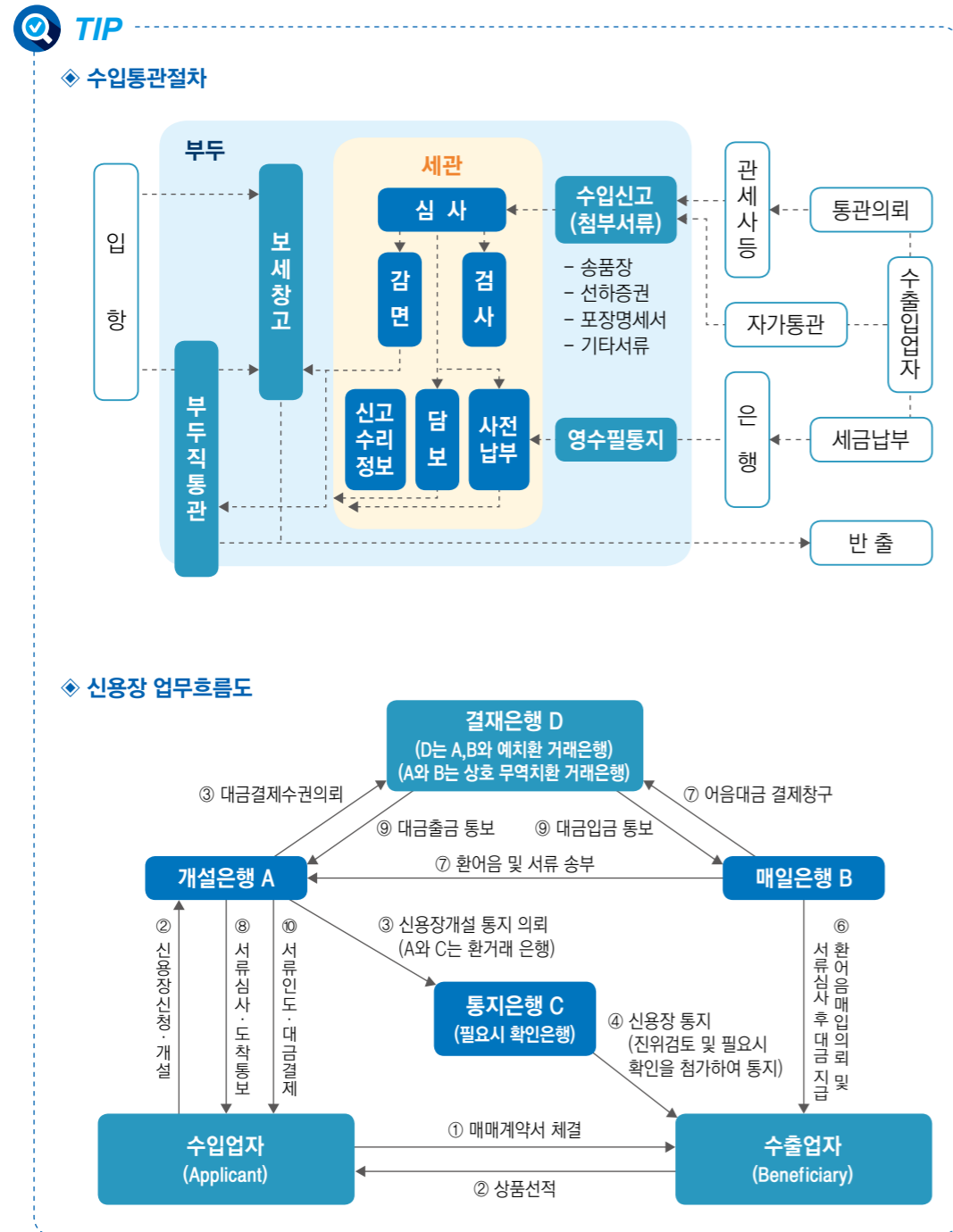
A업체의 수입부품인 다이오드S의 원가계산시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 및 관세는?

- 다이오드S의 물자대 : 200(FOB), \$
- 원가계산 시점의 환율(5근무일 평균환율) : 1,215.15(원/\$)
- 수입부대비율(운임 / 보험료 + 기타 부대비용) : 0.0785 + 0.0203 = 0.0988
- 수입환산율(환율 x 수입부대비율) : 1,215.15원 x (1+0.0988) = 1,335.20
- 단위당 가격(물자대 x 수입환산율) : 200 x 1,335.20 = 267,041원(재료비)
- \* CIF가격(FOB가격 + 운임 / 보험료) x 관세율
- 관세 : 200 x 1,215.15 x (1 + 0.0785) x 7.08% = 18,544(제세)

《 청 통합원가시스템 입력시 》

- 외화환산율 : 1,215.15 x (1 + 7.85% + 2.03%)을 산정하여 통합원가시스템에 외화환산율 입력하여 적용 = 1,335.20원
- 관세환율 : 1,215.15 x (1 + 7.85%)을 산정하여 적용 = 1,310.54원





## 6. 포장재료비 계산

### 1) 포장재료비란?

제품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을 말하며, 국방획득에서는 운반, 저장 등의 군 작전상 필요에 의하여 규격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음

### 2) 계산방법 : 재료별 소요량 × 단위당 가격

### 3) 포장재료비 명세서

① 포장 구분	재료명	규격	단위	② 소요량	③ 포장 수량	④ 단위당 소요량	단가	금액

① 포장구분: 1곤포를 구성하는 최종포장, 중포장, 개포장 등 포장 단위 구분  
 ② 소요량: 포장단위별로 투입되는 재료의 소요량  
 ③ 포장수량: 포장단위별로 포장되는 제품의 수량  
 ④ 단위당소요량: 소요량을 포장수량으로 나눈 값(④ = ② ÷ ③)

## 7. 간접재료비 계산

### 1) 간접재료비란?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재료

### 2) 간접재료비 구성

- 보조재료비 :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  
 예)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연마제 등 제품제조에 보조적으로 사용

- 소모성 공구/기구 :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며, 그 가치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상당가액 이하인 소모성 공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기구 및 치구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예) 벤치, 스페너, 드라이버, 계산자 등
- 소모성 비품 : 제품제조 현장과 관련된 소모성 비품  
예) 작업현장, 장갑, 작업용 포대, 작업용 형광등 등

3) 간접재료비 주요 검토사항

- 보조재료비
  - 고정자산 성격이 아닌 재료비 성격으로, 여러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는 재료
  - 보조재료비 품목중 주요재료비와 방산물자 원가계산시에는 포장재료비 성격의 재료 및 제품 제조와 관련없는 비용의 포함여부를 현장에서 상세히 확인
- 소모성 공·기구
  -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상당가액 미만의 자산이어야 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상당가액 미만의 금액이라 함은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상당가액 미만(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한 것  
(즉 자산화하여 상각대장에 기재하여 내용연수 상각처리 하지 아니한 것)

4) 간접재료비 배부기준 및 계산방법

배부 방법		배부기준	계산 방법
가 격 법	1. 직접재료비법	제조에 든 직접재료비	$\frac{\text{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총액}}{\text{일정기간의 직접재료비총액}} \times \text{당해제품의 직접재료비}$
	2. 직접노무비법	제조에 든 직접노무비	$\frac{\text{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총액}}{\text{일정기간의 직접노무비총액}} \times \text{당해제품의 직접노무비}$
	3. 직접원가법	제조에 든 직접원가	$\frac{\text{일정기간의 간접재료비총액}}{\text{일정기간의 직접원가총액}} \times \text{당해제품의 직접원가}$
시 간 법	4. 직접작업시간법	직접작업 시간	$\frac{\text{일정기간의 총간접재료비}}{\text{직접작업 연시간수}} \times \text{당해제품에 소요된 작업시간수}$
	5. 기계작업시간법	기계작업 시간	$\frac{\text{일정기간의 총간접재료비}}{\text{기계작업 연시간수}} \times \text{당해제품에 소요된 기계 작업시간수}$

※ 방산물자는 직접작업시간법을, 일반물자는 원가법을 주로 사용  
 ※ 간접재료비율은 최근년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상(최근년도로부터 6:4의 가중치)



TIP

◆ 간접재료비 계산(직접작업시간법) 예시)

《 A방산업체의 간접재료비 발생내역 》

구 분	2015년 발생	2016년 발생
간접재료비(원)	65,000,000	58,000,000
직접 작업시간(M/H)	178,652	172,452
M/H단가	380.63	336.33

※ 배부방법 : 해당업체 회계처리기준보고서에서 정한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하는데, 통상 총 공수 (여유율 포함 공수) 또는 직접작업시간법으로 배분하여 계산하며, 공통원가 및 제품원가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A방산업체의 '17년 적용 간접재료비 》

구 분	전전년도		직전년도		2017년 적용 간접재료비
	발생	가중치 (40%)	발생	가중치 (60%)	
간접재료비	380.63	152.25	336.33	201.80	<b>354.05</b>

비 목		금액(원)	비 목		금액(원)
재료비	국내재료비	150,000	노무비	직접노무비	<b>250,000</b>
	국내부품비	350,000		간접노무비	112,500
	수입재료비	200,000		계	362,500
	간접재료비	?	경 비		
	포장재료비	15,000			
설물(△)	900				

※ B업체 간접재료비 단가 : 354.05원(M/H)  
 \* 계약품목의 직접노무비 산정내역 : 공수 25M/H × 10,000원(M/H) = 250,000원  
 \* B업체 간접노무비율 : 45.00%  
 ※ 간접재료비 : 25M/H × 354.05원(M/H) = **8,851.25원**

**TIP**

◆ **공통원가란?**

-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를 계산할 때 동일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복수의 제품 또는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로서 간접재료비 단가, 노무비 단가,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감가상각비 단가 등을 말함
  - ▶ **공통원가 관련근거**
    -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 ▶ **대상업체**  
규칙 제 1조에서 규정한 계약을 하는 방산업체
  - ▶ **자료제출 기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통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 4월 말까지 제출
  - ▶ **제출자료**
    - 간접재료비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 노무비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 직접작업,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의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의 구분에 따라 작성)
    - 감가상각비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 업체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공통원가 구성요소에 대한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 ▶ **공통원가 적용**
    - 공통원가 산정일(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 체결하는 계약 : 전년도 공통원가
    -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 : 산정된 공통원가
- ※ 공통원가 산정일 이후에 임금협상 노사합의 종료 또는 결산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방산업체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통원가를 재산정하여 적용

5) 간접재료비 명세서

구분	부서명	1월	2월	...	12월	계
소모성공구	생산1팀					
비품	생산2팀					
:	:					
<b>계</b>						
소모품비	관리1팀					
	관리2팀					
	<b>계</b>					

■ 간접재료비 단가산정 내역서

구분	1월		2월		M/H단가 {((㉠÷㉡)×60%} +{(㉢÷㉣)×40%}
	'16년실적 ㉠	'15년 실적 ㉡	'16년 실적 ㉢	'15년 실적 ㉣	
생산1팀					
생산2팀					
생산3팀	:				
<b>계</b>					

\* 공통원가 산정시 제출

■ 간접재료비 산정내역 서식

재고 번호	품명	단위	단위공수(M/H) 및 간접재료비 단가(원)			단위금액
			생산1팀 (㉠1,000원)	생산2팀 (㉢1,100원)	생산3팀 (㉡1,200원)	
			㉠1.244	㉢1.255	㉡1.266	(㉠×㉢)+(㉢×㉡) +(㉡×㉠)
	:					
계						

\* 00품목 원가 산정시 제출

8. 설물 계산

1) 작업설물이란?

제품의 제조중에 발생하는 작업 설, 불량제품과 기타 부산물, 연산품으로 매각가치 및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그 금액을 원가에서 차감

※ 매각가치나 이용가치가 없는 작업 설물 등은 제외

2) 설물금액 : 설물량 × 단가(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

• 설물잔량 : 「소요량 - 제품중량」 또는 「소재중량 - 제품중량」

3) 작업설물 평가액 차감방법

- 도급재료의 설물 등 : 재료비에서 차감
- 관급재료의 설물 등 : 총원가에서 차감
- 수입재료의 설물 등 : 수입재료에서 차감

4) 작업설물 등 명세서 서식

재료 및 부품명	규격	단위	설물잔량 산출내역				회수율 (%)	설물량	단가	금액
			제품 중량	소요량	소재 중량	잔량				
단위당 설물 평가액										

① 제품중량 : 최종완성된 상태의 부품량 또는 재료량  
 ② 소요량(소재중량) : 설물이 발생하는 부품별(재료별)로 당해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량(재료량)  
 ③ 잔량 : 「소요량 - 제품중량」 또는 「소재중량 - 제품중량」  
 ④ 설물량 : 잔량 × 회수율



TIP

◆ 설물계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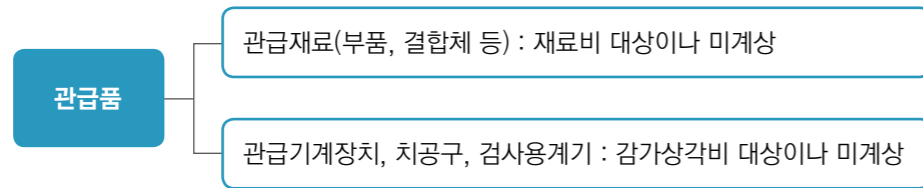
번호	재료명 (부품명)	규격 (재질)	단위	설물잔량			회수율 (%)	설물량	단가	금액
				소요량	제품량	잔량				
1	A	SPC	kg	2.434	1.86	0.574	80	0.459	60	27.55
2	B	"	"	1.565	1.2	0.365	80	0.292	60	17.52
3	C	"	"	1.177	0.9	0.277	80	0.221	60	13.29
4	D	"	"	1.569	1.2	0.369	80	0.295	60	17.71
									계	76.07

## 9. 관급품

### 1) 관급품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부품 등과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치공구·검사용계기 등을 말함

※ 관급재료 :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



### 2) 관급품의 평가

- 국내구입 관급품 : 실제 구입가격
- 수입관급품
  - 실구입가격(외화표시가격×환율) 적용 원칙
  - 단, 실구입가격이 파악이 곤란한 경우 다음시점 외화표시가격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

구 분	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기타개산계약
적용시점	원가계산시점	중도확정시기	납품일 (납품일전 정산원가계산시점)

## 10. 최소발주량

### 1) 최소 발주량이란?

어떤 특성의 재료가 일정한 단위 이상으로만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되는 재료량보다 초과하여 실제 구입한 재료량

### 2) 최소 발주량 원가계산

- 최소 발주량 = 직접재료비소비액 + 초과구입 재료금액
  - 직접재료비소비액 : 직접재료비와 동일(소요량×단위당 가격)
  - 초과구입 재료금액 : 단위당가격 × 초과구입재료량(최소발주량 - 직접재료소비량)
    - 초과구입재료량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
    - = (최소발주량 - 직접재료소비량) × (단위당 구입가격 - 단위당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
    - ※ 매각가치의 평가액 :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연구개발, 시제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차후에 사용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인정하지 않음
- 초과구입재료액은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배제

## 11. 사장품

### 1)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함)·건품·모형 및 재료를 말함

### 2) 사장품 계산방법

- 사장품 가격 원가계산 방법 : 당해제품의 총 원가 + 사장품 가격 -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 평가액
- 연구개발, 시제생산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초도양산 및 양산시에는 정부가 승인 또는 요구하는 규격사양 및 설계를 변경하게 된 근거서류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사장품가격은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배제

## 12.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인정

### 1)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이란?

해외에서 수입하던 군용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예정가격 기초금액 또는 부품단가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함

### 2) 적용대상

- 군용물자의 부품을 국산화한 후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로서
  - 해당 국산화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수입가격을 예정가격 기초금액으로 적용
  - 해당 국산화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가 체계업체(또는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고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수입가격을 해당 하도급품목(국산화 부품)의 단가로 적용
    - ▶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재개발 국산화(舊37개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3) 적용기간

-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이후 최초 계약연도로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 적용
  - ▶ '계약이행 기간 중 국산화개발 완료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미인정
-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이후 최초 계약연도부터 수입가격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 Q&A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09년) 이후 최초 계약연도가 '10년도이고 최초 계약 시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미적용 했을 경우, 수입가격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최초 계약연도인 '10년도에 해당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11~'14년도 계약 건까지는 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 \* 단, '10년도 계약 건에 대한 수입가격 소급 적용은 불가

- 장기계약 사업의 경우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가격 적용기간에 해당되면 해당 사업의 전체 계약이행 기간 수입가격 적용이 가능

### Q&A

◆ 부품국산화 완료 후 최초 계약연도가 '10년도이고 '13년도에 계약기간이 6년('13년~'18년)인 장기 사업을 계약하려는 경우 수입가격 인정기간은?

- A '13년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계약기간('13년~'18년) 동안 수입가격 적용이 가능함

### 4) 적용방법

- 수입가격 = 실적단가(FOB조건, 외화표시) × 환율(국산화 개발 승인시점 기준)
  - 실적단가 :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 이전 아래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의 가격)를 적용함

- ▶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 ▶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 ▶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
-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수입면장 등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 군이 조달한 실적단가

- \*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 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 가능
- \*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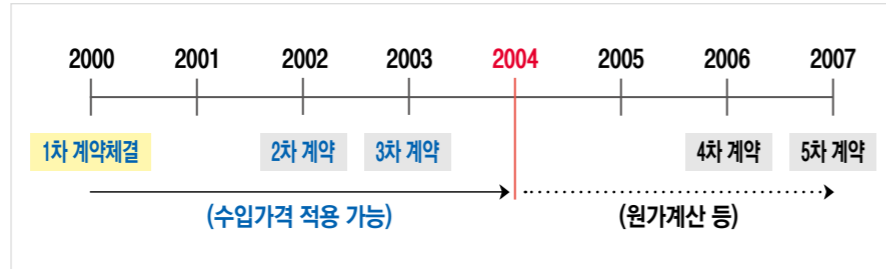
- 환율 :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수입가격을 인정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 보상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도록 함

**Q&A**

◆ 국산화 부품의 수의계약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적용하면 되나요?

A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이후 최초 계약연도로부터 연속된 5년으로 15년 범위 내 5개년 보장되는 수의계약 기간과 다름을 유의하여야 함



**TIP**

◆ 최초 계약연도 판단기준

▶ 판단기준

수입가격 적용이 가능한 최초 계약연도는 국산화된 부품이 포함된 방산 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체계업체)가 계약상대자인 경우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가 계약상대자인 경우 중 먼저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함

▶ 예시

- A업체(개발업체)가 B부품을 국산화 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음 : '10년
- '청-계약상대자(C업체(체계업체))' 간 'D장비(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계약 : '11년
  - 체계업체인 C업체가 방산물자인 D장비 생산을 위해 협력업체인 A업체의 국산화 품목인 B부품을 구매하여 D장비에 적용함
  - B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금액이 D장비의 구입재료비로 반영됨
- '청-계약상대자(A업체(개발업체))' 간 B부품 조달을 위한 계약 : '12년
  - ⇒ 국산화된 부품이 포함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체계업체)가 계약상대자인 '11년도 계약을 최초 계약연도로 판단하여 '15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해당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적용이 가능함

**제3장 노무비 계산**

1. 노무비 기본개념

1)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가치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를 말함

2) 노무비의 분류

■ 직접노무비

-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 특정 원가대상에 발생하는 노무비로서 개별적으로 집계 추적이 가능한 노무비

■ 간접노무비

제조작업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 직접 및 간접노무비 일반적 기준

- \* 직접노무비 : 직접 생산공정에 배치된 운반공, 검사공, 직장, 반장, 금형 제작공, 시험 검사공 등
- \* 직접생산 공정에 배치된 운반/검사인은 직접으로 인식, 보조/지원부서의 운반공은 간접으로 인식
- \* 제조현장에서 직접 종사하거나 제품생산에 투입될 원자재, 재공품, 완성품에 대한 시험 검사공
- \* 간접노무비 : 운반공, 검사공, 시험분석공, 소모공구/게이지 제작공



## 2. 노무비의 계산구분

노무비는 임률, 간접/무작업노무량(여유율), 간접노무비율, 직접 작업노무량으로 계산

- 임률(노무비단가), 간접/무작업노무량  
: 공통원가 산정시 해당업체 직접원가 담당자가 산정
- 간접노무비율 : 방산제비율 산정시 해당업체 제비율 담당자가 산정
- 직접 작업노무량 : 해당업체의 직접원가 담당자가 산정

### Q&A

#### ◆ 직접노무비의 인식기준은?

- A 정규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한 실습생을 제조현장에 투입하여 발생한 인건비로서 업체가 직접노무비로 회계처리하고, 실습생이 단순 보조작업이 아닌 제품생산에 직접 투입한 경우는?  
☞ 직접노무비로 계상
- A 직업훈련생을 한시적으로 생산현장에 투입 한 경우는?  
☞ 간접경비로 계상
- A 외부 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 인원을 생산공정 일부에 투입,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의 도급비용은?  
☞ 외주가공비로 계상

## 3. 직접노무비

### 1) 직접노무비의 계산

$$\text{직접노무비} = \Sigma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단가(임률)}$$

### 2) 노무량의 산정

#### ■ 노무량이란?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된 노동력의 집계단위로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작업시간(일수)

#### ■ 노무량 산정방법

- 일정기간 동안 제품별 또는 공정별로 투입된 작업인원들의 개인별 작업시간(M/H) 또는 작업일수(M/D)의 합계를 측정
  -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취업 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

#### ■ 노무량 산정시 고려사항

- 노무량 산정은 작업조건, 측정시간, 기술수준, 시설상태 등 정상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
  - 확정계약은 사전원가계산으로 과거 계약실적을 기초로 노무량을 예측, 산정
  - 방산물자의 경우에는 조달물량 한정, 가동율 저하로 적정 작업시간 산정에 실무상 애로

### 3) 노무량의 구분

구분		의의	내용
작업 노무량	직접작업 노무량	당해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노무량	제조지시서별, 작업종류별 등으로 직접 구분 집계되는 순작업시간
	간접작업 노무량	당해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노무량	조회, 작업지시, 작업준비, 여유(작업여유, 용무여유, 피로여유, 대기여유)등
무작업노무량		당해제품 생산에 직·간접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노임이 지급되는 노무량	연·월차, 유급휴가, 청원휴가, 생리휴가, 공민권행사(각종투표, 선거 등), 근로자의 날, 예비군 교육, 민방위 교육, 민방공훈련, 자연보호, 새마을운동, 회사창립행사, 복지 및 교육행사(체육대회, 심신수련대회 등), 직무교육, 직무와 관련된 출장 등



4) 직접작업노무량 산정방법

-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분석으로 표준시간을 산정하는 방법
  - 정상조업도 기준의 작업시간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
    - 수년간 생산실적 등 통계자료 검토
    - 정상 조업도 범위 내 자료 채택
    - 간접시간 조사(공휴일, 교육, 훈련, 행사 등)
    - 연간 정상 근무시간 및 작업시간표, 각종 통계자료
-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정비시간을 측정하여 여유시간과 준비시간을 가산하는 방법
  - (실측정시간 ÷ 생산량) × (1 + 여유율)
    - 생산라인 기계장치, 컨베이어시스템 등 정상 작업상황 점검
    - 공정별 작업자 숙련도 점검
    - 수 회 반복작업에 의한 작업시간 측정
    - 통계적 문헌에 의한 작업 여유율 조사 적용
- 과거의 생산실적(생산량과 생산기간)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방법
  - (실제 발생 작업시간 ÷ 완성품 환산량)
    - 실적 작업시간 집계 / 자료 타당성 검토
    - 부품, 완성품 생산량 집계 / 자료 타당성 검토
 (작업전표, 작업진도표, 노임지급대장, 근태일보, 수불부 등)

5) 노무량 내역 서식

직접 작업공수 내역서											
재고 번호	품명	수량	단위공수				여유율				합계
			조립	가공	검사	소계	조립	가공	검사	소계	

6)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여유율)

- 여유율이란?
 

공통원가 항목으로 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노무량과 노임이 지급되는 무작업 노무량을 말함
- 여유율 산정방법
 

여유율 = {간접 + 무작업} ÷ 직접노무량

\* 최근 2년간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연도로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산정
- 여유율 산정시 유의사항
  - 여유율 산정은 근태기록관리와 작업시간의 기록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작업시간의 기록이 없이 표준공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사명령에 따라 파악이 가능한 연월차 휴가와 일부 교육 등만 인정가능함
  - 직접작업노무시간과 간접및무작업노무시간의 합계는 총 근태공수를 초과하면 안됨
  - ※ 총 근태공수 : 출근에서 퇴근할 때까지의 작업시간의 총계
-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 세부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간접 작업 노무량	회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반복적인 업무관련 조회/회의</li> <li>• 반별, 조별 업무능률 향상 관련 활동</li> </ul>
	작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 필요적 작업준비시간</li> <li>• 자재청구/수령에 따른 정상적인 소요시간</li> </ul>
	휴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합의에 의한 정기적인 휴식시간</li> </ul>
	작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 공구, 자재 관련 필수적인 관리소요시간</li> <li>• 경상적, 주기적 장비점검 및 수선시간</li> <li>• 주변환경정리와 관련된 작업장 정리</li> </ul>
	정상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li> <li>• 관급자재 검사 대기시간</li> <li>• 천재지변에 의한 정전, 단수 시간 등</li> <li>• 정부관련 설계 및 규격의 의도적인 변경</li> </ul>

구 분	세 부 내 역	
무작업 노무량	휴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규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유급 및 생리휴가</li> <li>사규상의 각종 투표, 선거와 관련한 시간</li> </ul>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li> <li>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시간</li> </ul>
	행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주관 회사창립행사, 자연보호, 새마을운동, 복지 및 교육행사 등</li> <li>노사합의에 의한 노조주관행사</li> </ul>
	출장/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관련 외부출장</li> <li>일과시간내 공용 사외외출</li> </ul>
불인정 여유 시간	기타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li> <li>사급자재 검사 대기시간</li> <li>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 단수 시간</li> <li>작업라인상의 비정상적인 대기시간</li> <li>공구/장비 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li> <li>비경상적, 비반복적 장비고장 시간</li> <li>정부와 관련 없는 설계 및 규격의 의도적인 변경</li> </ul>
	불량수정 /재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품, 제품 외주관련 불량수정 및 재작업 시간</li> </ul>
	기타출장 /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와 관련없는 외부출장</li> <li>일과 시간내 업무와 관련 없는 외출</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합의에 의하지 않는 노조주관행사</li> <li>결근, 조퇴, 지각 시간</li> <li>기타 인정되지 않는 여유시간</li> </ul>

■ 여유율 집계 내역 서식

여유율 집계 내역							
구 분		1월	2월	3월	...	12월	계
근태일보	근무일수						
	근무인원(평균)						
	근태시간						
작업시간 (1)	정상시간						
	잔업시간						
	계						
작업시간 (2)	직접시간						
	간접시간(A)						
	계						
인정 간접시간	작업준비						
	회의						
	휴식						
	기타						
	계(B)						
불인정 간접시간	사급대기						
	근태사고						
	계						
인정여유율(B/A)							
간접시간 현황							
부서명	1월	2월	3월	...	12월	계	
생산1팀							
생산2팀							
생산3팀							
근태일보							

**TIP**

◆ 여유율 산정방법 예시)

《 A방산업체의 작업시간 발생내역 》

년도	직접 작업시간 (M/H)	간접 / 무작업시간			
		교육/훈련	휴식 (정기적인 휴식)	휴가 (연월차/선거)	작업불량
2015	20,000	500	100	200	100
2016	25,000	510	115	250	150

《 A방산업체의 '17년 적용 여유율? 》

\* 2015년 :  $500 + 100 + 200 / 20,000 = 4\%$

2016년 :  $510 + 115 + 250 / 25,000 = 3.5\%$

※ 2017년 적용 여유율 :  $4\% \times 0.4 + 3.5\% \times 0.6 = 3.7\%$

7) 직접노무비 단가(임률)의 산정

■ 노무비 단가(임률)란?

노무비단가 = 생산부문별 총 발생노임 / 생산부문별 총발생노무량

\* 실적노무비단가 =  $\frac{(\text{기본급} + \text{제수당} + \text{상여금} + \text{퇴직급여}) - (\text{임시다액} + \text{퇴직금} + \text{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기본급} / \text{할증금})}{\text{총 근태시간}}$

\* 적용노무비단가 = 전년도 실적노무비단가 × (1+인상률)

■ 노무비 단가 산정방법

- 원가계산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해 방산물자의 계약이행 기간 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노무비 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임률은 실적임률과 적용임률로 구분되며, 적용임률은 실적임률 × (1+인상률)로 계산

■ 변동 노무비 단가 적용기준

-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 인상 노사합의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 가능
- 임금인상 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률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
  1.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기하평균) 임금인상률과 계약 상대자의 최근 3개년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2.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의 정상적인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
  3. 시중노임단가(기본급) 제조부분 평균임금 인상률

■ 실적 노무비 단가 산정 시 유의사항

- 제수당, 상여금 중 복리후생비 또는 부인항목의 구분
- 총 근태시간 ≥ (직접 작업시간 + 간접 및 무작업시간)
-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제수당(기본급 및 할증금)에서 제외하나, 총 근태시간에서는 제외하지 않음

■ 기본급

근무지역, 근무부서, 근무시간대, 근무시간수, 업무의 성격 및 내용 업무의 성과, 자격의 유무, 가족 수, 학력, 성별의 요건에 관계없이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

■ 제 수당

-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총당부채 인식액은 제외),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 다만, 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
-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금을 말함
  - ①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 \* 연장근로시간의 상한 작업시간은 평일근로(각 8시간) 초과시간과 휴일근로(각 8시간) 초과시간을 합하여 주당 12시간임

- ② 야간근로 :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 ③ 휴일근로 : 주휴근로, 법정(공휴)근로 및 노사합의휴일 근로 등

■ 상여금

상여금 = 상여금 지급대상금액 × 상여금 지급실적률

- 상여금의 지급 대상금액은 업체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제수당 성격의 모든 비용을 포함
- 상여금 지급실적률은 상여금 지급액을 상여금 지급대상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

■ 퇴직급여

퇴직급여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 설정율

-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중 당해 방산 업체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대상이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 퇴직급여설정률을 곱하여 계산(상한 : 8분의 1)

• 퇴직급여설정율 =  $\frac{\text{직전년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액}}{\text{직전년도 총급여액}}$

- 퇴직급여 설정율이 8분의 1을 초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 ( 201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퇴직보험 등을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에 다음의 퇴직연금 등 납부율을 곱하여 퇴직급여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음  
다만, 퇴직연금 등의 납부율은 총급여액의 8분의 1을 한도로 함

• 퇴직연금 등 납부율 =  $\frac{\text{직전년도 퇴직연금 등 납부액}}{\text{직전년도 총급여액}}$

- 퇴직급여는 당해업체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급여설정률 ≤ 12.5%(1/8)
    - ⇒ 업체 퇴직급여 설정율 적용(퇴직연금납부율은 적용 배제)
  - 12.5% < 퇴직급여설정률
    - ⇒ MIN[퇴직급여설정률, 12.5% + 퇴직연금 등 납부율 12.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급여 집계 내역 서식

구분	지급내역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급													
제수당 1	직책수당												
	가족수당												
	00수당												
계													
상여대상급여													
제수당 2	연장수당												
	휴일수당												
	00수당												
계													
급여계													
상여금													
년·월차 수당													
퇴직급여													
총계													

**TIP**

◆ 임률 산정방법 예시)

- 《임률산정 순서》 ① 지급임금 집계 : 급여 + 상여 + 연월차 등  
 ② 퇴직급여설정을 산정  
 ③ 급여공수 집계 : 정취+연장+특근+기타시간  
 ④ 임금인상을 적용 검토 : 방산원가시행세칙 제 20조 기준  
 ⑤ 공정별 임률(M/H) 산정

1. 지급임금 집계

구분	가공1반	000반	비고
기본급 ①	10,000,000	① + ② + ③ + ④ = ⑤	상여 · 연월차 대상
제수당 ⑥	직책수당 ② 500,000		상여 · 연월차 대상
	직무수당 ③ 200,000		상여 · 연월차 대상
	연장수당 ④ 3,000,000		상여 · 연월차 대상
	... 1,000,000		
기타수당 500,000			
소계 ⑦	15,200,000		⑦ = ① + ⑥
연월차	지급율 5.1094%		⑧ ÷ ⑤
	지급액 ⑧ 700,000		
상여금	지급율 29.1970%		⑨ ÷ ⑤
	지급액 ⑨ 4,000,000		
합계	19,900,000		⑦ + ⑧ + ⑨

\* 연월차 지급율 : 연월차지급액 ÷ 연월차 지급대상금액  
 \* 상여금 지급율 : 상여금지급액 ÷ 상여금 지급대상금액

2. 퇴직급여설정을 산정

구분	노무비 발생총액 ①	퇴직급여			퇴직급여 설정율 (②÷①)	적용
		퇴직급여 설정액 ②	퇴직연금등 납부액 ③	퇴직연금등 납부율 (③÷①)		
제조부문	150,000,000	19,500,000	18,000,000	12.00%	13.00%	13.00%
판관부문	50,000,000	5,700,000	5,000,000	10.00%	11.40%	
개발부문	10,000,000	1,000,000	800,000	8.00%	10.00%	
합계	210,000,000	26,200,000	23,800,000	11.33%	12.47%	

**TIP**

3. 급여공수 집계

00업체		급여공수				작업일보			차이
		정취	연장	기타	소계	직접	간접	소계	
1월	가공반	120	30	5	155	150	5	155	일치
	00반								
	소계								
2월	가공반	110	25	5	140	135	4	139	사용외출 ↑
	00반								
	소계								
...	...	1,000	200	50	1,250	1,200	45	1,245	사용외출5
12월	가공반	130	40	5	175	160	5	165	전출 10
	00반								
	소계								
합계		1,360	295	65	1,720	1,645	59	1,704	사용외출(전출)

4. 임금인상을 적용 검토(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

1.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기하평균) 임금인상율과 계약 상대자의 최근 3개년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율(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2.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의 정상적인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율(기하평균)
3. 시중노임단가(기본급) 제조부분 평균임금 인상율

☞ 최근 3개년 평균 인상율(기하평균)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3개년 기하평균	비고
임률	11,000	11,804	12,552	13,218		
(인상율)		7.31%	6.34%	5.30%	6.26%	

**TIP**

5. 임률산정

반영	기본급 ①	제수당 ②		소계 ④ = ①+②	연월차 5.1094 (%)⑤	상여금 29,197 (%)⑥	퇴직금 13.00 (%)⑦	합계 급여공수 (1,720)⑧
		상여· 연월차 대상 ③	기타 수당					
가공반	10,000,000	3,700,000	1,500,000	15,200,000	700,000	4,000,000	2,587,000	⑨22,487,000 13,073.83
					(①+③)×⑤	(①+③)×⑥	(④+⑤+⑥) ×⑦	⑨÷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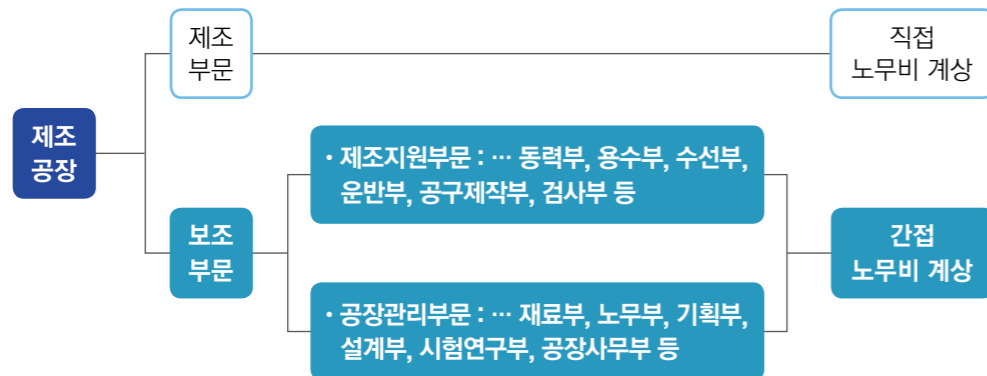
3.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란?

직접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2) 간접노무비의 구분

간접노무비의 발생형태별 분류기준은 직접노무비와 동일함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3) 간접노무비의 계산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율 산정

간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비율로서 최근 2년간 실적자료기준으로 최근년도로부터 각각 6:4의 가중치로 반영

$$\text{간접노무비율} = \frac{\text{간접노무비}}{\text{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계산방법과 같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직접노무비 산출액에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업체별로 산정 통보하는 당해업체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 제4장 경비 계산

### 1. 경비 기본개념

#### 1)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원가요소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

#### 2) 경비의 분류

##### ■ 직접경비

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 금형, 치공구 및 전용 구축물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연구개발 관련원가,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으로 구분

##### ■ 간접경비

2종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개별제품에 직접 부과하지 않고 배부되는 비용으로서 방산원가계산에서는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전력비·통신비 등으로 구분

#### 3) 방산물자 경비의 인정비목

구분	비목
직접경비	기계장치·금형·치공구 및 전용구축물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금형·치공구 및 전용구축물의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특허권사용료, 개발비,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
간접경비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차량관리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폐기물처리비, 전산운영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비 등

### 2. 직접경비

#### 1) 기계장치, 치공구, 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

##### ■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물리적 원인, 기능적 원인,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하여 그 효용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

##### ■ 감가의 원인

- 물리적 원인 : 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 자산 마멸
- 기능적 원인 : 진부화, 부적합화
- 경제적 여건 변화

##### ■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 :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은 대상자산이 아님
- 자기 소유의 자산
  - 자기 소유의 자산이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은 대상 자산이 아님
  - 창고 저장 등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대상자산이 아님
- 중도에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폐기할 예정인 자산
  - 중단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

##### ■ 감가상각비 계산 주요항목

- 대상자산
- 취득원가 / 장부가격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감가상각 대상자산

-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게이지, 금형과 방산물자만의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전용구축물
-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한 유형고정자산  
다만,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하여 비용화할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신규 제작/매입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상당가액(100만원)미만 등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시험기기, 공구는 간접재료비의 소모공구, 기구, 비품으로 계산

**Q&A**

◆ 방위산업 전용시설이란?

- A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 시설
- A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 하면서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민수물자(용역을 포함)를 일시적으로 생산 또는 연구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시설(민수물자의 장래 수요를 예측 가능 경우는 제외)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외부구입하는 경우  
자산이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의 발생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등)
- 자가제작하는 경우  
제조원가에 자산의 설치완료까지 발생한 부대비용 및 건설자금 이자를 가산한 금액  
- 건설자금이자는 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직접 사용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만 포함 가능
- 자산재평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이 결정되어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자산재평가액
-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거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가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

**Q&A**

◆ 자본적 지출이란?

- A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 ② ⇒ **직접경비 감가상각비**
- A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 피탄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설비 등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수익적 지출이란?

- A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조 ⇒ **간접경비 수리수선비**
- A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
  - 개인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이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내용연수

구분	'94.12.31 이전	'95.1.1 ~ '98.12.31	'99.1.1 이후
신규 취득자산	당시 시행 법인세법의 내용연수	당시 시행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25% 가감한 신고내용연수 - 미신고시 : 기준내용연수	“좌 동”
중고자산 취득 재평가 자산	잔존내용연수 + 경과연수의 40% ▲ 2년미만 : 2년 ▲ 1년미만 : 절사	- 신고시 : 잔존연수의 25%범위내에서 신고내용연수 - 무신고시 : 기준내용연수-경과연수 ▲ 2년미만 : 2년 ▲ 6개월이상 : 1년 ▲ 6개월미만 : 절사	- 중고자산 : 신고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 자산재평가 : 기준내용연수
사업연도 중에 자산취득	취득후 월수에 따라 계산(취득월 포함 연도말 까지 월수)	취득후 월수가 ▲ 6개월 이상 : 1년 ▲ 6개월 미만 : 6월	취득후 월수에 따라 계산(취득월 포함 연도말 까지 월수)

■ 잔존가액

구분	'94.12.31일 이전	'95.1.1 ~ '98.12.31	'99.1.1 이후
잔존가액	취득가액의 10%	- 정액법 : 0% - 정률법 : 취득가액의 5%	“좌 동”

■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 상각방법에 따른 계산방법

- 정액법

- 기간 상각비
  - ▲ 1994.12.31 이전 : (취득가액 - 잔존가액) x 상각률
  - ▲ 1995. 1. 1 이후 : 취득가액 x 상각률
- 단위당 상각비 : 기간 상각비 ÷ 조달물량 / 생산능력 / 배부계산

- \* 당해 방산물자만을 생산하는 전용자산 : 조달물량 또는 생산능력 (조달물량이 불확실한 경우)
- \* 여러 방산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 생산능력 또는 배부계산
- \* 방산 전용자산을 사용하여 방산 수출품과 동시 생산하는 경우 : 수출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방산물량으로만 나누어 계산

- 생산량비례법

- 단위당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물량(향후 5년)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이 통보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특례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  
⇒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 가능
- 기타 :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용연수를 별도 정함

• 감가상각 대상에 따른 계산방법

대상구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민수/방산 병용 기계장치 등	• 민수/방산 병용부문 ⇒ 방산부문(배부기준) ⇒ 당해 방산제품 감가상각비(생산능력, 배부기준)
방산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부문 ⇒ 당해 방산제품 감가상각비 (조달물량, 생산능력, 배부기준)</li> <li>• 정액법에 의한 연간상각비 ⇒ 당해 방산제품 감가상각비(조달물량)</li> <li>• 생산량 비례법(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생산계획량 ⇒ 당해 방산제품 감가상각비</li> </ul>

■ 수출보전 감가상각비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39조의 3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액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배제 후 별도 계상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세칙 제 43조
  - 수출보전 감가상각비는 방산전용시설을 사용하여 당해 계약기간중 방산수출품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
  - 단위당 수출보전 감가상각비는 수출물량을 제외하고 산정한 단위당 상각비와 수출물량을 포함하고 산정한 단위당 상각비의 차이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세칙 제 45조  
방산수출품은 수출되는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와 방사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물자로서 주요 방산물자와 유사한 물자

■ 감가상각비 집계 내역 서식

구분	장비	1월	2월	...	12월	계
전용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					
	계					
공용 (비용)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					
	계					
합 계						

구분	자산취득현황					감가상각현황				미상각잔액	당기상각액
	기초가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기초가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신규취득	자본적지출								
가공 1반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										
	계										

**TIP**

◆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예시)

- ▶ A품목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고 있다.  
'17년에는 200대를 계약하려고 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16년도 감각상각비 계산을 기준으로 '17년도 감각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유형자산의 내역》

자산명	계정과목	취득원가	취득일자	내용연수	비고
A기계	기계장치	800,000,000	'10. 06.	8년	민수/방산 병용
B기계	기계장치	320,000,000	'11. 10.	8년	민수/방산 병용
C기계	기계장치	240,000,000	'10. 09.	8년	방산 공용
D기계	공기구비품	80,000,000	'16. 07.	5년	방산 공용
E기계	기계장치	160,000,000	'15. 01.	8년	A품목 전용
F기계	공기구비품	72,000,000	'15. 01.	5년	A품목 전용

《'16년 매출액》

- 방산매출액 : 5,000,000,000원
- 민수매출액 : 9,000,000,000원

**TIP**

《'16년 총 공수자료》

- 방산총공수 : 120,000M/H(수출품 수출공수 : 20,000M/H포함)
- 민수총공수 : 160,000M/H

《A제품 생산 예정량(국방중기계획)》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예정물량	20대	100대	200대	380대	100대

※ '15년과 '16년 계약물량은 예정물량과 일치

《'17년 계약시 적용되는 A제품 대상공수》

500M/H

《풀이》

- '17년 계약분 민수/방산 병용장비(A, B기계)의 해당 감가상각비
  - ▶ '16년 감가상각비(A기계, B기계) :  $800,000,000 \div 8 + 320,000,000 \div 8 = 140,000,000$
  - ▶ '16년 방산부분 감가상각비
    - $140,000,000 \times [120,000 \div (120,000+160,000)] = 60,000,000$ 원
    - $60,000,000 \div 120,000 \text{ M/H} = 500\text{원/M/H}$
  - ▶ 단위당(M/H) 감가상각비 :  $500\text{원} \times 500\text{M/H} = 250,000\text{원}$
- '17년도 계약분 방산공용장비(C, D 기계)의 해당 감가상각비
  - ▶ '16년 감가상각비(C기계, D기계) :  $(240,000,000 \div 8) + (80,000,000 \div 5 \times (6/12)) = 38,000,000$ 원
  - ※ '16년 취득분 월할계산 주의
  - ▶ 단위당(M/H) 감가상각비 :  $38,000,000 \text{ 원} \div (120,000 - 20,000)\text{M/H} = 380\text{원/M/H}$
  - ※ 전용상각비 수출공수 제외 주의
  - ▶ 해당 감가상각비 :  $380\text{원} \times 500\text{M/H} = 190,000\text{원}$
- '16년도 계약분 A제품 전용장비(E, F 기계)의 해당 감가상각비 (생산량비례법)
  - ▶ 총자산가액(E기계, F금형) :  $160,000,000 + 72,000,000 = 232,000,000$ 원
  - ▶ '16년까지 기 상각금액 :  $232,000,000 \times (120 \div 800) = 34,800,000$ 원
  - ▶ '17년도 해당 감가상각비 :  $(232,000,000 - 34,800,000) \div (800-120) = 290,000$ 원
  - ※ 현시점 상각 예상물량 : 680대 (800-120)

**Q&A**

◆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 A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A 건설중인 자산중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 기본통칙 2-10-22-16)

◆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미가동 전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정여부는?

- A 내용년수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때에는 실제 생산기간에 대해서만 배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국방부 예회 45113-736 '96.10.24.)

◆ 사업종료에 따른 미 감가상각액 처리방안은?

- A 방산물자 전용장비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기준한 정액법에 의하여 산출된 기간 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 생산계획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왔으나,
- A '96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경우, '97년도 이후 잔존 내용년수에 대한 미 감가상각액은 생산량 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할 것이다.
- A 이 경우 내용년수에 의한 연 상각비를 초과하는 액에 대하여는 제비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 (국방부 예회 45113-744 '95.11.29.)

◆ 고정자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 A 고정자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제외함  
다만, 착수금이 지급된 부분은 실제 생산에 투입되었고, 업체에서 고정자산으로 등재할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계상가능

◆ 건물, 차량 운반구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 A 간접경비(율)로 계상

2) 기계장치, 치공구, 전용구축물 등의 지급임차료

- 지급임차료란?  
기계장치 등을 외부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
- 대상범위  
직접 및 간접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게이지, 금형과 방산물자만의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전용구축물
- 대상 지급임차료 계산  
실비상당액을 직접 계산/합리적인 배부방법에 의하여 배부계산

- 임대차 계약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일정한 물건을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광의의 리스계약)
- 금융리스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실제적으로 자산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갖는 리스계약  
⇒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로 계상
- 운용리스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자산을 임차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  
⇒ 운용리스로는 지급임차료로 계산

**TIP**

◆ 지급임차료 산정방법 예시)

《지급임차료의 계약현황》

계약일자	계약번호	계약기간	년간 임차료	비고
'12. 5월	0000	'12.5월 ~ '17.12월	960,000,000원	운용리스

- 연간 총 작업공수 : 800,000M/H
- 당해 제품 A 대당 작업공수 : 450M/H

**TIP**

《풀이》

A제품 대당 직접공수	M/H당 배부액	A제품 대당 지급임차료	비고
450M/H	1,200원/M/H	540,000원	

• M/H당 배부액 : 960,000,000원 ÷ 800,000M/H = 1,200원

3) 설계비

- 설계비란?  
당해 제품의 설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제작도면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내부설계인 경우는 제조원가 요소별 계산가능)
- 설계비 계산
  - 생산계획물량이 통보된 경우  
: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계산
  -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 5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하여 당해년도 조달물량/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
  - 특정계약에만 관련하여 지출되는 설계비  
: 실비상당액을 당해 특정계약의 경비로 계산

**TIP**

◆ 설계비 산정방법 예시)

- 예시1 : 4,500,000(설계비 총액) ÷ 401(당해년도 조달물량) = 11,221.94원
- 예시2 : 4,500,000(설계비 총액) ÷ 500(생산능력을 고려한 물량) = 9,000원
- 예시3 : 4,500,000(설계비 총액) ÷ 2,200(총생산물량(생산계획량 포함)) = 2,045.45원

4) 공사비

■ 공사비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후 잔존가치액은 불인정,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

■ 공사비 계산방법

- 생산계획물량이 통보된 경우  
: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계산
-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 5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하여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
- 가설공사가 계약의 주요 내용인 경우  
: 공사비로 계산하지 않고, 별도의 원가계산
- 가설공사가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효익이 존재하는 경우  
: 공사비용을 고정자산에 등재하여 감가상각 방법으로 비용화



TIP

◆ 설계비 산정방법 예시)

- 예시1 : 9,500,000(설계비 총액) ÷ 401(당해년도 조달물량) = 23,690.77원
- 예시2 : 9,500,000(설계비 총액) ÷ 500(생산능력을 고려한 물량) = 19,000원
- 예시3 : 9,500,000(설계비 총액) ÷ 2,200(총생산물량(생산계획량 포함)) = 4,318.18원

5) 시험검사비

■ 시험검사비란?

재료의 재질분석/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출되는 외주시험비 및 법령,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출되는 자체 시험검사비

- 비파괴 검사 등 외주 시험검사비가 대부분
- 자체 시험검사비는 특정한 성능시험 검사장으로 방산물자를 이동 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등으로 제한

■ 시험검사비 계산

시험검사비 발생총액을 당해 제품에 개별부과, 일정기간 납품량 배분 계산



TIP

◆ 시험검사비 산정방법 예시)

세부내역	지급금액	당해제품 조달물량	단위당상각비	비고
충격시험	1,100,000	401set	2,743.14	
교정검사	89,000	"	221.94	
성분분석	259,000	"	645.88	
계			3,610.96	

6) 특허권 사용료

■ 특허권 사용료란?

타인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임차료

• 특허권 사용료 지급방법

- 생산수량/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 제조기간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 특허권 사용료 계산

- 생산계획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 및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계산
- 특허권이 방산 이외에 사용될 수 없고 특허기간이 생산계획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계산
- 특허권사용료를 생산량(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일정율의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 실비상당액을 특허권사용료로 계상
- ☞ 이윤(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시 제외됨에 유의

**TIP**

◆ 특허권사용료 산정방법 예시

- 예시1 : 12,000,000(특허권사용료) ÷ 2,200(총 생산물량(생산계획량 포함)) = 5,454.54원
- 예시2 : 12,000,000(특허권사용료) ÷ 5 (생산계획기간) ÷ 401(연간생산물량) = 5,985.03원

7) 기술료

■ 기술료란?

당해 방산원가 대상물자 생산을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제휴에 따라 지불되는 비용 (면허료, 로열티), 기술비결(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해외기술자 초청비, 해외기술훈련비, 국외여비, 기술 자문비 등)

■ 기술료를 지불하는 방법

- 외국과의 기술제휴 당시 계약지급조건에 따라 구분
  - 생산량/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 제조기간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 기술료 계산

- 매출액에 일정금액(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기술제휴자에 지급하는 실비상당액
- 제조기간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기술제휴기간(제조기간)에 지급하는 총액을 기술제휴기간 및 당해연도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계산
- 기술제휴기간이 미확정/생산계획물량이 미통보된 경우 : 3년간 균등 이연상각

☞ 면허료/로열티는 이윤(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시 제외됨에 유의

**TIP**

◆ 기술료 산정 예시

로열티(면허료)	기술 도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 25,000,000원</li> <li>• 수입품비 : 5,000,000원</li> <li>• 로열티 : 순매출액의 5%</li> </ul>	KNOW-HOW획득비, 기술자초청비, 해외연수비 등 150,000원

◆ 당해 제품 단위당 로열티를 계산하면?

$(25,000,000원 - 5,000,000원) \times 0.05 = 1,000,000원$

8)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란?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국내 기술개발비로서 시험 및 시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 개발용역비 등

■ 인정 범위

-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 개념을 준용 단, 제조원가 요소별로 회계처리된 비용을 방산 제비율상 개발비로 조정할 경우 ⇨ 개발비로 간주
- ☞ 향후 군/수출 소요를 위한 자체 경상개발비, 연구비 ⇨ 제비율 반영 가능

■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 3호 무형자산)

회 계 과 목	방산원가규칙	기업회계기준
연구비	간접경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
개발비	경상 개발비	간접경비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
	개발비 (무형자산)	직접경비 20년내 신고연수 상각 ( 신고없으면, 5년상각)

■ 개발비 계산

- 생산계획물량이 통보되는 경우  
: 5년간 총생산물량(생산계획물량 포함)으로 나누어 계산
- 생산계획물량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하여, 당해 연도의 생산능력/조달물량으로 나누어 계산
- 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 ⇨ 당해 연도 일시 상각가능



TIP

◆ 개발비 산정방법 예시)

- 개발비 발생 총금액 : 200,000,000원
- 생산계획물량(국방중기계획 통보된 경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0	150	150	200	250			
	100	100	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015년 단위당 개발비는?

《풀이》

- ▶ 2012년 기간 개발비 (단위당 250,000원)  
- 200,000,000원 × (50대 ÷ 800대) = 12,500,000원
- ▶ 2013년 기간 개발비 (단위당 312,500원)  
- (200,000,000원- 12,500,000원) × (100대 ÷ 600대) = 31,250,000원
- ▶ 2014년 기간 개발비 (단위당 312,500원)  
- (200,000,000원-43,750,000원) × (100대 ÷ 500대) = 31,250,000원
- ▶ 2015년 기간 개발비 (단위당 250,000원)  
- (200,000,000원- 75,000,000원) × (100대 ÷ 500대) = 250,000,000원  
⇒ 2015년도 단위당 개발비 : 250,000원

8) 외주가공비

■ 외주가공비란?

제품 생산에 사용될 재료를 외부에 위탁 가공하는 경우에 그 가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 지정된 방산물자 자체의 외주가공비는 불인정

■ 외주가공비 계산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실비상당액 계산

9) 기타 직접경비

■ 보관비

재료 및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설치 시 운전비

납품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 공식 행사비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사를 위해 지拂하는 비용

3.간접경비

1) 간접경비란?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요소로서 2종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2) 간접경비 구성항목

복리후생비 · 여비교통비 · 전력비 · 통신비 · 연료비 · 용수비 · 감가상각비 · 운반비 · 지급임차료 · 보험료 · 지급수수료 · 세금과공과금 · 소모품비 · 피복비 · 수리수선비 · 교육훈련비 · 도서인쇄비 · 차량관리비 · 연구비 · 경상개발비 · 조사연구비 · 안전관리비 · 전산운영비 · 폐기물처리비 등



3) 간접경비의 계산

- 간접경비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간접경비율
- 간접경비율 :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 산정방법 : 최근 2년간 실적자료 기준 최근 연도 6, 전년도 4의 가중치 반영
  - 산정 계산식

$$\text{간접경비율} = \frac{\text{간접경비}}{\text{직접노무비} + \text{간접노무비}}$$

4) 간접경비 확인사항

- 각 비목별 민수, 방산구분의 실발생 여부 적정성 확인
- 각 비목별 배부기준이 회계처리기준과 일치여부 확인
- 일반관리부문의 유사 계정과목과 비교하여 실발생 확인
- 타계정 대체 및 용역비용이 관련 비용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 확인
- 비원가성 비용 포함 여부 확인
- 직접경비와 이중계상 또는 누락여부 확인
-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로 이체조정 여부 확인

5) 간접경비율 산정시 조정사항(비원가항목)

- 복리후생비 : 접대비 성격의 비원가성 비용 등
- 세금과공과 : 법인세, 벌금, 과태료, 가산금, 지체상금 등
- 운반비
  - 제품 납품 관련 운반비 : 일반관리비로 이체 조정
  - 제품 구입 관련 운반비 : 재료비로 이체 조정
- 보험료 : 임원배상책임보험료 등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방산물자 제조활동과 무관한 비용
- 지급수수료
  - 이자발생비용 또는 판매수수료 등의 방산무관 비용
  - 시험검사 및 분석료 등은 직접경비로 이체 조정

- 수리수선비
  -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조정
- 경상연구개발비
  - 당해 비용의 방산관련 여부 증빙자료 확인
  - 천재지변, 화재, 도난, 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소송비, 대손상각



## 제5장 일반관리비 계산

### 1. 일반관리비

#### 1) 일반관리비란?

기업 전체의 유지관리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2) 일반관리비의 구성항목

- |             |             |            |
|-------------|-------------|------------|
| 1. 임원급여     | 2. 급료와 임금   | 3. 제수당     |
| 4. 퇴직급여     | 5. 복리후생비    | 6. 소모품비    |
| 7. 감가상각비    | 8. 지급임차료    | 9. 보험료     |
| 10. 세금과 공과금 | 11. 교육훈련비   | 12. 직업훈련비  |
| 13. 도서인쇄비   | 14. 수선비     | 15. 수도광열비  |
| 16. 운반비     | 17. 보관비     | 18. 여비·교통비 |
| 19. 통신비     | 20. 지급수수료   | 21. 차량유지비  |
| 22. 연구비     | 23. 경상개발비   | 24. 조사연구비  |
| 25. 전산운영비   | 26. 수출촉진활동비 |            |

- 보험료, 지급수수료 :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나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한함
- 수선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익적 지출에 한하여 인정
- 수출촉진활동비 : 국내·외 방산관련 전시회 등의 참가와 현지 시험평가 등 직접적인 경비에 한함

#### ※ 수출촉진활동비의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 (세칙 제30조)

- 방위사업청장이 후원, 요청 또는 승인하는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등의 참가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고 해외시험평가 등을 위해 현지로 시험평가 제품을 운송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된 직접적인 경비
- 지원한도는 접대비, 판촉물제작비, 운영유지비 등을 제외한 해당 발생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함

#### 3) 일반관리비 계산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관급재료비 포함) x 일반관리비율

#### • 예외 조항 적용의 경우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를 제외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한다.

#### 4) 일반관리비율 산정

- 일반관리비율 산정 원칙

-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 계산된 일반관리비율은 최근 연도로부터 각각 6:4의 가중치 반영

$$\text{일반관리비율} = \frac{\text{일반관리비 발생액}}{\text{제조원가(관급재료비 포함)}}$$

☞ 예외조항 적용의 경우에는 관급재료비 불포함

- 일반관리비율의 업종별 상한비율 (중소기업은 2% 상향조정)

- 조함공사 : 100분의 6
- 화학, 섬유, 고무, 의복, 가죽, 기타 : 100분의 8
- 조립금속 : 100분의 7
- 용역 : 100분의 5

**Q&A**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 기준매출액 이하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규모와는 무관하게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기준매출액을 초과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 중소기업 중 소기업 매출액 요건(기계, 전자, 통신업종 기준 12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다음 ㉠, ㉡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과,
    - ㉠ 관계기업(지분의 30% 이상 소유)과 합산한 매출액이 기준매출액(기계, 전자, 통신업종 기준 1,000억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음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소유 · 경영의 독립성 충족
      - ↳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 ㉠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을 이탈한 경우 이탈 사유가 발생한 해의 익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이탈의 유예”)
- 중견기업(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 다음 ㉠, ㉡, ㉢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 ㉠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매출액을 초과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등 소유 · 경영의 독립성 충족
    - ㉢ 금융업, 보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대부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함

단, 일반관리비율 한도, 투자자본보상비, 설비투자노력보상액, 경영노력평가 등 일부 규정에서는 중소기업 이탈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6장 투자자본보상비 계산**

**1. 투자자본보상비**

1) 투자자본보상비란?

- 투자자본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자산으로서 미착기계,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개발비 및 임차보증금 등임
- 방산투자자본대상금액은 투자자본 대상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재평가차액(토지이외의 유형자산은 '98.4.10이후 재평가차액)은 제외

2) 투자자본보상비 계산

- 원칙 : 투자자본보상비 = 총원가(관급재료비포함) × 투자자본보상율
- 예외 : 투자자본보상비 = 총원가(관급재료비불포함) × 투자자본보상율

• 예외 조항 적용의 경우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투자자본보상비를 산정한다.

3) 투자자본보상율 산정

- 투자자본보상비율 : (방산투자자본금액 × 금융비용) ÷ 총원가
  - 방산투자자본금액 : 유형자산(미착기계, 건설중인 자산 제외), 개발비, 임차보증금
  - 금융비용
    - 대기업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관계비율 중 대기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 (2015.1.1. 세칙 개정)
    - 중소/중견기업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관계비율 중 중소기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2016.1.29. 세칙개정)
- 연간투자자본보상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함.
- 투자자본보상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연도부터 연간투자자본보상율을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

- 방산투자자본금액
  - 투자자본대상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으로서
    - ① 유형자산 (미착기계, 건설중인 자산 등을 제외)
    - ② 개발비
    - ③ 임차보증금
  - 투자자본금액 :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재평가차액 (토지이외의 유형자산은 '98.4.10. 이후의 재평가차액)은 제외
- 금융비용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 중 BBB+ 와 BBB0 의 수익률을 산술평균

## 제7장 이윤 계산

### 1. 이윤 구성체계

#### 1) 이윤 구성체계

I. 기본보상		이윤 항목	▶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이윤
II. 위험보상	기술적위험보상		▶ 방위사업 수행 위험성에 따라 적용되는 이윤
	계약위험보상		
III. 노력보상	원가절감노력보상	▶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노력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이윤	
	설비투자노력보상		
	경영노력보상		

※ 규정개정(2012. 1.1. 시행) : 총원가기준 상, 하한제 폐지

- ▶ 총원가기준 상, 하한 내에서 보상액 기준 이윤 적용
  - 상한 : 16% : 전 방산업체 평균 투자자본보상비율
  - 하한 : 9% : 업체별, 공장별 투자자본보상비율

※ 업체 회계처리기준보고서에 따라 관급재료비를 포함하여 방산제비율(일반관리비율, 투자자본보상비율, 설비투자보상율)을 산정하는 경우, 제품 원가계산시에도 관급재료비를 포함하여 산정

#### 2) 산정절차

##### ■ 기본보상액

$$\text{기본보상액} = \text{총원가(관급재료비 포함)} \times \text{기본보상율}$$

- 기본보상율 산정 :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 조정계수
  - ☞ 조정계수 : 대기업 0.25, 중소/중견기업 0.3
-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 제비율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5개년을 산술평균

■ 위험보상액

• 기술적위험 보상액

: 사업형태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총원가에 다음의 보상을 곱하여 산정

$$\text{기본보상액} = \text{총원가(관급재료비 포함)} \times \text{기본보상율}$$

☞ 사업형태별보상율

구 분	연구개발	초도생산	후속양산 생산, 정비	기술협력생산
보상율	1.5%	1.0%	0.75%	0.5%

• 계약위험 보상액

: 계약방법에 따라 총원가에 다음의 보상율을 곱하여 산정

$$\text{계약위험 보상액} = \text{총원가} \times \text{계약형태별 보상율}$$

☞ 계약형태별 보상율

계 약 방 법	보상율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3%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확정분	2%
중도확정계약	1%

※ 일반개산계약, 한도액계약 등 실비정산계약은 미 적용

☞ 사업형태가 연구개발사업, 초도양산사업, 정비사업에 해당되지않는 사업으로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보상율 없음(2013. 1월 세칙 개정)

■ 노력보상액

• 계약수행노력 보상액

: 원가요소별로 보상율을 곱하여 산정

$$\text{계약수행노력 보상액} = \text{원가요소} \times \text{원가요소별 보상율}$$

☞ 원가 요소별 보상율

- 재료비(관급재료비, 수입품비,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산 원가대상물자는 제외) × 1%
  -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 4에 의거 구매한 국산화 부품 재료비의 경우 2%
- 노무비 × 3%(시제생산 5%, 용역 9%)
- 제조경비 × 3%(용역 5%)
  - \* 다만 제조경비중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개발비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
- 기술료 × 1%
  - \* 기술료중 로열티 및 면허사용료는 제외
- 외주가공비 × 4%(용역 1%)
  - \* 다만 외주가공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 개발비 × 10%(용역 12%)
- 일반관리비 × 3%(용역 4%)

• 원가절감노력 보상액

: 총원가에 원가절감보상율을 곱하여 산정

$$\text{원가절감노력 보상액} = \text{총원가} \times \text{원가절감보상율}(2\% \text{ 상한})$$

- 원가절감보상율 :  $\text{연간원가절감액} \div \text{연간 총원가}$
- 원가절감액 :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등을 통하여 산정된 원가절감액
- 연간원가절감액 : 원가절감액을 3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종료된 연도부터 3년 동안 반영

• 설비투자노력 보상액

: 총원가에 설비투자노력보상율을 곱하여 산정

$$\text{설비투자노력 보상액} = \text{총원가} \times \text{설비투자 노력보상율}$$

- 총원가 :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
- 설비투자보상율 = (①방산설비투자금액 × ②자기자본구성비, ③재투자비용) ÷ 총원가(공장별, 방산업체별, 관급재료비 포함)
- \* 자기자본구성비 :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 ÷ 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 \* 재투자비용('16.1.29.개정) : 자기자본 세전 순이익율(제조, 종합) - 금융비용을 차감한 율
- \*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자기자본세전 순 이익률(제조, 종합)에 1% 가산 후 금융비용 차감

• 경영노력 보상액('16.12.22.개정)  
: 총원가에 경영노력보상율을 곱하여 산정

경영노력보상액 = 총원가 × 경영노력보상율

- 경영노력보상율 : 경영노력 평가점수 × 0.1
- 경영노력 평가점수 : 중소 및 중견기업은 (1, 2, 3, 4) 평가점수의 50% 가산

※ 경영노력 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점수
1	연구개발노력	30점	1~15등급:30~5점
2	수출확대노력	30점	1~16등급:30~3점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10점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4	생산성 경영 노력	10점	Level 4:5점, Level 5:7.5점, Level 6이상:10점 (중소:L 3:5점, L4:7.5점, L5:10점, L6이상:10점)
소계(A)		80점	
국방통합원가시스템 ERP자료 연계 여부(B)		+10점	국방통합원가시스템 ERP자료 연계여부(B)
원가부정행위 유무(C) (2015년 10점→20점)		-20점	부당이득금, 가산금 환수 요구받은 사실 여부
최초 수출 또는 30%이상 수출증가(D)		5점	중소기업:1억, 중견기업:5억, 기타:50억이상
총계(A+B+C+D)			



TIP

◆ 원가자료 제출시 준비자료

▶ 공통원가

구분	제출자료
공통	1. 회계처리기준보고서(방위사업청 승인문서) 2. 결산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세무신고 재무제표)
직접노무비 단가 (=임률)	1. 조직도, 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 2. 직원별 직접/간접시간 현황(작업일보), 근태기록부 3. 임금규정, 임금대장, 인원현황, 퇴직급여(퇴직보험료)설정내역서 4. 기타 특이사항 (예: 파견근로계약시 계약서 등)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여유율)	작업일보, 무작업노무량 관련 공문 (예: 연/월차, 교육명령 등)
간접재료비 단가	1. 간접재료비원장, 소모품비원장 2. 결산서와 차이 발생시 관련자료
감가상각비 단가	1. 고정자산관리대장(취득금액, 취득년월, 내용년수 포함) 금형/치공구 관리대장 2. 자본적지출 관련비용 및 발생서류

**TIP**

▶ 직접원가

구 분	제 출 자 료
재료비	1. 소요량 근거자료 : 규격서, 제작도면, 감손율 통보자료(원가총괄팀) 재료 수불대장 등 2. 국내재료단가 확인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물가조사서, 거래명세서 등 수입신고필증, 대금지불내역(은행거래실적) 3. 수입재료단가 및 부대비용 확인자료 : 수입신고필증, 송금영수증, 부대비용 관련자료 등 4. 설물 : 물가정보지의 설물 단가내역, 폐기물처리내역서 등
노무비	표준공수 및 실적공수 관련근거(작업일보 등) 제조공정도
경비	1. 설계비 :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입원장 등 2. 시험검사비 : 시험검사내역서, 세금계산서, 규격서 등 3. 특허권사용료 : 계약서, 특허권사용료 지급대장 등 4. 기술료 : 기술도입허가서, 계약서, 송금내역서, 기술료지급대장 등 5. 연구개발비 : 개발대장, 회계처리대장, 인사명령 등 6. 외주가공비 : 제조경비대장, 세금계산서 등

**TIP**

◆ 개청 이후 변화된 주요 원가제도

▶ 비목별 주요 개선사항(2006~2016)

비 목	개 선 사 항
재료비	1. 부품 국산화 노력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 방산물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 및 시행세칙 제19조의 2('09.2월, '10.2월, '12.12월, '14.10월) 2. 재료비 산정시 비정상적인 가격 제외 ※ 방산물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17.7월) 3. 방산 외주정비사업의 재료소요량 적용 근거 마련 ※ 방산물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17.7월)
노무비	4. 퇴직급여 하한 삭제 ※ 방산물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6조('14.11월) 5. 방산 외주정비사업의 노무량 적용 근거 마련 ※ 방산물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17.7월)
경비 및 일반관리비	6.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촉진활동비 지원 확대 ※ 방산물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0조('12.12월) 7. 중소기업 원가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 방산물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 6 및 시행세칙 제 46조('13.11월) 8.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 방산물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7 및 시행세칙 제47조('17.10월)
이윤 및 기타	9.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방산물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1.12월, '16.1월, '16.12월)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 ('12.2월, '12.12월, '16.12월)

**TIP**

**1. 부품 국산화 노력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 해외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품의 수입가격을 최초 계약년도부터 5년간 인정
- 체계업체가 협력업체의 국산화부품 구입 시 재료비에 2%의 계약수행노력보상이율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 신설
-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인정 시 상한(개발단가의 2배) 폐지

**2. 재료비 산정시 비정상적인 가격 제외**

- 원가계산시 파악한 계약상대자의 재료의 통상적인 구입가격 또는 구입가능가격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제외

**3. 방산 외주정비사업의 재료소요량 적용 근거 마련**

- 외주정비사업의 재료 소요량 산정시
  1. 소요군 통보 소요량
  2. 대상장비에 대한 해체검사결과표에 의한 자료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자료(이하생략) 순서로 적용

**4. 퇴직급여 하한 삭제**

- 퇴직급여 상하한제(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 8분의 1 이하)적용으로 업체가 하한 미만의 퇴직 급여를 설정한 경우에도 하한을 원가에 반영하여 과다계상되고 있어 하한 폐지

**5. 방산 외주정비사업의 노무량 적용 근거 마련**

- 외주정비사업의 노무량 산정시
  1. 소요군 통지 정비노무량
  2. 대상장비의 해체검사표에 의하여 산출한 노무량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노무량(이하생략) 순서로 적용

**6.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촉진활동비 지원 확대**

-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광고선전비(방사청장이 후원/요청/승인하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만 인정하던 것을 수출촉진비(수출 관련 해외 시험평가비 등 직접경비)로 확대
- 해외 시험평가비 범위를 구체화, 업체 부담비율 설정, 정부는 발생비용의 90/100 지원

**7. 중소기업 원가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 방산중소기업의 원가관리 역량 향상 및 원가부정 등의 방지를 위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구축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산가격에 계상

**TIP**

**8.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보전**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시스템 장비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

**9.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2012년
  - 이윤 상/하한(9%~16%)폐지, 확정계약 확대를 위한 계약위험보상을 상향(일반/유인부 확정 계약, 한도액계약 등 1%~3%) 조정, 경영노력보상 항목 정비
- 2016년 1단계
  - 설비투자노력보상의 자기자본보상율 : 13% → 한국은행 고시 자기자본순이익율
  - 중소기업 투하자본보상 금융비용 : 회사채이자율 → 한국은행 고시 차입금이자율
- 2016년 2단계
  - (위험보상) 양산 단계별 계약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 초도양산 기술적위험보상율 0.75% → 1%, 확정계약 계약위험보상율 3% → 2%
  - (경영노력보상)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보상기준 정립 등
  - (기본보상) 방위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기본보상율 조정 (0.2~0.25/대기업 기준) 등

MEMO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on page 124.

MEMO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on page 125.



MEMO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on page 126.

MEMO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on page 127.



## 제 4편 방위사업법상 계약제도

**제1장** 계약관리의 기초 이론

**제2장** 방위사업법상 계약의 특례

**제3장** 방위사업법상 계약제도

# 04 제 4편 방위사업법상 계약제도

## 제1장 계약관리의 기초이론

### 1. 계약관리 기초개념

- 1)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복수의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되는 법률행위
- 2) 「국계약법 제 5조」에서는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 3)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국가계약법 제 5조)

### 2. 계약체계

- 1)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선정방법에 따라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계약가격의 확정여부에 따라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분류
- 2) 국방 획득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정부계약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제도와 방산물자 조달시에만 적용하는 「방위사업법」상의 계약제도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

### 3. 계약형태별 분류

#### 1) 계약대상범위에 의한 분류

경쟁계약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약체결</li> <li>• 자유로운 경쟁환경에서 입찰에 의한 가격결정</li> <li>• 다수인에게 동등한 경쟁기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인을 대상으로 계약체결</li> <li>• 특정인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li> </ul>

#### 2) 계약금액 확정여부에 따른 분류

확정계약	개산계약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계약이행 기간중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는 한 계약체결시 결정한 계약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계약형태	계약체결시 개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기간중이나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실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원가를 계약하여 지급하는 계약형태

#### 3) 계약이행기간에 의한 분류

단기계약	장기계약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지원으로 하는 계약방식 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에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행이 완료되는 통상적인 계약방식	계약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방식이며, 이 계약은 각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

#### 4)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의 계약제도

관련법규	계약방식	계약방법	계약종류
국가계약법 (일반물자)	경쟁계약	확정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경쟁계약</li> <li>• 제한경쟁계약</li> <li>• 지명경쟁계약</li> </ul>
	수의계약	확정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수의계약</li> <li>• 분할수의계약</li> </ul>
개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개산계약</li> </ul>	
방위사업법 (방산물자)	수의계약	확정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확정계약</li> <li>• 물가조정단가계약</li> <li>• 장기옵션계약</li> <li>• 원가절감유인계약</li> <li>• 원가절감보상계약</li> </ul>
		개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액계약 (*확정계약 가능)</li> <li>• 특정비목불확정계약</li> <li>• 중도확정계약</li> <li>• 일반개산계약</li> <li>• 성과기반계약</li> </ul>

## 제2장 방위사업법상 계약의 특례

### 1. 제정배경

: '06. 1월 국방획득업무 개선추진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정

- 1) 투명성 · 효율성 · 전문성 · 경쟁력 강화
- 2) 국방획득 전문기관 “방위사업청” 신설
- 3)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 획득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미비

### 2. 성격

- 1) 조달사업법의 특별법
  - 정부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달사업법(조달청)의 특별법
- 2) 국가계약법 일부 조항의 특별규정
  - 계약의 특례, 방산물자 지정 및 획득, 부당이득의 환수,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벌칙 등 국가계약법에 없는 사항을 규정함

### 3. 방위사업법 법령체계

구분	법령명칭			
법률	방위사업법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방위사업청 훈령 등	방위사업 관리규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기타 훈령, 예규, 지침 (국가정책사업 적용지침, 물품적격심사기준 등)			
국방부 훈령 등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기타 훈령, 예규, 지침			

### 4. 방위사업법 변천과정

구분	날짜	주요내용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3. 2. 17. (최초 제정)	• 장기계약의 체결 근거 마련 • “군수물자”란 단어 사용
	1977. 7. 23. (전문개정)	• 군수물자에 관한 개산계약 체결 근거 마련 • 착 · 중도금 제도 마련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명칭 변경)	1983. 12. 31.	• 법률명칭 변경 • “군수물자”를 “방산물자”로 용어 전환
	1988. 1. 1.(개정)	• 문구조정
	1999. 1. 1.(개정)	• 관련 법률 명칭을 “예산회계법”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개정
방위사업법	2006. 1. 2.(제정)	• 법률 명칭 변경 •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2008. 2. 29.(개정)	• 정부조직 개편내용 (재정경제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반영
	2014. 6. 11.(개정)	•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도입(제46조 제5항)
	2014. 11. 10.(개정)	• 중기계획수립/시험평가주체(방사청 → 국방부) • 소요결정(국방부 → 합참)

### 5. 계약특례 적용대상 및 내용

- 1) 계약특례 적용대상(방위사업법 제46조)
  - 방산물자
  -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
  - 방위사업법 제 18조 제 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포함)
- 2) 특례내용
  -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장기계약) 체결 가능

- 계약의 종류 · 내용 · 방법 등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
  - 대상 :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방산지정물자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관련규정 준용
-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종 납품할 때까지 정산 유예 가능
-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별도 제정 운영
- 계약체결전 사전생산 가능(대상 : 방산물자)

## 6. 장기계약

### 1) 적용대상(방위사업법 제46조)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 방산지정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로써 계약이행에 수 년을 요하는 경우
-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기계약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국가계약법시행령 관련 조항 준용

- 예정가격 : 총 제조금액(관급 제외)의 범위안에서 결정
- 입찰보증금 : 100분의 5 이상
- 계약보증금 : 100분의 10 이상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방법 준용

### 3) 계속비계약 / 장기계속계약 / 장기계약 비교

구분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약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방위사업법시행령 제 60조 (장기계약)
적용대상	물품, 용역, 공사		• 방산물자, 수리부속 • 연구 또는 시제품
사업내용	사업내용 확정		국가계약법령의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준용
예산확보 (국회승인)	총예산 확보 (국회승인)	당해연도 예산만 확보	

구분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약
예산명	계속비 예산	당해연도 예산	국가계약법령의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준용
계약체결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 (연부액 표기)	총 제조금액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계약	
계약보증금	총 계약금액의 10%이상	총 부기금액의 10%이상 (완료된 부분 반환)	
계약기간	5년 이내	제한없음	착 · 중도금 지급
선금지급	당해연도 이행금액 기준	당해연도 계약금액 기준	
중간정산	기성 및 기납 처리		중도금 처리/채권 확보
납기설정	품목별 최종 납기 설정	매년 납기 설정 (차수 계약별)	최종납기 설정
지체상금 계산기준	전체 계약금액 기준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	전체 계약금액 기준



TIP

#### ◆ 장기사업 계약방법(예)

구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비계약 계약기간 : 5년 이내 5년경과시 국회승인	500억원 (계약금액)	100억	100억	100억	100억	100억
		계약서에 연부액 표기				
장기계속계약 5년 초과 계약가능	500억원 (부기금액)	100억 (1차계약)	(100억)	(100억)	(100억)	(100억)
		국회 예산승인 후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장기계약 5년 초과 계약가능	500억원 (부기금액)	100억	100억	100억	100억	100억
		(계약금액)	연부액 표기(예산배정 후 수정계약)			

**TIP**

**《장기계약 운용 실태》**

- 최초(1차)계약
  - 계약서 표지에 총 제조금액 부기하고 계약연도 승인된 예산을 계약금액으로 표기
    - \* 장기계속계약 준용
  - 계약명세서에 사업승인 시 결정된 연부액을 기재
    - \* 계속비계약 준용
- 2차 이후 계약
  - 방산물자 : 당해 연도 연부액을 확정하는 수정계약 체결
    - \* 계속비계약 준용(2차계약으로 같음)
  - 일반물자 : 당해 연도 연부액 범위내에서 2차 이후 계약체결
    - \* 장기계속계약 준용
- 계약기간 : 5년 초과하여 계약체결 가능
  - \* 장기계속계약 준용

**제3장 방위사업법상 계약제도**

**1. 일반확정계약**

- 1) 계약체결기준 : 규격·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원가계산이 가능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계약
- 2) 계약금액 결정 : 계약체결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2. 물가조정단가계약**

- 1) 계약체결기준 : 최근 3년(종전 2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계약한 실적이 있고, 추정가격이 20억원(종전 5억원)이하인 품목에 적용
- 2) 계약금액 결정

구분	비 목	계 산 방 법
재료비	수입재료비	수입재료 계약단가 × 수입물가 중분류 지수(한국은행 발표)
	그 외 재료비	수입재료 제외한 재료비 × 생산자물가지수 중분류 지수(한국은행 발표)
노무비	노무비	노무비 계약단가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인상률과 최근 3개년 임금인상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경비	경비	경비 계약단가 × 생산자물가 총지수(한국은행 발표)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직접 계산
일반관리비, 이윤		최근 계약실적단가에서 적용한 일반관리비, 이윤, 투자자본보상비, 수출보전감가상각비, 제세 등이 차지하는 실적비율

### 3. 원가절감보상계약

- 1) 계약체결기준
  - 계약체결시 원가계산 가능하고, 계약이행 중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품목
  - 원가절감보상계약 이외 계약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원가절감보상계약 가능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은 계약금액 확정 후 원가절감이 ……………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
- 2) 적용대상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국산화 개발, 열관리, 규격 및 공정개선, 품질 및 성능개선, 기타 원가절감 방안
- 3) 원가절감보상액 : 원가절감액 전액(5년 이내 계약 시 원가절감보상액 지급)

### 4. 원가절감유인계약

- 1) 계약체결기준 : 예정가격 산정이 가능하고, 사업 특성상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인이익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2) 계약금액결정 : 다음 각 호의 가격을 합산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계약체결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 : 예정가격
  - 계약체결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 : 개산가격
- 3) 정산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
  - 유인적용대상 비목 : 실제 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
  - 유인적용대상이 아닌 비목 : 계약금액 결정시 결정된 금액

※ 원가절감액은 5년 이내 계약체결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

### 5. 한도액계약

- 1) 무기체계의 수리부속 및 정비계약시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발생시 마다 소요군이 계약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하여 구매하는 방법

- 2) 대상 : 국내 연구개발된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외주정비 포함)과 국외조달 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기술용역 포함)
- 3) 정산 : 납품품목이 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실제 납품된 품목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한도액 내에서 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 6. 장기옵션계약

- 1) 계약체결기준 :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 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기옵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 2)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기할 내용
  - 장기옵션계약의 품목 · 수량 및 계약기간
  - 장기옵션계약의 계약금액의 결정
  -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기옵션계약 미이행시 계약의 불이익, 손해 배상금 징수, 장기옵션계약 불이행 정보의 공개 등 조치사항
- 3) 장기옵션계약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 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

### 7. 중도확정계약

- 1) 계약체결기준
 

계약시 원가자료 획득이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어 계약 이행의 중도 또는 일정량의 생산 후 필요한 원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2) 계약금액 결정
  - 계약금액 : 개산원가에 따라 개산가격으로 계약체결
  - 계약금액 확정 :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결정



3) 중도확정시기

- 계약물량의 1/2범위 안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 계약기간의 1/2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원가계산이 가능한 때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1) 계약체결기준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재료비 등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 적용
- 2) 계약금액결정 : 계약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하여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함 (외주정비 등에 주로 사용)

**9. 성과기반계약**

- 1) 계약체결기준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에 적용
- 2) 적용대상
  - 군 직접 정비지원체계 구축이 제한되는 장비
  - 수리부속 조달기간이 지연 또는 조달 불가능하거나, 수리부속 진부화 속도가 빠른 장비
  - 수리난이도 : 외주정비 소요가 증대되는 고가 전자정밀장비
  - 고가의 수리부속 소요가 증대되는 모듈화된 구성품으로 구성된 장비
  - 장비유지비 소요가 많은 고가의 다중 소량 장비
  - 업체 기반체계 활용시 지원의 효율성이 높은 장비
  - 기타 성과기반군수지원(PBL)사업 적용이 다른 방안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장비
- 3) 성과금 및 감액의 범위 : 총원가의 10% 이내

**10. 일반개산계약**

- 1) 계약체결기준 : 연구 또는 시제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포함)을 위한 계약체결시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2) 계약금액 결정 : 계약은 개산가격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초로 산정

**11. 한도액성과계약**

- 1) 계약체결기준 :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방법

**12.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계약방법 선택 기준**

구 분	계 약 방 법
연구개발단계	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초도(1차)양산단계	일반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2차양산단계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2차양산 이후 단계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기타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한도액계약은 해당 계약체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



### 13. 방산물자 지정범위에 따른 계약방법

#### 1)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 제 3조 (정의) 제 8호

“방위사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 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제 2항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측정장비 2. 검사장비 3. 교정장비

#### 2) 방산물자 지정범위와 계약방법

- 방산물자 수리부속(생산주체에 따른 분류)

구 분	방산물자 인정여부	계약방법
방산업체 직접생산품	방산물자로 분류	방산수의계약
협력(외주)업체 생산품	일반물자로 분류	일반(제한)경쟁계약
해외 수입품		

-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시험 측정장비, 정비장비, 교정장비

구 분	방산물자 인정여부	계약방법
방산업체 직접생산품	방산물자로 분류	방산수의계약
협력(외주)업체 생산품	일반물자로 분류	일반(제한)경쟁계약
해외 수입품		

※ 생산에는 수리, 정비, 개량, 개조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방산업체가 해당 방산물자에 대하여 직접 생산(수리, 정비, 개량, 개조 등)하는 경우에는 방산수의계약이 가능함

MEMO



Dotted lines for taking notes.



## 부 록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

DEFENSE ARTICLES  
COST CONTROL GUIDEBOOK  
DAPA 2018

부록 I. 방위사업청 원가관리 조직

부록 II. 원가 심사사례

부록 III. 방산원가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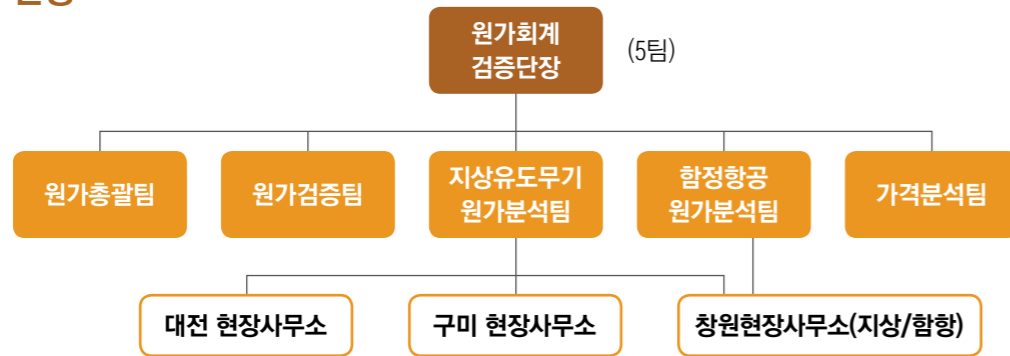


# 부록 I 방위사업청 원가관리 조직



## 제1장 계약관리의 기초이론

### 1. 편성



### 2. 팀별 주요 수행업무

- 1) 원가총괄팀
  - 원가관련 업무의 기획 및 계획 수립, 방산/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 방위산업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2) 원가검증팀
  - 원가검증 업무의 기본계획 수립(대상사업 선정 등)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필수/특별검증 및 자료관리 등
- 3) 가격분석팀
  -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
  - 원가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등

- 4) 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 / 합정항공원가분석팀
  -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원가검증 대상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 원가검증팀)
  - 원가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 원가심사 의뢰 및 확정 등

### 3. 원가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 1) 원가회계심의위원회(청 예규 / '14.2.6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 방위사업법 제58조(부당이득 환수)에 의한 원가검증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원가부정행위 판단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원가회계검증단장
    - 심의위원 :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내부 1명, 외부 3명)
  - 심의대상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여부
    -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부정행위 해당 여부
    -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부정행위 해당 여부
    -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결요건 :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결과 : 본부장 참고보고
- 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심의위원회(본부 지침/'12.6.25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사항(신규·갱신·정지·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 방산원가관리체계
    - \* 방산원가관리체계  
방산업체가 적정한 원가의 집계와 배분, 계산, 분석, 검증 등의 원가관리 업무와 방위사업청 또는 타 방산업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 및 운영하고 있는 회계기준,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방산업체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사업관리) 등 원가관리 체계를 인증하여 원가계산 시 추가이윤(총원가의 1%, 중소기업 1.5%)을 가산하는 제도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원가회계검증단장
  - 심의위원 :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5명(내부 2명, 외부 3명)
- 심의대상
  - 인증신청업체의 ERP시스템 등 시스템 평가결과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갱신, 만료, 정지, 취소
  - 기타 본부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결과 : 본부장 보고

3)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회(본부 지침/10.10.29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지침)

- 농·축·수산물의 가격협의 및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
- 협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원가회계검증단장
  - 협의위원 :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10명(국방부, 각 군, 농협 등)
- 협의안건
  - 농·축·수산물의 가격협의 및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 농·축·수산물의 가격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의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협의결과 : 본부장 참고보고

## 부록Ⅱ 원가심사사례







### 차 례

<b>I. 재료비</b>		
1. 재료 단위당 가격 산정 오류		152
2. 원자재 정산 오류		153
3. 도장재료비를 직접재료비 계상(정산)		154
4. 직접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간접재료비의 구분 오류		154
5. 재료비 소요량 적용 오류		155
6. 신규사업 감손율 적용방법		155
7. 감손자료 미제출 방산업체에 대한 감손율 적용 부적정		156
8. 감손율 적용 오류		157
9. 감손율(손실량, 시료량) 적용 오류		158
10.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160
11.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160
12. 수입부대비 인정방법 부적정		161
13. 중도확정계약의 환율 적용시점		161
14. 국산화부품 환율 적용 오류		162
15. 수입부대비중 운송료 적용방법		163
16. 수입부대비에 대한 이윤계상방법 부적정		163
17. 관세 산정 부적정		164
18. 포장재료비 계산 부적정		166
19. 설물단가 산정 오류		166

<b>II. 노무비</b>		
20. 임금인상률 산정 부적정		168
21. 공수 산정 오류		169
22. 노무공수 적용 오류		169
23.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 적용 오류		170
24. 여유율 적용 오류		171
25. 노무비 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72
26. 노무비 단가 적용 오류		173
27.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175
28.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176
29. 노무비 단가 인상률 적용 오류		177
30. 공통원가 임률 산정 부적정		178
<b>III. 경비</b>		
31. 수출품의 범위 판단 오류(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179
32. 전용장비의 감가상각방법		179
33. 감가상각비 계산(내용연수) 부적정		180
34. 방산 수출물량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윤산정 부적정		181
35.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182
36. 방위산업전용시설 처분이익 적용 오류		183
37. 시험검사비 배부대상 수량 적용 오류		184
38. 경비항목 중 시험제작비 반영된 품목에 대한 적용 오류		185
39. 공용감가상각비 단가 산정 오류		186
40. 기술료 적용 오류		187
<b>IV. 기타</b>		
41.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부적정		188
42. 경영노력보상율(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적용 오류		189
43. 구입완성품의 원가계산 적용 오류		190
44. 원가계산방법 기준 적용 부적정		191





# I 재료비

## 1. 재료 단위당 가격 산정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3127(2014.11.24.)
-  **심사내용** | 기술변경으로 업체가 변경되는 2개 품목에 대해 실적가를 반영하였으나, 확정원가 계산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해당 제조업체의 제비율 및 공통원가를 적용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확정원가 계산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해당 제조업체의 제비율 및 공통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 실적업체의 제비율 및 공통원가를 적용함
  - 시 정 : 확정원가 계산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해당 제조업체의 제비율 및 공통원가를 적용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0조**
  -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다음 각 호의 가격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
  - ② 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이라함은 원가계산시 파악한 계약상대자의 재료의 구입가격 또는 구입가능가격을 말하고 재료의 구입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다만, 소량소액의 제조, 구입 또는 유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도 가격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 등을 적용한다.





## 2. 원자재 정산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391(2015.2.10.)
-  **심사내용** |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원자재를 정산시 단가 및 소요량, 수입부대비용, 관세에 대하여도 정산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원자재를 정산시 단가에 대해서만 정산
  - 시 정 : 원자재 정산시 단가 외에 소요량, 수입부대비용, 관세에 대하여도 정산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0조(직접재료비)**
  -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에 따른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다음 각 호의 가격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
  - 2. 수입품의 가격 : 제14조에 따른 물자대·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의 합계액




### 3. 도장재료를 직접재료비 계상(정산)

-  **심사요지** | 제품을 구성하지 않은 도장재료를 직접재료비로 계상(2007. 2.)
-  **심사내용** | 제품을 구성하지 않은 도장재료를 결산서상에 간접재료비로 회계 처리한 것을 직접재료비에 포함하여 중복 계상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도장재료를 직접재료비에 포함 중복 계상
  - 심사의견 : 도장재료를 직접재료비에서 제외 계상



### 4. 직접재료비 성격의 비용을 간접재료비로 구분 오류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1183(2012.5.8.)
-  **심사내용** | 특정사업에 직접 추적 가능한 직접재료비인 포장재료비 및 유류 등을 제외한 후 공통원가 간접재료비를 산정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직접재료비 성격의 비용인 포장재료비, 유류 등을 간접 재료비에 포함함
  - 심사의견 : 특정사업에 직접 추적 가능한 비용은 공통원가 간접 재료비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세칙 제15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구입 부품비·포장재료비 등으로 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등으로 한다.

### 5. 재료비 소요량 적용 오류

-  **심사요지** | 방산물자 원가산정시 구입부품비의 불량률을 감손율 산정주기에 의거 산정 적용하여야 하나 과거년도 불량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2006. 4.)
-  **심사내용** | 감손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15조에 따라 6회 이하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매년 산정 또는 7회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매 3년 마다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거 8년 전 불량률을 그대로 적용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과거 1998년 산정 불량률을 그대로 적용
  - 심사의견 : 과거 실효성 없는 불량률 부인

### 6. 신규사업 감손율 적용방법

-  **심사요지** | 신규 사업에 대한 감손율을 적용함에 있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 자체 실적분을 직접재료비에 반영(국방부)
-  **심사내용** | 신규사업에 대한 직접재료비 계산시 적용되는 감손율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에 의거 유사한 품목의 감손율을 상한으로 적용해야 함



## 7. 감손자료 미제출 방산업체에 대한 감손율 적용 부적정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1515(2012.6.11.)
- 심사내용** | 감손율(손실량, 불량량, 시료량)을 반영하여 재료 소요량을 산출할 경우에는 업체가 최근 생산실적을 제출하고 청에서 승인하여 통보된 감손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업체는 최근 생산실적을 미제출 하였으므로 감손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감손율(손실량, 불량량, 시료량)을 반영하여 재료 소요량을 산출할 경우에는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 지침」에 따라 해당업체가 최근 생산실적을 제출하고 청에서 승인하여 통보된 감손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해당업체는 최근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과거 생산실적으로 청에서 승인한 감손율을 적용함
  - 심사의견 : 최근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감손율을 승인받지 않았으므로 감손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 지침」 제23조(감손율 적용의 예외) ①방산업체의 감손자료 미제출시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15조제1항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 또는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해당부품(품목)의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 참고사항**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123호, 2013. 3. 25. 개정) 제9조(적용연도 감손율 산정)**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연도 감손율을 산정한다.
 
  1. 손실률 : 과거 산정 실적 중 최저치를 상한으로 하여 산정
  2. 시료율 : 국방규격 시료량을 인정하여 산정(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불량률 : 불인정





## 8. 감손율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434(2015.2.17.)
- 심사내용** | 방위사업청이 통보한 감손율이 부품단위인 경우, 제품별 감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별 감손율을 적용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감손율 산정대상으로 부품별 감손율을 통보받은 후 제품별 감손율을 별도 산정하여 원가산정시 적용
  - 시 정 : 방위사업청이 통보한 감손율이 부품단위인 경우, 제품별 감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별 감손율을 적용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5조(감손의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  
 ① 감손율 산정대상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의 완제품, 부품, 반제품으로 한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17조(감손율의 적용)**  
 ①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감손율은 직접재료비에 적용한다



## 9. 감손율(손실량, 시료량)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2731(2015.10.27.)
-  **심사내용** | 원가검증 시점까지 X-2년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방산물자의 감손율 자료(X-2년 생산실적)를 미제출 하였으나 과거의 감손율 적용
  - 시 정 : X년에 적용할 감손율 자료는 X-1년 7월 31일까지 X-2년 생산실적에 대한 조사표를 제출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원가검증 시점까지 X-2년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9조(적용연도 감손율 산정)**
  -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방산업체로부터 매 산정연도(X-1년) 7월 31일 까지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받아 적용연도(X년) 감손율을 산정한다. 다만,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감손율을 산정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연도 감손율을 산정한다.
    1. 손실률 : 과거 산정실적 중 최저치를 상한으로 하여 산정
    2. 시료율 : 국방규격 시료량을 인정하여 산정(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불량률 : 불인정
  - ③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지연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료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는지 여부
- 4.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
- 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
- ④ 감손율 조사표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받으며, 필요시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방산업체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 ※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제21조(감손율 적용의 예외)




- ① 방산업체가 원가검증 시점까지 감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 ② 제12조 제1항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해당품목(부품)의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별표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8. '산정연도(X-1년)'라 함은 전년도(X-2년) 생산실적에 대한 조사표를 제출하는 연도를 말한다.
- 22. '적용연도(X년)'라 함은 산정연도에 산정된 감손율을 적용하는 연도를 말한다.



### 10.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  **심사요지** | 수입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품 원가 계산을 하여야 하나 국내구입으로 산정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 (2007. 8.)
-  **심사내용** | 수입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품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국내구입으로 판단하여 원가계산방법을 바꿔 원가 산정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수입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 구입으로 판단하여 원가 산정 적용
  - 심사의견 : 수입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품 원가계산으로 원가 산정 적용



### 11. 수입재료비 산정 오류

-  **심사요지** | 수입재료비 산정시 물자대에 일반관리비, 이윤, 관세를 가산하여 원가를 과다계상(2007. 11.)
-  **심사내용** | 수입재료비 산정시 물자대 및 부대비용만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일반관리비, 이윤, 관세금액을 가산하여 산정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수입물자대에 일반관리비, 이윤, 관세금액을 가산하여 산정
  - 심사의견 : 수입물자대에 부대비용만을 산정하여 반영





### 12. 수입부대비 인정방법 부적정

-  **심사요지** | 수입부대비 계산시 발생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사제품 또는 연간 전체실적을 기초로 물자대 대비 부대비율을 산출하여 반영
-  **심사내용** | 개산계약 정산시 수입부대비는 해당제품과 관련하여 발생증빙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함

### 13. 중도확정계약의 환율 적용시점

-  **심사요지** | 중도확정계약에 대한 원가정산시 수입부품 미결제분의 환율을 원가 계산시점의 전신환매도율 적용(국방부)
-  **심사내용**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중도확정계약은 중도확정 시점까지는 실발생원가를, 중도확정 이후의 원가는 중도 확정시점 까지 획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확정하는 계약형태임 따라서 환율은 정산원가계산 시점과 관계없이 중도확정시점의 전신 환매도율을 적용해야 함

### 14. 국산화부품 환율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434(2015.2.17.)
-  **심사내용** | 방산원가 규칙 제39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인정시 수입가격에 적용하는 환율은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 승인 시점 이후 3개년 평균환율이 아닌 국산화개발 승인시점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산정시 수입실적가에 국산화개발 승인 이후 3개년 평균환율을 적용하였음
  - 시 정 : 방산원가 규칙 제39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산화부품의 수입가격 인정시 수입가격에 적용하는 환율은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후 3개년 평균환율이 아닌 국산화개발 승인시점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②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 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 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15. 수입부대비 중 운송료 적용방법

-  **심사요지** | 일반개산계약 원가정산시 해상운송료 및 항공운송료에 대해 실 발생비용을 계상함(국방부)
-  **심사내용** | 수입부대비의 운송료 산정시 항공운임은 제품의 특성상 해상운송이 불합리하거나, 발주량이 적어서 항공운송에 의하는 것이 저렴할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

### 16. 수입부대비에 대한 이윤계상방법 부적정

-  **심사요지** | 수입완성품 원가계산시 이윤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부대비 범주에 해상적하보험료 및 운임을 포함하여 이윤계상
-  **심사의견** | 해상적하보험료 및 운임은 수입물자대에 해당하므로 이윤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17. 관세산정 부적정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2871(2013.10.7.), 회계제도담당관-258(2015.1.30.)
-  **심사내용** | 가. 수입재료비의 관세액은 해당 품목의 실발생 관세액을 적용하여 정산 하여야 함  
나. 수개의 수입품목을 일건의 수입신고서로 신고할 경우에는 수입 품목별로 해당 품목의 실발생 관세액을 확인한 후 관세를 산정 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① 수입재료비중 일부품목(1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 개의 수입품목을 일건의 수입신고서로 처리함에 따라 별지의 해당품목별 관세액을 확인하지 않고 수입신고서상 전체품목을 기준으로 관세액을 산정함
  - ② 수입재료비중 일부품목(12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관련 시스템에서 선하증권(B/L)별로 관세액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오류발생으로 관세액을 잘못 적용함
- 시 정 : 실발생 관세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1. 방산원가규칙 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수입품의 수입 가격은 물자대·수입제세·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수입제세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2.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 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1.)
  - ①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 ②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3. 관세법 부칙(제11602호, 2013.1.1.)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세율불균형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 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적용기간 및 감면율				
2013.1.1. ~ 2014.12.31.	2015.1.1. ~ 12.31.	2016.1.1. ~ 12.31.	2017.1.1. ~ 12.31.	2018.1.1. ~12.31.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세율 100분의 20

## 18. 포장재료비 계산 부적정

-  **심사요지** | 포장재료비 실발생금액을 전액 원가계상
-  **심사의견** | 계약특수조건에 포장재료비는 기존사업의 포장재를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원가에서 배제함이 타당함  
포장재가 목재로서 상식적으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계약특수조건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사업 수행시 재활용율을 적용함  
  
본 건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특수조건은 향후 정산시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은 계약체결시 유념하여야 함

## 19. 설물단가 산정 오류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2214(2013.7.26.)
-  **심사내용** | 시세 등락 폭이 큰 재료의 설물단가 산정시 최근 매각 실적단가를 고려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설물단가 산정시 과거 2년치(2010년, 2011년)의 매각단가 평균치를 적용하여 설물단가를 산정
  - 심사의견 : 설물단가 산정시 최근 매각단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2조(설물의 평가)
    - ① 설물은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의 평가액 : 재료비에서 차감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의 평가액 : 총원가에서 차감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의 평가액 : 수입가격에서 차감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 II 노무비

### 20. 임금인상률 산정 부적정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1185(2012.5.8.)
-  **심사내용** | 방산원가세칙 제20조(노무비)에 따라 임금인상 노사합의가 안된 경우의 임금인상률은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연도별 실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노사합의가 안된 경우의 임금인상률 산정시 계약상대자의 과거 3개년 실적률이 아닌 임금인상 예상률로 산정함
  - 심사의견 :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연도별 실적률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세칙 제20조(노무비)**
  - ⑤ 규칙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의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상 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률 및 전체 계약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 4. 한국경영자총협회제시 임금인상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 21. 공수 산정 오류

-  **심사요지** | 실적관리 없이 표준공수를 기준으로 작업공수를 적용하여 자작공정의 외주 전환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에 대한 원가계산시 업체가 제시한 실적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원가 과다계상 및 객관성 결여 (2006. 5.)
-  **심사내용** | 일부 공정을 자작에서 외주가공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발생 실적 등을 관리하여 공수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업체가 제시한 전년도 실적 공수를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객관성 결여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자작에서 외주가공으로 전환함에 따른 공수 산정의 적정성 결여
  - 심사의견 : 자작에서 외주가공으로 전환함에 따른 공수 산정의 적정성 검토

### 22. 노무공수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3431(2014.12.23.)
-  **심사내용** | 작업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용도의 외부출장 노무량은 배제되어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작업노무량 산정시 개인용도의 외부출장 노무량을 포함하여 산정
  - 시 정 : 작업노무량 산정시 개인용도의 외부출장 노무량을 배제



**관련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1조(직접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되, 제조 공정별로 투입 인원·작업시간 및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드는 노무량을 집계하여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 ① 규칙 제21조제1항의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노무량은 규칙 제16조제2항의 직접노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작업노무량과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하며, 간접 및 무작업 노무량의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23.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 적용 오류**



**관련근거**

계약제도심사팀-923(2016.6.8.)



**심사내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인하여야 함



**시정내용**

- 적용오류 :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을 노무비에 계상
- 시 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부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24. 여유율(작업준비시간) 적용 오류**



**관련근거**

계약제도심사팀-778(2016.5.26.)



**심사내용**

작업준비시간은 직접작업시간이 아닌 간접작업노무량으로 분류하여 여유율에 반영하여야 함



**시정내용**

- 적용오류 : 작업준비시간을 직접작업시간으로 분류하였음
- 시 정 : 작업준비시간은 직접작업시간이 아닌 간접작업노무량으로 분류하여 여유율에 반영하여야 함







**관련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세부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간접 작업 노무량	회 의	• 일상 반복적인 업무관련 조회/회의 • 반별, 조별 업무능률 향상 관련 활동
	작업준비	• 정상적, 필요적 작업준비시간 • 자재청구/수령에 따른 정상적인 소요시간
	휴 식	• 노사합의에 의한 정기적인 휴식시간
	작업관리	• 작업, 공구, 자재 관련 필수적인 관리 소요시간 • 경상적, 주기적 장비점검 및 수선시간 • 주변환경정리와 관련된 작업장 정리
	정상대기	• 관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 • 관급자재 검사 대기시간 • 천재지변에 의한 정전, 단수시간 등 • 정부관련 설계 및 규격의 의도적인 변경



### 25. 노무비단가 인상을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1162(2013.4.29.)
-  **심사내용** | 장기확정계약시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3개년 임금인상률(기하평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을 적용하여 반영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장기확정계약시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3개년 임금인상률(기하평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매년 노사합의 인상률을 적용함
  - 시 정 : 장기확정계약시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3개년 임금인상률(기하평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을 적용하여 반영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 ⑤ 규칙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의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상 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률 및 전체 계약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 4.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기하평균) 임금인상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 평균율

### 26. 노무비단가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2615(2014.9.30.)
-  **심사내용** | 개선계약의 정산원가는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노무비 단가는 전년도 적용 공통원가가 아닌 실적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당해년도 노무비단가는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적용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전년도, 당해연도의 노무비단가를 전년도 적용 공통 원가 노무비단가 적용
  - 시 정 : 전년도 노무비단가는 실적노무비단가를 적용하고, 당해 연도 노무비단가는 시행세칙 제20조제5항에 의거하여 적용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정산원가의 계산)**
  - ② 정산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노무비·간접 경비·일반관리비·투자자본보상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납품일 현재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1조(직접노무비)**
  - ② 노무비 단가는 원가계산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노무비 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 ⑤ 규칙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의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상 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노사합의계획서(사용자가 확정된 임금인상 계획서)에 의한 임금인상 예상율
  2. 시중노임단가(기본급) 제조부분 평균임금 인상율
  3. 정부세출예산서상의 평균급여 인상율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율(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4.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기하평균) 임금인상율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율(기하평균)의 산술 평균율
  5.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의 정상적 임금인상 실적율(기하평균)

**27. 퇴직급여설정률 산정 부적정**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1421(2014.5.21.)
-  **심사내용** |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성과급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 설정률을 산정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총급여액에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급여설정률을 산정한 후 성과급을 포함한 직접노무비에 적용함으로써 퇴직 급여가 과다 계상됨
  - 시 정 : 퇴직급여 설정대상이 아닌 성과급을 총급여액에서 제외 하고 퇴직급여설정률을 산정하고, 성과급을 제외한 직접노무비에 퇴직급여 설정률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6조(퇴직급여)**

- ① 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의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 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중 당해 방산업체의 사규 또는 노동 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 다음의 퇴직급여설정률을 곱하여 계산 한다. 다만, 퇴직급여설정률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




$$\text{퇴직급여설정률} = \frac{\text{직전년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액}}{\text{직전년도 총급여액}}$$


## 28. 퇴직급여설정을 산정 부적정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1438(2014.5.22.), 회계제도담당관-1643(2014.6.10.)
-  **심사내용** | 정년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퇴직급여설정을 산정시 퇴직급여에 정년퇴직자에게 향후 지급 예정인 포상금(금 지급 및 여행경비 지원금) 추정액이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계상됨
  - 시 정 : 정년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퇴직급여설정을 산정시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며, 실지급액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6조(노무비)**
  -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
    2. 각종 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3. 상여
    4. 퇴직급여

## 29. 노무비단가 인상을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891 (2014.3.26.)
-  **심사내용** | 노무비단가 인상은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20조5항4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예상노무비단가가 아닌 최근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을 적용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20조5항4호를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년 실발생노무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예상노무비단가(공통원가 적용 노무비단가)를 오류 적용
  - 시 정 : 예상노무비단가(공통원가 적용 노무비단가)가 아닌 실발생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 ⑤ 규칙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의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상 노사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4.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기하평균) 임금인상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 평균율

### 30. 공통원가 임률 산정 부적정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2443(2011.10.24.)
-  **심사내용** | 방산원가세칙 제20조에 의거 노무비산정시 대상기간 중 소속부서에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나, 일부 타부서 근무기간 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정하여 계산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함정분야의 공통원가(임률) 산정시 전년도 급여실적을 집계하면서 민수부문에 근무하던 인원이 방산부문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민수부문에 근무한 급여 실적을 포함하여 임률 산정
  - 심사의견 : 방산부문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임률 산정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직접노무비)**
  - ① 규칙 제21조제1항의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 Ⅲ 경 비





### 31. 수출품의 범위 판단 오류(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  **심사요지** | 수출품은 수출되는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와 국방부장관(현행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물자로서 주요 방위산업 물자와 유사한 물자에 한하나,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물량에 대하여도 특례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
-  **심사내용** | 방산미지정 수출물량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 32. 전용장비의 감가상각방법

-  **심사요지** | 신규 취득한 전용장비에 대해 전용성의 여부를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 절차 없이 생산량 비례법에 의거 상각비 반영(국방부)
-  **심사내용** | 방산전용장비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그 전용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생산량 비례법으로 상각 가능함

### 33. 감가상각비 계산(내용연수) 부적정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1310(2012.5.21.), 회계제도담당관-1369(2015.6.3.)
-  **심사내용** | 방산원가세칙 제21조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해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신고·승인된 내용연수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재무제표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
  - 심사의견 :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
-  **관련규정** |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감가상각비)**
  - ①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새로이 기계 장치·치공구·검사용 계기·금형·전용구축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로서 그 계산방법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 내용연수로 한다.
    2.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생산능력 또는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상각비를 계산한다.
    3. 계약기간과 제1호에 의한 내용연수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4. 방산 수출물량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윤 산정 부적정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176(2012.1.20.)
-  **심사내용** | 방산 수출물량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이윤(투하자본보상비 및 일반관리비 포함)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방산 수출물량의 원가를 보전하는 경우, 방산 수출 물량에 대한 직접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산정하고 이윤(투하자본보상비 및 일반관리비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 심사의견 : 방산 수출물량의 원가를 보전하는 경우, 방산 수출 물량분에 해당하는 직접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산정하고, 이윤(투하자본보상비 및 일반관리비 포함) 산정시 배제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37호, 2011.5.9. 개정)**

**제39조의3(방산 수출물량 원가보전)** ① 방산 수출물량을 같이 생산 하는 경우에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중 직접감가상각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원가에 계상하며, 보전 방법과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산 수출물량 원가보전액은 이윤 산정시 제외한다.

※ 방산원가규칙 제39조의3(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해 소비되는 가액은 아니지만, 방산 물자의 수출확대를 통해 방산기반을 확충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해당 계약의 원가에 별도로 산정하여 가산하는 것으로, 동 규칙 제2조(정의)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계약목적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제조 원가나 총원가의 의미는 아님. 따라서 수출물량 원가보전가액에 별도로 일반관리비와 투하자본보상비를 포함한 이윤은 계상 하지 않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05호, 2013.10.10. 개정)**

**제39조의3(방산 수출물량 직접 감가상각비 보전)** ① 방산 수출물량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 수출물량에 대한 직접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에 계상하며, 보전 방법과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감가상각비 보전액은 일반관리비, 투하자본 보상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35.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오류**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1119(2015.5.8.), 회계제도담당관-1479(2015.6.12.)

**심사내용** |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미상각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의 상각비범위 (연평균 상각비)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함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감가상각 완료 후 자본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원시 취득가액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초과하여 적용  
• 시 정 :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의 상각비 범위(연평균 상각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감가상각비)**  
㉠ 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당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미상각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의 상각비범위 (연평균 상각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36. 방위산업전용시설 처분이익 적용 오류**

**관련근거** | 계약제도심사팀-801(2016.5.27.)

**심사내용** |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처분 이익을 차감하여야 함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방위산업전용시설의 처분이익을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단가 계산  
• 시 정 : 감가상각비 단가 산정시,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금액에서 처분이익을 차감 함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설명)**

③ 규칙 제3조제1호의 방위산업전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 시설
2.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면서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민수물자(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시적으로 생산 또는 연구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시설(민수물자의 장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감가상각비)**

⑥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통원가(감가상각비 단가) 산정시 감가상각대상금액 총액에서 제47조제2항에 따라 확인된 처분이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가 회계결산서와 상이할 경우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7조  
(방위산업전용시설의 관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업체가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업체의 회계결산서를 기준으로 처분한 자산 및 처분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여, 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제21조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

**37. 시험검사비 배부대상 수량 적용 오류**

**심사요지** | 시험검사비의 배부 대상 수량의 착오로 인한 원가 과다 산정(2008. 10.)

**심사내용** | 시험검사비의 배부대상 수량 산정시 CSP 물량을 포함하여 배부하여야 함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시험검사비 배부대상수량 착오(193대 배부)  
• 심사의견 : 시험검사비 배부대상수량 정정(CSP물량 포함, 196대 배부)

**38. 경비항목 중 시험제작비 반영된 품목에 대한 적용 오류**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882(2013.4.3.)

**심사내용** | 시험제작비로 적용된 비목 중 조립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성품 상태로 납품하는 품목은 구입완성품 원가계산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조립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성품 상태로 납품하는 품목에 시험제작비로 오류 적용  
• 시 정 : 조립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성품 상태로 납품하는 품목은 구입완성품으로 원가 산정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율 (국내 7%, 수입: 8%) 이윤율 : (국내 25%, 수입 10%)  
• 제도심사팀 - 134(2008.3.19.) 일반관리비율 관련 특례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회계질의 회신결과 통보  
• 재무부 회제2210-1889(1989.5.29.) 완성품 유지부품 예정가격 결정방법 협의회신

### 39. 공용감가상각비 단가 산정 오류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1405(2013.5.16.)
-  **심사내용** | 공용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발생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발생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단가를 산정 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연간 감가상각비 집계내역에 전용자산으로 반영되지 못한 자산을 공용 자산으로 전환하여 누적 감가상각비 전액을 당기상각비로 모두 반영하여 산정함
  - 시 정 : 공용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발생 감가상각비를 전년도 발생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단가를 산정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감가상각비)**
  - ①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새로이 기계 장치·치공구·검사용 계기·금형·전용구축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로서 그 계산방법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2.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생산능력 또는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상각비를 계산한다.
    3. 계약기간과 제1호에 의한 내용연수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 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한 기간 감가상각비 계산은 제3항의 취득가격(또는 장부가액), 제4항의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제5항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당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전용자산은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되, 조달물량의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생산 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당해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에만 사용하는 자산은 연구개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규칙 제7조의 적정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40. 기술료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563(2013.12.6.)
-  **심사내용** | 기술료 계산시 원가계산시점의 지급률을 일괄 적용하였으나 연도별 지급조건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실지급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양산사업의 경우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면 기술료율은 연도별 차등 적용 하여야 하나 원가계산시점의 지급률을 연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함
  - 시 정 : 기술도입계약서에 의거하여 매년 차등화 된 지급률 적용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의2(직접경비)**
  -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시험검사비, 기술료,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시운전비, 공식행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2. 기술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열티와 기술비결(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술제휴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 41.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부적정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3077(2011.11.29.), 회계제도담당관-184(2014.1.23.), 회계제도담당관-366(2014.2.10.), 회계제도담당관-1573(2015.6.23.) 등
-  **심사내용** |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구입부품비는 계약수행 노력보상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시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구입부품비를 포함하여 산정함
  - 심사의견 :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제외하고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산정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조의 3 (이윤의 산정)**
  - ④ 노력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원가절감노력보상액, 설비투자노력보상액, 경영노력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계약수행노력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원가 요소별 보상율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재료비(관급재료비, 수입품비,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산원가대상 물자는 제외한다) × 1%

### 42. 경영노력보상율(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3392(2014.12.18.)
-  **심사내용**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5조에 따른 경영노력 평가시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점수는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의 인증 대상 품목에만 적용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미적용 품목에 대하여 품질 일관성 유지노력 점수 10점 적용
  - 시 정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미적용 품목은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점수를 미적용 하여야 함
-  **관련규정**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 [별지3]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 II. 항목별 평가기준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 나. 평가방법
          - 국방품질경영시스템(KDS0050-9000) 인증 여부
          - 해당 사업의 분야(연구개발, 양산, 정비 등을 말한다)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상의 인증범위(국방기술 품질원에서 인정한 대분류까지를 의미한다)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 다. 평가지침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는 10점을 부여한다.



### 43. 구입완성품의 원가계산 적용 오류

-  **관련근거** | 제도심사팀-1111(2011.4.21.), 회계제도담당관-459(2013.11.27.), 회계제도담당관-379(2016.2.17.)
-  **심사내용** | 조립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성품 상태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구입완성품 원가계산을 적용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조립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성품 상태로 납품하는 품목을 재료비로 계산함
  - 시 정 : 조립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성품 상태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산이 아닌 구입완성품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원가계산기준의 구분적용)**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생산(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활동과 용역활동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대하여는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을, 용역활동에 대하여는 용역원가 계산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의 주목적이 설계용역 또는 연구용역의 수행인 경우에는 용역원가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 제도심사팀-134(2008.3.19.)  
일반관리비율 관련 특례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계질의 결과 통보
  - 재무부 회제2210-1889(1989.5.29.)  
완성장비유지부품 예정가격 결정방법 협의 회신

### 44. 원가계산방법 기준 적용 부적정

-  **관련근거** | 회계제도담당관-610(2014.2.28.)
-  **심사내용** | 방산물자(휠브레이크조립체)에 사용되는 부품(부품키드)의 원가계산 방법은 예정 가격 작성기준이 아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방법을 적용 하여야 함
-  **시정내용** |
  - 적용오류 : 방산물자(휠브레이크조립체)에 사용되는 부품키드를 일반물자 기준으로 원가 산정함
  - 시 정 : 방산물자(휠브레이크조립체)에 사용되는 부품키드를 방산물자 기준으로 원가 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②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防産物資)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록Ⅲ 방산 원가관계 법규



## ■ 방산물자 원가관계 법규현황

방 산 물 자			최근 개정일	비 고(찾기)
방위사업법 (원가관련 조항 발취)	법률	제14610호	2017.3.21	193page
방위사업법 시행령 (원가관련 조항 발취)	대통령령	제28339호	2017.9.22	202page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원가관련 조항 발취)	국방부령	제935호	2017.9.22	210page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939호	2017.10.31	212page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방사청 훈령	제425호	2017.10.31	223page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령	제827호	2014.09.12	246page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 시행세칙	방사청 훈령	제324호	2015.03.12	254page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	제387호	2016.12.22	264page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방사청 예규	제366호	2017.03.20	301page

# 1 방위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발취

## 방위사업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強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2016.1.19., 2017.3.21.>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 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제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내용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실명제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분석·평가 결과 중 총사업비 5천억원(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및 정책반영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4.5.9.>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6.1.19., 2016.12.20., 2017.3.21.>

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4.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 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 나. 일반업체
  - 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 라. 전문연구기관
  - 마. 일반연구기관
5.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
6.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

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16.1.1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 ⑦ 옴부즈만이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 ⑧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0.3.31., 2016.1.19.>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 ⑨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9조(품질경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방산물자의 품질경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연구개발·구매 및 생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품질경영 또는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관계 공무원 등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영자에게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방산업체
  2. 일반업체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품질경영인증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그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사후관리심사"라 한다)할 수 있고, 심사결과가 품질경영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심사·갱신 및 사후관리심사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0.]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동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 방산업체의 매매·경매 또는 인수·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호육성)** ①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 ② 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4.1.>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자금융자)**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방산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희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었던 자가 그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인 경우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4.5.9., 2016.12.20.>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
  14. 방산업체가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 ④ 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⑥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제56조(휴업 및 폐업)** 방산업체가 당해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8조(부당이익의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익금과 부당이익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제목개정 2016.12.20.]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6.1.19., 2016.12.20.>

## 제8장 벌칙

**제62조(벌칙)**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용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용자금 또는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용자 또는 보조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5.9.>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2016.12.20.>

③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부한 자
2.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48조제1항제12호의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4.5.9., 2016.5.29., 2016.12.20.>

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
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폐업한 자
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64조(과태료)** ①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12.20.]

##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9.22.] [대통령령 제28339호, 2017.9.22.,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1. 통신망 등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2. 레이더 등 감시·정찰무기체계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22.〉
- ⑦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⑧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6.7.19., 2017.9.22.〉

1.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금지에 관한 사항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그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 관련 각종 계약서
4.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6. 법 제48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2.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 ③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지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17.〉



②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 2010.10.1., 2016.11.29.>

1. 시험측정장비
2. 검사장비
3. 교정장비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0.10.1.]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1. 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
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
6. 생산제품의 종류·규격과 그 생산·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
7. 사업계획서
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
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제45조(방산업체의 매매 등)**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0.12.7.>

1. 방산업체의 주식 등(지분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2.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부문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매매, 기업간의 교환·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방산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때(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 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방산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가목이나 다목의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4. 방산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방산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때

②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방산업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방산물자의 생산시설 또는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승인에 따라 방산업체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 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체는 조달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09.1.7.>

⑤ 방산업체는 제3항에 따라 생산된 물자 및 제4항에 따라 확보한 원자재·부품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⑥ 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7.>

**제51조(자금융자)**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신설 2009.7.1.>

1. 무기체계
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② 업체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융자추천을 얻어 해당자금의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1.>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2항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



**제60조(장기계약)**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이하 "장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10.1.>

1.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때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때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7조제1항·제50조제3항 및 제69조의 규정은 방산물자를 장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10.10.1.]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개정 2009.7.1., 2010.10.1., 2013.12.17.>

1.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물가조정단가계약 :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작성하는 물가지수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을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3. 원가절감보상계약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원가절감유인계약 :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등을 위하여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원가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에 대한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 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목표원가를 절감한 성과에 대한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5. 한도액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삭제 <2013.12.17.>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9.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10. 성과기반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11. 장기유선계약 :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은 따로 체결하는 경우

12. 한도액성과계약 :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013.12.17., 2014.11.4., 2015.4.14.>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말한다)·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5호의 한도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0호의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제1항제11호의 장기유선계약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적의 침투·도발 등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물자를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양산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나목에 따른 연구과제를 제출한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가.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을 것
    - 나. 방위사업청장이 가목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것
-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생산(합성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6.3.31.>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0.1., 2016.3.31.>

**제61조의2(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자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자가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선택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4조(방산물자지정의 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6.3.31.>

## 제7장 보칙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6.20.>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6.3.31., 2017.6.20.>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② 청렴서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0.1.>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6.20.]

### 부칙 <제28339호, 2017.9.22.>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7. 6. 20.>

##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제69조제3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가산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호에 따른 가중 및 제4호에 따른 감경을 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이 부당이득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금은 부당이득금의 2배로 한다.  
다. 2개 이상의 계약에서 부정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이하 "부당이득 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계약별로 가산금을 산정한다.

### 2. 부당이득금 규모 및 비율에 따른 산정

- 가산금은 부당이득금 규모와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부당이득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부당이득금의 2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이득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이득금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부당이득금의 1.5배  
다. 그 밖의 경우 : 부당이득금의 1배

### 3. 가산금의 가중

-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가중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의 가중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나목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부당이득행위에 대하여 가산금을 통보한 날과 다시 부당이득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하도급자와 공모한 경우: 50% 가중  
나. 최근 5년 이내 부당이득행위가 반복하여 적발된 경우  
1)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50% 가중  
2) 적발 횟수가 2회인 경우: 30% 가중

### 4. 가산금의 감경

-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산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나목은 적발된 부당이득행위 및 자진하여 신고한 다른 부당이득 행위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가.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 50% 감경  
나.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된 후 다른 부당이득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 30% 감경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9.22.] [국방부령 제935호, 2017.9.22., 일부개정]

국방부(전략정책과) 02-748-5612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1.7.>

③ 영 제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16.7.20.>

④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방위력 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하도급자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재하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9.22.>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5조(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물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방규격으로 정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1.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 2. 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산업체등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 신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갱신 신청은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품질경영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외에 품질경영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심사의 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6.21.]

##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 1.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 3.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 4. 생산·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 5.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제28조(주요 방산물자)**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 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②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계약전 생산품 등에 대한 품질확인)**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조달계약전에 생산한 물자나 확보한 원자재·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 제7장 보칙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2.]

## 부칙 <제935호, 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0.31.] [국방부령 제939호, 2017.10.31.,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防産物資)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0.>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조원가"란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官給材料費)는 제외한다.
4. "총원가"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부문·제품·활동 등을 말한다.
6. "부품"이란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
7. "수입품"이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8. "수입재료"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수입부품"이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0. "구입재료"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11. "구입부품"이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2. "관급품"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부품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 장치·치공구(治工具)·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13. "관급재료"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14. "개산원가(概算原價)란 개산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15. "정산원가(精算原價)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할 때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16.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견품·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17. "용역원가(用役原價)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그 밖의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감지(感知)·평가·자문·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教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계산가격"이란 총원가에 이윤과 제18조의2에 따른 투하자본보상비(이하 "투하자본보상비"라 한다)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1.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관리비·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천재지변·화재·도난·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 나. 예기치 못한 진부화(陳腐化)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減價)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評價差損)
  - 다.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 라. 우발채무에 의한 손실
  - 마. 소송비
  - 바. 대손상각(貸損償却)
3. 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4. 배당건설이자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고정자산 처분손
  -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6.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소손실(減耗損失)
7.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8.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9. 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  
[전문개정 2011.5.9.]

**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을 말한다) 및 계약수량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에 적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 계상(計上)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 제1절 일반기준

**제6조(원가 구성요소)**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구성요소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로 한다.

② 제조원가는 원가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제조직접비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에 배부(配賦)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제조 간접비로 구분한다.

③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 및 간접 경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7조(배부기준)** ①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가대상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부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9.]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9조(적용 규격 등)**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제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를 적용하되,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제조도면 및 화학배합률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0조(생산능력)** 생산능력은 생산공정별 기계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공정이 2개부문이상인 경우와 기계의 생산능력이 각각 상이할 때에는 최저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제품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산출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과 검증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 및 가공 공정을 고려한 단위소요량, 실측(實測)에 따라 산출된 양 또는 재료의 사용량을 기록한 회계장부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하 "감손량"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감손량 중 다음 각 호의 것[이하 "설물"(屑物)이라 한다]은 적절한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작업설(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을 만들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2. 불량제품
3. 그 밖의 부산물

④ 직접재료가 일정한 단위로 생산되거나 판매되어 제1항에 따른 재료의 소요량보다 다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료의 소요량과 구입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한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을 뺀 금액(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을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및 감손량의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2조(설물의 평가)** ① 설물은 금액으로 평가한 후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료비, 총원가 또는 수입 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구입재료 및 구입부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의 평가액: 재료비에서 차감
2. 관급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의 평가액: 총원가에서 차감
3.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설물의 평가액: 수입가격에서 차감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단위당 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3조(사장품의 가격계산)** ① 사장품의 가격은 제조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사장품의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의 평가액은 뺀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품의 가격은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한다. <개정 2013.10.10.>

[전문개정 2011.5.9.]

**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①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物資代)·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환율"이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제 결제환율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③ "수입제세"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④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란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 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수입 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개정 2011.5.9.>

**제15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구입부품비·포장재료비 등으로 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등으로 한다.

④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 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16조(노무비)**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5.3.26.>

1. 기본급
  2. 각종 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의 합계액의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 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 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④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이 특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17조(경비)**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 ② 직접경비는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기계장치·금형(金型)·치공구·전용구축물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개발비,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행사비 등을 말한다.
- ③ 간접경비는 두 종류 이상의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전력비, 통신비, 연료비, 용수비(用水費), 감가상각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금, 소모품비, 피복비, 수리수선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차량관리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폐기물처리비 등을 말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에 속하는 비용 가운데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18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제3조에 따른 비원가 항목을 제외한 비용인 임원 급여, 사무실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전산운영비, 수출촉진활동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와 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그 종류 또는 금액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수출촉진활동비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등의 참가와 해외 현지 시험평가 등 수출촉진활동에 드는 직접적인 경비로 한정하며, 인정 범위와 지원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8조의2(투하자본보상비)** 투하자본보상비는 총원가에 투하자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9조(이윤)**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사업의 난이도 및 계약위험도에 대한 위험보상액, 계약수행노력 및 효율적인 경영노력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개정 2011.5.9.>

### 제1절 제조직접비의 계산

**제20조(직접재료비)**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에 따른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다음 각 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단위당 가격
  2. 수입품의 가격 : 제14조에 따른 물자대·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의 합계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1조(직접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되, 제조 공정별로 투입인원·작업시간 및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드는 노무량을 집계하여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② 노무비 단가는 원가계산 시점에서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이행기간 중에 노무비 단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 노무비 단가를 가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2절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3조(제조간접비의 계산)**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간접재료비는 실적자료를 근거로 해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 배부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노무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③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경비는 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3절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4조(일반관리비의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0.10.>

②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조함공사(造艦工事) : 100분의 6
2. 조립금속 : 100분의 7
3. 용역 : 100분의 5
4. 화학·섬유·고무·의복·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8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율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5.3.26.>

1. 조함공사 : 100분의 8
2. 조립금속 : 100분의 9
3. 용역 : 100분의 7
4. 화학·섬유·고무·의복·가죽 및 그 밖의 물품 :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1.5.9.]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해당 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4절 이윤의 계산

**제26조(이윤의 계산)** ① 이윤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윤산정기준을 계약상대자의 국산화노력·생산성향상노력·원가절감노력 등 경영노력과 계약수행노력, 계약이행 위험부담,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27조(개산원가의 계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원가 계산서와 견적서 등 필요한 원가자료를 검토한 후 개산원가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8조(정산원가의 계산)** ① 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정산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투자자본보상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납품일 현재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중도확정계약에서 재료비·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중도확정시기 이전에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투자자본보상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중도확정시기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 후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간접노무비·간접경비·일반관리비·투자자본보상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29조(원가계산 방법)** 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0조(노무비)** 노무비는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1조(경비)** ① 경비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기술료,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시험제작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리수선비, 차량관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2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3.10.10.>

③ 삭제 <2013.10.10.>

[전문개정 2011.5.9.]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6장 원가정보

**제34조(회계처리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5조(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① 방위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중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출액 규모나 방산 부문의 직접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알려야 하고, 해당 업체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방산원가대상물자와 그 밖의 물자 또는 각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품목별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그 생산품목을 방산원가대상물자, 민수물자(民需物資), 공통물자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 알려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제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6조(성실보고 의무)** ① 방위산업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결산서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방위산업체는 세무신고 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방위산업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산업체는 제1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위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요청받은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원가자료 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는 방위사업청장이 확인한 전산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7조 삭제 <2008.12.31.>**

**제38조(재무제표분석)**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경영성과 등을 반영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39조(원가정보 교환)** 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과 관련된 계약자료·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量産物資)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원가계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 요구조건
2. 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을 고려한 납기 결정 자료
3. 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자료(재료비·직접노무비)
4. 생산 진도 및 현황
5. 기술변경·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 절감액
6. 납기 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 검사 및 납품 조서
8. 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료 소요량 및 적용 노무량의 내역
2. 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 내용
3. 그 밖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전문개정 2011.5.9.]

## 제7장 기타

**제39조의2(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17조와 제18조의 개발비·경상개발비·연구비는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를 말하며, 보전(補填) 방법과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9조의3(방산 수출물량 직접 감가상각비 보전)** ① 방산 수출물량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 수출물량에 대한 직접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에 계상하며, 보전 방법과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10.>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감가상각비 보전액은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3.10.10.>

[전문개정 2011.5.9.]

[제목개정 2013.10.10.]

**제39조의4(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①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계약연도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전문개정 2011.5.9.]

**제39조의5(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하여 방산 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 개정 전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방위사업청 훈령 제 425호 (2017. 10. 31.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설명)

- ① 규칙 제3조제1호의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계약상대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
  2. 계약상대자의 출자자나 출연인, 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3. 당해 계약목적물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자산
  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 ② 규칙 제3조제1호의 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투자유가증권(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 부득이 취득한 것은 제외)
  2. 출자금
  3. 관계회사 주식
  4. 관계회사 사채
  5. 투자부동산(종업원교육, 체육, 후생 또는 예비군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6. 장기성 대여금과 장기성 예금
  7. 특약금(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물품의 독점적 공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특약금 또는 보조금)
  8. 기타
- ③ 규칙 제3조제1호의 방위산업전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 시설
  2.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면서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민수물자(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시적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시설(민수물자의 장래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④ <삭제>
- ⑤ 규칙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모손실에는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예측하지 못한 설계변경 및 성과기반 계약 수행을 위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⑥ 규칙 제3조제9호의 규정에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조달에 관련이 없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접대비
  2. 판매수수료
  3. A/S비(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비용
- ⑦ "이윤율"이란 이윤의 계산에 필요한 기본보상율, 기술위험보상율, 계약위험보상율, 계약수행노력보상율, 원가절감 노력보상율, 설비투자노력보상율, 경영노력보상율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적용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방규격 개정 전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0.10.]

**제39조의6(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① 중소기업인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구축비용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액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보전액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10.]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① 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① 방위산업체가 계약이행 도중 새로운 기술·공법, 그 밖의 경영합리화로 현저한 원가 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원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가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41조 삭제 <2003.7.1.>

**제42조(준용)** 이 규칙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9.]

### 부칙 <제939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발생하여 계상하지 아니한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간접경비에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⑧ "방산제비용"이라 함은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용, 간접경비비용, 일반관리비용, 투하자본 보상을, 이윤을 등을 말한다.
- ⑨ "기업회계기준" 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 ⑩ "공통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를 계산할 때 동일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복수의 제품 또는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로서 간접재료비 단가, 노무비 단가,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감가상각비 단가 등을 말한다.

**제3조(원가자료의 수집분석)** 원가계산담당공무원은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을 유념하여 원가 계산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야 한다.

## 제2장 원가계산기준

### 제1절 일반기준

**제4조(원가계산기준의 구분적용)**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생산(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활동과 영역활동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대하여는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을, 영역활동에 대하여는 영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되 계약의 주목적이 설계영역 또는 연구영역의 수행인 경우에는 영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 한다.

**제5조(원가구성요소)** 규칙 제6조제2항의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구분한다.

1. 제품의 실제구성 여부
2. 원가의 직접추적 가능여부
3. 생산과정에서의 직접 기여여부

**제6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 ① 규칙 제11조제1항의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라 함은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료(부품을 포함한다)의 소요량을 말한다.
- ② 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소요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비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증할 수 없는 소비량
  2. 실제소비량이 설계기준량이나 규격서 및 설계설명서에 기재된 기본량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로서 초과 된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소비량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량

**제7조(감손량 적용)**

- ①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손량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양산품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손실율, 불량율 및 시료율(이하 "감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계약목적물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감손율을 산정하기 전 산출된 감손량을 기준으로 해당사업 연구개발담당자가 확인한 후 적용한다.
  1. 손실율은 제품단위당 투입 원재료의 중량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의 차감량을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으로 나눈 비율
  2. 불량률은 총생산량에 대한 생산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수량의 비율
  3. 시료율은 총생산량에 대한 원재료와 제품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료량의 비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손량의 산정을 위하여 감손율을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는 때에는 손실율, 불량율 및 시료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율은 상한으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2. 규칙 제11조제1항의 단위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관련 회계장부로부터 역산하여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할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3. 복수지정업체의 경우에는 업체별 감손율을 적용한다.
4. 감손율 산정 대상이 아닌 품목 중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은 국방기술품질원장(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며, 생산실적이 없거나 소량생산, 시제생산 등 실발생 감손율을 적용하기 불합리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감손율을 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감손율 산정 대상과 세부 방법은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 지침」을 따른다.

**제8조(최소발주량 및 시장품의 가격계산)**

- ①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발주량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요량과 최소발주량의 차이가 차후에 사용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품의 가격은 연구 또는 시제생산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도생산 및 양산시에는 정부가 승인 또는 요구하는 규격·사양 및 설계를 변경하게된 근거서류의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③ 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가치의 평가액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한다.
- ④ 매각가치 또는 이용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시장품 또는 소요량을 초과하는 최소발주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도 받는다.

**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 ① 규칙 제14조제2항의 정상도착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조달계약 이전 생산 활동을 위해 발생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실제 구매가격을 적용한다.
- ② 규칙 제14조제2항의 정상도착가격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비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운반 요율(복수경쟁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송 대행업체 및 가격을 결정할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보험료는 방산물자 해상·항공 특별보험요율을 상한으로 한다.
  1. 원가계산시에는 해당 수입품의 과거 수입실적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과거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의 과거 실적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준용한다.
  2. 개산계약과 중도확정계약의 정산원가 계산시에는 해당 수입품의 실시간 운반요율과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③ 규칙 제14조제2항의 환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원가계산시 환율은 원가계산시점(원가팀장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을 말한다) 이전 5근무일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재고자산 사용분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거 조달계약 이전 생산활동을 위해 발생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실결제한율을 적용한다.
  2. 개산계약의 원가정산시 환율은 실결제한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계약의 실결제한율이 없는 경우 정산원가 계산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재고자산 사용분에 대해서는 개산원가 계산시점(원가팀장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을 말한다)이전 5근무일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3. 중도확정계약의 원가정산시 환율은 실결제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중도확정기준일 기준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중도확정기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4.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환율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규칙 제14조제3항의 수입제세는 수입재료비에서 차감하여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비율,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 가산한다.
- ⑤ 규칙 제14조제4항의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는 경비요소별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수입 부대경비 요소 중 기준요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수입물자대 등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수입항구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항구에 따라 상이한 비용을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가 계산담당자가 모든 수입재료에 대하여 개별적 파악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3. 통관료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계상하되, 실제 발생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 수수료율에 참고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국내운반비는 확정계약시는 과거실적 운반율 또는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하고, 개산계약 정산시에는 당해물자의 실지급 운반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10조(관급품)

- ① 수입관급품은 실제구입가격(외화표시가격 실제지급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제 수입가격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화표시 가격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확정 계약에는 원가계산시점(원가팀장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을 말한다.) 전일율, 중도확정계약에는 중도확정 시기를, 기타 개산계약에는 납품일(또는 납품일 전 정산원가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국내구입관급품은 구입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1조(비목의 구분)** 제조원가는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비목을 구분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이 적고 중요하지 아니한 비용은 계산의 편의에 따라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계속 계상할 수 있다.

### 제2절 원가구성요소의 비목분류 기준

#### 제12조(재료비)

- ① 규칙 제15조제2항의 직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의 소비액
  2. 구입부품비  
제품의 제조에 직접 소비되고 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료의 소비액
  3. 포장재료비  
제품의 포장에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 ② 규칙 제15조제3항의 간접재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보조재료비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소비액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상당가액 미만인 자산과 시험기기·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 ③ 규칙 제15조제4항에서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이란 원재료가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도록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외부부대비용이란 재료의 구입보관 등에 대하여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구입수수료, 운임, 하역비, 보험료, 제세, 지급창고료 등을 말한다.
  2. 내부부대비용이란 외부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대비용으로서 재료보관비, 장내운반비 등을 말한다.

**제13조(기본급)**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본급이란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제14조(각종 수당)

-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각종 수당은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총당부채 인식액은 제외한다),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임시 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장근로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야간근로  
야간근로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3.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주휴근로, 법정(공휴)근로 및 노사합의 휴일근로 등을 말한다.

#### 제15조(상여금)

-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의 상여금은 계약상대자의 상여금 지급 실적율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상여금 지급실적율이란 계약상대자의 상여금 지급대상금액에 대한 지급 상여금의 비율을 말한다.

#### 제16조(퇴직급여)

- ①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의 퇴직급여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중 계약상대자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 다음의 퇴직급여설정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퇴직급여설정율이 8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8분의 1을 적용한다.

$$\text{퇴직급여설정율} = \frac{\text{직전년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액}}{\text{직전년도 총급여액}}$$

- ② 제1항의 퇴직급여 설정율이 8분의 1을 초과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 (201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퇴직보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에 다음의 퇴직연금 등 납부율을 곱하여 퇴직급여로 추가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등의 납부율은 총급여액의 8분의 1을 한도로 한다.

$$\text{퇴직연금 등 납부율} = \frac{\text{직전년도 퇴직연금 등 납부액}}{\text{직전년도 총급여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급여는 계약상대자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설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간접노무비)**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는 다음 각 호의 부문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접 생산현장에 배치되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1. 동력부문
2. 용수부문
3. 수선부문
4. 운반부문
5. 공구제작 및 관리부문
6. 설계부문
7. 시험연구 및 분석부문
8. 자재구매 및 관리부문
9. 품질관리부문
10. 공장사무부문
11. 공장경비부문
12. 제조부문 보조작업 및 관리
13. 환경 및 안전관리부문
14. 기타 보조부문

**제18조(공장노동자의 획득보전 관리비용)** 공장노동력의 획득보전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제3장 제조에 관한 계산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 제19조(직접재료비)

- ① 규칙 제20조제2항 단서조항에서의 시료량이라 함은 감손을 결정시 고려되지 아니한 시료량으로서 제품 완성 후 품질검사, 성능검사를 위하여 파괴시험 등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 정부측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료량을 말한다.
- ② 규칙 제20조제3항에서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이라함은 원가계산시 파악한 계약상대자의 재료의 통상적인 구입 가격 또는 구입가능가격을 말하고 재료의 구입가격은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다만, 소량소액의 제조, 구입 또는 유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공장도 가격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 등을 적용한다.
- ③ 규칙 제20조제3항제2호에 의거 수입품의 가격을 계산할 경우에는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업체로부터 직접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다종의 소액, 소량품목으로서 구매의 경제성을 위하여 부득이 무역대리점등 중간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타 중간상으로부터의 구입가능가격 또는 해외가격정보 등을 획득하여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④ 규칙 제2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입비축원자재의 가격계산시 구입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때에는 수입실적 외화표시가격에 원가계산시점(원가팀장이 원가계산서를 결재한 날을 말한다.) 이전 5근무일 평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⑤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대가의 110분의 100을 재료비로 계상한다.
- ⑥ 관급재료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입할 경우 관급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임, 보험료, 수입제세 및 기타 수입 부대경비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분에 대하여는 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의 운임, 보험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⑦ 정비작업의 교체부품 및 관·사급 재료에 대한 소요량 판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소요군 통보 소요량
  2. 대상장비에 대한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한 자료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자료(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에 대한 실적자료는 평균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자료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추정자료

#### 제19조의2(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 ①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외국에서 수입하던 방산원가대상물자부품을 국산화한 경우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을 국산화(국산화를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②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2.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3.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수입면장 등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군이 조달한 실적단가
- ③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 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④ 제2항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삭제
- ⑥ 규칙 제39조의4 제3항은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에 적용한다.
- ⑦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 따라 국산화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은「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9조의3(국방규격 개정시 실적가격의 인정 등)

- ①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방규격을 상용규격 또는 성능형 규격으로 개정

2. 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시점 이전에 일반확정계약 또는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기간 중 구입부품 또는 수입부품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의 부품으로 대체하여 단위 당 단가를 기존의 실적가격 대비 100분의 20 이상 절감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단위당 단가의 절감 비율을 계산하며, 이 경우 물가인상율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국방규격 개정 전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수입부품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방규격 개정 승인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1. 방위사업청의 조달실적 단가
  2. 각 군의 조달실적 단가
  3.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의 구매실적 단가
  4.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 군이 조달한 실적단가(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수입명장 등의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④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3항의 실적 단가 중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제3항제3호의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실적 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20조(직접노무비)

- ① 규칙 제21조제1항의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시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노무량은 규칙 제16조제2항의 직접노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작업노무량과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하며,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의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다.
1. 작업노무량은 당해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작업노무량과 당해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회, 작업지시, 작업준비, 여유(작업여유, 용무여유, 피로여유 및 대기여유) 등의 간접 작업노무량을 말한다.
  2. 무작업노무량은 당해제품 생산에 직접 소요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무작업에 대하여 노임이 지급되는 연월차, 유급휴가, 청원휴가, 생리휴가, 공민권행사(각종 투표, 선거 등), 근로자의 날,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민방공훈련, 자연보호, 새마을운동, 회사 창립행사, 복지 및 교육행사(체육대회, 심신수련대회 등), 직무교육, 직무와 관련된 출장 등에 대한 노무량을 말한다.
- ③ 제2항제1호의 간접작업노무량에 제2항제2호의 무작업노무량을 포함하여 직접작업노무량과의 비율을 계상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연도로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산정시 실발생원가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규칙 제21조제2항의 노무비단가는 계약상대자의 노임 및 노무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노무비단가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text{노무비단가} = \text{생산부문별 총발생노임} / \text{생산부문별 총발생노무량}$$

2. 제1호의 총발생노임은 규칙 제16조와 세칙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제1호의 총발생노무량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노무량으로 한다.
- ⑤ 규칙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의 변동 노무비단가를 계산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거 확정되는 임금인상 노사합의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된 임금인상계획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임금인상 노사합의서 또는 사용자가 확정된 임금인상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임금인상(또는 예상)율 및 전체 계약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1. 한국경영자총협회 제시 최근 3개년(기하평균) 임금인상율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2.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의 정상적인 실적 노무비단가 인상률(기하평균)
  3. 시중노임단가(기본급) 제조부분 평균임금 인상율
-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연산품, 등급품 등이 동일공정에서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연속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노무량 적용방법이 곤란하거나 당해 계약목적물의 제조특성상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정비작업의 노무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소요군 통지 정비노무량
  2. 대상장비의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하여 산출한 노무량
  3. 동종의 최근 3년간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기중평균 노무량(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은 실적 노무량 산정시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적노무량 추세분석결과 3회 이상 계속하여 하향 또는 상향 추세인 경우에는 최근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노무량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교체부품의 자작노무량은 최근 실발생 노무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제20조의2(직접경비)

-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시험검사비, 기술료,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시운전비, 공식행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시험검사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재질분석이나 성능시험을 위하여 지출되는 외주시험비 또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어 지출되는 자체시험검사비로서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에 개별 부과하거나 일정기간의 납품량에 배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기술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인 면허료, 로얄티와 기술 비결(Know-how)의 획득비 및 동 부대비용인 기술도입비로서 지급조건에 따라서 실비상당액을 계상하거나,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술제휴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3. 외주가공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사용될 재료를 외부에 위탁 가공시키는 경우 그 가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계산하되,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비용과 지정된 방산원가대상물자 자체의 외주가공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보관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및 성과기반계약수행시 적기자재지원을 위한 자재창고 운용 및 운송비를 계산하되,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5. 설치비·시운전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납품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한다.
6. 공식행사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 ② 성과기반계약수행시 업체와 소요군간 사업평가시 적용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지원체계비는 사업별 기여도에 따라 적정배부 계산한다.

### 제21조(감가상각비)

- ①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새로이 기계장치·치공구·검사용계기·금형·전용구축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로서 그 계산방법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2.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생산능력 또는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상각비를 계산한다.
  3. 계약기간과 제1호에 의한 내용연수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및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용구축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하여 감가상각방법으로 비용화 할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제작 또는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의거 소모공구·기구·비품비로 계상된 것은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1항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가액을 말한다.
  1. 외부구입 시에는 구입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매입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등)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인 방산업체로부터의 취득자산은 해당 방산업체의 장부가액(재평가차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자가제작 시에는 제조원가에 자산의 설치완료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설치비, 시운전비, 등록세 등) 및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한 금액(건설자금이자는 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완료시까지 발생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의미한다. 단, 차입금의 일시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당해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3.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액 등이 결정되어 계약체결 이전에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자산의 재평가액(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 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순잔액)의 변동은 제외), 다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재평가액이 정액법 기준의 장부가액(순잔액) 보다 작은 때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다.
  4. 「법인세법」에 의거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가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가액
- ④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또는 제29조에 따라 연장변경이 승인된 내용연수로서 '99.1.1. 이후 신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고 '98.12.31.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시행된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연수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한다.
- ⑥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통원가(감가상각비 단가) 산정시 감가상각대상금액 총액에서 제47조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처분이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가 회계결산서와 상이할 경우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⑦ 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한 기간 감가상각비 계산은 제3항의 취득가격(또는 장부가액), 제4항의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제5항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당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전용자산은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되, 조달물량의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당해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에만 사용하는 자산은 연구개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규칙 제7조의 적정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⑧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이하 "생산계획물량"이라 한다) 이 통보된 경우에는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단위당 상각비는 제3항의 취득가격(또는 장부가액), 제5항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⑨ 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당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미상각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의 상각비범위(연평균 상각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⑩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이윤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비(직접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는 증가된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비율, 이윤율에 반영되어 적용될 때까지 재평가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⑪ 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제22조(지급임차료)** 지급임차료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의 전용구축물에 대한 지급임차료로서 임차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임차료를 대상으로 하되, 단위당 계산기준은 제21조제7항 각 호 및 제8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 제23조(설계비)

-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설계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설계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설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제작도면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내부설계인 경우에는 제조원가 요소별로 계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설계비를 계산할 때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 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당해 계약의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년간 균등하게 이연 상각한다.
- ③ 특정계약에만 관련하여 지출되는 설계비는 당해 특정계약의 경비로만 계산한다.
- ④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5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각액을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하며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을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단위당 설계비를 계산한다.

### 제24조(공사비)

-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공사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생산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사용후의 잔존가치액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가설공사가 계약의 주요 내용인 경우에는 공사비로 계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가계산을 따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사비를 계산할 때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한 생산계획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하되 총생산물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3조를 준용하여 단위당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다.
- ③ 공사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용후의 철거에 요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특허권 사용료)**

- ① 규칙 제17조제2항의 특허권사용료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허권의 사용료로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 및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당해 특허권이 방위산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특허기간이 생산계획기간보다 장기일 경우에는 총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 ② 특허권사용료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단서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 ③ 특허권사용료를 생산수량에 대한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상당액으로 한다.

**제26조(방산연구개발 관련원가)**

- ① 규칙 제39조의2의 개발비는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비로서 시험 및 시험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을 말하며, 연구개발활동의 결과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비용은 개발비에 포함한다.
- ② 제1항의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개념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변동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조원가 요소별로 회계처리된 비용을 방산제비율상 개발비로 조정을 한 경우에는 개발비로 본다.
- ③ 규칙 제39조의2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는 향후 군소요나 수출소요를 위해 자체개발 또는 연구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특정프로젝트에 위 비용이 투입된 경우에는 간접경비율 또는 일반관리비율로 반영 할 수 있다.
- ④ 개발비는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5년간의 총생산물량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하되,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한다. 다만, 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일시 상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의하여 3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각액을 당해연도의 조달물량 또는 생산 능력으로 나누어 단위당 개발비를 계상한다.

**제26조의2(간접재료비)** 규칙 제23조제1항의 간접재료비는 최근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최근연도부터 각각 6 : 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산정시 실발생원가는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6조의3(공동원가의 적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원가를 적용한다.

- 1. 공동원가 산정일(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 체결하는 계약 : 전년도 공동원가
  - 2. 공동원가 산정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 : 산정된 공동원가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원가 산정일 이후에 임금협상 노사합의 종료 또는 결산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방산업체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원가를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제27조(간접노무비)**

- ① 규칙 제23조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규칙 제21조의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제2항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② 규칙 제23조제4항의 간접노무비율은 과거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업체별·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노무비율부터 각각 6 : 4의 비율로 반영한다.

$$\text{간접노무비율} = \frac{\text{간접노무비}}{\text{직접노무비}}$$

**제28조(간접경비)**

- ① 규칙 제23조제3항의 간접경비는 규칙 제21조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노무비에 제2항의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 생산방법 및 발생비용의 특수성등으로 이 계산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다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② 간접경비율은 과거 2년간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 부문의 실적치와 부문별, 업체별, 지정물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의거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간접경비율부터 각각 6 : 4의 비율로 반영한다.

$$\text{간접경비비율} = \frac{\text{간접경비}}{\text{노무비}}$$

**제29조(일반관리비의 계산)** 일반관리비는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경우란 일반관리비 계산시 제31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의 산정기간과 적용시점에서 관급재료의 물량 또는 금액 차이가 큰 경우로서 장기적으로도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와 시제의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수출촉진활동비의 인정범위 및 지원한도)**

- ① 규칙 제18조에 의한 수출촉진활동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위사업청장이 후원, 요청 또는 승인하는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등의 참가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 2. 방위사업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고 해외시험평가(무기체계의 성능 시험을 포함한다) 등을 위해 현지로 시험평가 제품을 운송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시험평가 제품 운송비
    - 나.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 다. 시험평가 유류비·탄약비
    - 라. 시험장 사용료
    - 마. 기타 방위사업청장 또는 수출대상국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서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험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단,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험을 위하여 신규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지원한도는 접대비, 판촉물제작비, 운영유지비, 규칙 제3조의 비원가항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지원한도는 해당 발생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31조(일반관리비율 산정)** 규칙 제25조의 일반관리비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관급재료비(시제용으로 투입된 관급재료비는 제외)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산정하되, 최근 연도의 일반관리비율부터 6 : 4의 비율로 반영한다. 다만, 제29조 후단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대한 일반관리비의 비율로 한다.

**제32조(방산제비율 적용)**

- ① 원가계산을 기초로 확정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규칙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동의서에 서명날인 직전에 시행되는 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규칙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제비율은 계약건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방산제비율을 산정하여 12월 31일 이전까지 관련부서와 기관에 통보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④ 방산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전 방산업체의 제비율 중 가장 낮은 율을 적용한다.
- ⑤ 방산업체로 신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방산제비율을 산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제비율(원가절감노력보상율은 제외한다)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비율 산정 직전 2년간 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부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2조의2(투자자본 보상비 산정)

- ① 규칙 제18조의2의 투자자본보상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에 투자자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투자자본보상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되, 최근년도로부터 연간투자자본보상율을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 1. 연간투자자본보상율

$$\text{연간투자자본보상율} = \frac{\text{방산투자자본금액} \times \text{금융비용}}{\text{연간총원가(공장별 또는 방산업체별, 관급재료비 포함)}}$$

- 2. 제1호의 금융비용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자율 (제조, 대기업)"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차입금 평균 이자율 (제조, 중소기업)"을 적용한다.
- 3. 투자자본보상비는 총원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방산투자자본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1. 투자자본대상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자산으로서 미착기계, 건설중인자산 등을 제외한 유형자산, 개발비,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 2. 방산투자자본금액은 제1호의 대상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재평가차액(토지이외의 유형 고정자산은 '98.4.10 이후 재평가차액 및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증감액)은 제외한다. 한편, 신규취득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감가상각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투자자본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인 방산업체로부터의 취득자산은 해당 방산업체의 장부가액(재평가차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방산투자자본금액은 각 자산별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배부기준에 따라 민·방산을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3(이윤의 산정)

- ① 규칙 제26조의 이윤계산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보상액, 위험보상액, 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기본보상액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에 기본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1. 기본보상율은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조정계수 0.25(용역0.7)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0.3(용역 0.7)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제1호의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평균영업이익율을 말하며 제비율 산정 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5개년을 산술평균하여 반영한다.

- 3. 관급재료비라 함은 규칙 제2조제13호의 관급재료로서 제조과정에 투입되어 가공·조립되는 관급재료의 금액을 말한다.

- ③ 위험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위험보상액과 계약위험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기술적 위험보상액은 사업형태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총원가에 다음의 기술위험보상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구분	연구개발	초도양산	후속양산 생산, 정비	기술협력생산
보상율	1.5%	1.0%	0.75%	0.5%

- 2. 계약위험보상액은 계약종류에 따라 총원가에 다음의 계약위험보상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업의 형태가 연구개발사업·초도양산사업·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확정계약 또는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종류	보상율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3%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확정분	2%
중도확정계약	1%

- ④ 노력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원가절감노력보상액, 설비투자노력보상액, 경영노력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1. 계약수행노력 보상액은 다음 각 목의 원가 요소별 계약수행노력보상율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재료비(관급재료비, 수입품비,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는 제외한다) × 1%. 다만, 규칙 제39조의4에 의거 구매한 국산화 부품 재료비의 경우 2%를 추가하여 가산한다.

나. 노무비 × 3%(시제생산 5%, 용역9%)

다. 제조경비 × 3%(용역 5%) 다만, 제조경비중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개발비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

라. 기술료 × 1% 다만, 기술료중 로열티 및 면허사용료는 제외한다.

마. 외주가공비 × 4%(용역1%) 다만, 외주가공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를 적용한다.

바. 개발비 × 10%(용역12%)

사. 일반관리비 × 3%(용역 4%)

- 2. 원가절감노력 보상액은 총원가에 원가절감노력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원가절감노력보상율은 2%를 상한으로 한다.

가. 원가절감노력보상액 = 총원가 × 원가절감노력보상율

나. 원가절감노력보상율은 연간원가절감액을 연간총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등을 통하여 산정된 원가절감액을 말한다.

라. 나목의 연간원가절감액은 다목의 원가절감액을 3년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종료된 년도부터 3년동안 연간원가절감액을 반영한다.

- 3. 설비투자노력 보상액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에 설비투자노력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설비투자노력 보상액 = 총원가 × 설비투자노력보상율

나. 설비투자노력보상율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근 년도의 설비투자보상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p>• 설비투자노력보상율 = <math>\frac{(\text{방산설비투자금액} \times \text{자기자본구성비}) \times \text{재투자비용}}{\text{연간총원가(공장별 또는 방산업체별, 관급재료비 포함)}}</math></p> <p>• 자기자본구성비 = <math>\frac{\text{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text{감사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math></p> <p>•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세무신고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구성비를 산출한다.</p> <p>• 재투자비용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제조,종합)"에서 제32조의2제2항제2호 금융비용을 차감한 율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손익의 관계비율 중 자기자본세전순이익률(제조,종합)"에 1%를 가산후 제32조의2제2항제2호 금융비용을 차감한 율로 한다.</p>
---

다. 나목의 방산설비투자금액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다.

- 개발비 × 130%
- 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제외) × 100%
- 건물, 구축물 × 70%
- 임차보증금 × 70%

라. 방산설비투자금액은 다목의 대상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재평가차액(98.4.10. 이후 재평가차액 및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증감액)은 제외한다. 한편, 신규취득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의 감가상각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설비투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인 방산업체로부터의 취득자산은 해당 방산업체의 장부가액(재평가차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방산설비투자금액은 각 자산별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배부기준에 따라 민·방산을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경영노력 보상액은 총원가에 경영노력보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는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 35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된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가목에 의한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율은 다음과 같다.

$$\text{경영노력보상율(\%)} = \text{경영노력 평가 점수} \times 0.1$$

⑤ 용역의 이윤은 제2항의 기본보상액, 제3항의 위험보상액, 제4항제1호의 계약수행노력보상액, 제4항제2호 원가 절감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33조(개산원가의 계산)** 개산원가는 원가계산시점에서 획득 가능한 원가자료 및 제반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제34조(정산원가의 계산)

- ① 정산원가는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다. 다만, 납기가 12월 31일인 경우와 같이 납품일 전에 원가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품일 30일 전부터 원가정산을 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원가정산시점 이후의 원가는 실제발생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 ②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재료의 사용실적 및 구입가격
  2. 직접노무비의 지출실적
  3. 직접경비의 발생실적
  4. 설물의 발생실적
  5. 공정별 장비현황
  6. 공정별 생산능력 및 투입인원
  7. 공정도(NET-WORK)
  8.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관계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제35조(재료비)**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단위당가격을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업체가 실제 구입하여 소비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20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통제 또는 고시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통제 또는 고시가격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방위사업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한 경우의 단위당 가격은 당해 비축 원자재를 보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산원가의 계산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당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부(국방기술품질원장, 수요군의 장)의 소요량 증명을 발급 받아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재료비를 계산한다.
  - 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생산한 경우에는 당해 방산물자 사전품질보증 지시일자의 구입가격
  - 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산원가계산시점의 구입가격
  - 다. 가목과 나목의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때에는 실제 구입가격

**제36조(설물의 평가)** 설물의 평가와 차감방법은 규칙 제12조를 적용한다.

**제37조(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계산은 실제 투입노무량과 실제지급노무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3조제8호 및 규칙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비목별로 당해물자의 생산에 대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규칙 제22조를 적용한다.

##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39조(경비)**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당해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및 각종 연료비 등을 말한다.
2. 감가상각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제21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3. 기술료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업체와의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기술비결(KNOW-HOW)의 획득비, 해외기술훈련비, 국외여비, 기술자초청비 또는 기술자문비 등을 말한다.

4. 개발비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5. 지급입차료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사용료로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6. 보험료는 당해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하는 화재보험료, 차량보험료 등을 말한다.
7. 복리후생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의료위생약품비,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8. 외주가공비(외주용역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용역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소모품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설계용품비, 각종 용지대, 복사비, 청사진대,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10. 교통통신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여비,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및 우편료 등을 말한다.
11. 세금과 공과금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직접 부과되는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2. 도서인쇄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영상제작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비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종사요원의 사내교육비와 위탁교육비 및 교육자료비 등을 말한다.
14. 시험제작비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형제작, 설계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비용을 말하며 제9호의 소모품비로 계상된 비용은 제외한다.
16.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제되어 있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17. 전산운영비는 용역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전산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한다.
18. 기타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 제39조의2(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원가계산)

규칙 제33조 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원가계산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제26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제6장 원가정보

#### 제40조(성실보고 의무)

- ① 방산업체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세무조정계산서
  3. 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 감사대상업체) 또는 세무신고 재무제표
  4. 규칙 제35조에 의거 구분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중점관리대상 업체에 한한다)
- ②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한 기일 이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자료의 요청 및 제출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타 재료비 증빙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 ④ 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통원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접재료비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2.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노무비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3. 제20조제2항의 직접작업,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의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이 경우, 간접, 무작업노무량 및 불인정여유시간은 별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1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단가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5. 업체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공통원가 구성요소에 대한 계산내역과 그 증빙자료

**제41조(왜곡된 원가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 조치 한다는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제42조(준용)**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준용한다.

## 제7장 기타

#### 제43조(수출보전 감가상각비)

- ① 규칙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출보전 직접감가상각비는 방산전용시설을 사용하여 당해 계약기간중 방산 수출품을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단위당 수출보전 감가상각비는 수출물량을 제외하고 산정한 단위당 상각비와 수출물량을 포함하고 산정한 단위당 상각비의 차이로 한다.

#### 제44조(삭제)

**제45조(방산수출품 인정범위)** 제43조의 방산수출품은 수출되는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물자로서 주요방산물자와 유사한 물자를 말한다.

#### 제46조(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보전)

- ① 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② 규칙 제39조의6제1항의 인정 가능한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시스템(업체의 전자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자동 수집하여 송신하기 위해 구축된 기능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2. 기타 연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 ③ 규칙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에 보전액은 계산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비용을 타 비목(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투하자본보상비 등)에 중복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7조(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 구축비용)** 규칙 제39조의7제2항의 구축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별표 10-1 「망 분리 시스템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구축하는 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시스템 장비 비용
2. 제1호의 망 분리시스템 및 망 연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



#### 제48조(방위사업전용시설의 관리)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 구입한 자산이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목적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인 경우에는 해당사업 연구개발담당자의 확인에 의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산인지 여부
  2. 당해 기계장치 등을 민수물자 생산에 활용 여부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업체의 회계결산서를 기준으로 처분한 자산 및 처분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여, 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제21조제6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재검토키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부칙<제38호, 2006.11.1. 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③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국방부 계획41301-2467, '03.7.1)”은 폐지한다.

#### 부칙<제90호, 2009.2.3.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 ③ (방산관련 자체연구개발비 및 수출촉진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2호는 2008년 발생분부터 적용하여 준비율을 산정한다.

#### 부칙<제118호, 2010.2.1.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 부칙<제144호, 2011.5.6.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 부칙<제165호, 2011. 12. 9.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 부칙<제211호, 2012. 12. 27.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 부칙<제238호, 2013. 11. 28.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단, 제19조의3(국방규격 개정시 실적가격의 인정 등)과 제45조(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는 2013년 10월 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3년 10월 10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확정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제310호, 2014. 10. 08.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1. 1. 이후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청 훈령 제238호, 2013.11.28.)을 적용한다.

#### 부칙<제315호, 2014. 11. 10.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1. 1. 이후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 부칙<제326호, 2015. 04. 01.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제351호, 2016. 01. 05.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제352호, 2016. 01. 29.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제386호, 2016. 12. 22.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산계약의 원가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제403호, 2017. 03. 16.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8호, 2017. 07. 05. 일부개정>**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세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세칙을 적용한다.
- 제3조(방산연구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은 2016년 발생분부터 적용하여 예비율을 산정한다.

**부칙<제425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세부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간접작업 노무량	회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반복적인 업무관련 조회/회의</li> <li>• 반별, 조별 업무능률 향상 관련 활동</li> </ul>
	작업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적, 필요적 작업준비시간</li> <li>• 자재청구/수령에 따른 정상적인 소요시간</li> </ul>
	휴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합의에 의한 정기적인 휴식시간</li> </ul>
	작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 공구, 자재 관련 필수적인 관리소요시간</li> <li>• 경상적, 주기적 장비점검 및 수선시간</li> <li>• 주변환경정리와 관련된 작업장 정리</li> </ul>
	정상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li> <li>• 관급자재 검사 대기시간</li> <li>• 천재지변에 의한 정전, 단수 시간 등</li> <li>• 정부관련 설계 및 규격의 의도적인 변경</li> </ul>
무작업 노무량	휴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규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 유급 및 생리휴가</li> <li>• 사규상의 각종 투표, 선거와 관련한 시간</li> </ul>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li> <li>•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시간</li> </ul>
	행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주관 회사창립행사, 자연보호, 새마을운동, 복지 및 교육행사 등</li> <li>• 노사합의에 의한 노조주관행사</li> </ul>
	출장/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관련 외부출장</li> <li>• 일과시간내 공용 사외외출</li> </ul>
불인정 여유시간	기타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급자재 불출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li> <li>• 사급자재 검사 대기시간</li> <li>• 업체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 단수 시간</li> <li>• 작업라인상의 비정상적인 대기시간</li> <li>• 공구/장비 관련 비정상적인 대기시간</li> <li>• 비경상적, 비반복적 장비고장 시간</li> <li>• 정부와 관련 없는 설계 및 규격의 의도적인 변경</li> </ul>
	불량수정/재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 제품 외주관련 불량수정 및 재작업 시간</li> </ul>
	기타출장/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와 관련없는 외부출장</li> <li>• 일과 시간내 업무와 관련 없는 외출</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는 노조주관행사</li> <li>• 결근, 조퇴, 지각 시간</li> <li>• 기타 인정되지 않는 여유시간</li> </ul>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2014.9.12.] [국방부령 제827호, 2014.9.12.,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2.>

1. "계약금액"이란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概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목표원가"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6. "목표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 "유인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8. 삭제 <2014.9.12.>
9.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10. "기준계약금액"이란 영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성과기반계약(이하 "성과기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또는 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성과금"이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3조(계약방법의 선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 시기,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위험부담과 효율적인 계약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절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 또는 사업 특성별로 적합한 계약유형 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4조(예정가격등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등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정가격등의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 전망, 계약이행기간, 수급 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등의 조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4조의2(개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장제3절·제4절·제4절의2·제5절·제6절·제9절 및 제10절에 따라 개산계약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물가변동, 설계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라 예산소요가 증감하여 개산계약금액(概算契約金額)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이 곤란할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2.>

②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조정 시점까지의 실제발생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개산계약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4조의3(예정가격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등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등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 제1절 일반확정계약

**제6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성능 등 기술적 요구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분석자료 또는 원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확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7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08.12.31.]

## 제2절 물가조정단가계약

**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에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9.12.> [전문개정 2011.5.9.]

**제9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수의 등락률을 말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의 등락률
  2. 고용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임금 증감률
  3. 그 밖에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지수의 등락률
- ②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지수의 등락률을 고려하여 그 직전 계약의 품목별 계약실적단가를 조정 한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지수의 등락률 및 계약실적단가의 구체적인 적용·산정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

## 제3절 원가절감보상계약

**제10조(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계약 이행 중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이 확정된 후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3.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확정된 비목의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1.5.9.]

**제11조 삭제 <2006.11.1.>**

**제12조(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개발
  2. 국산화 개발
  3. 열관리
  4. 규격 및 공정 개선
  5. 품질 및 성능 개선
  6. 그 밖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 [전문개정 2011.5.9.]

**제13조(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가 제12조에 따라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할 때에는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원가절감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2. 원가명세서 및 원가절감액(원가절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원가추정명세서 및 원가절감예상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가절감보상계약에 참고가 될 사항
-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절감 방안을 제안하여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4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가절감 제안의 내용, 원가절감액의 평가방법, 그 밖에 원가절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초의 원가절감보상계약에서 결정된 보상액의 내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5조(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에 대한 원가절감 내역이 적정인지 파악하게 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을 파악한 원가절감자료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5조의2(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기간 중의 원가절감 성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최종 평가의견을 받도록 하고,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평가의견서와 최종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6조(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① 원가절감보상액은 원가절감액 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당초 제조원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원가절감보상계약의 계약대금은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원가절감액을 뺀 금액에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실적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품목단위당 원가절감보상액에 계약 수량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원가절감이 제안된 원가요소의 제조원가는 최근 원가절감 실적이 있는 제조원가에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4절 원가절감유인계약 <개정 2014.9.12.>

**제17조(계약체결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원가 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할 수 있는 비목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유인적용 대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9.12.]

**제18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1.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 : 예정가격
2.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등 : 개산가격

[전문개정 2014.9.12.]

**제19조(계약요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이 경우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과 곤란한 비목등으로 구분한다.
2. 유인적용대상 비목등
3. 목표원가
4. 목표이익
5. 정산방법 및 기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의 계약에서 결정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 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

**제20조(계약대금의 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모두 합하여 결정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1. 유인적용대상 비목등 :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 다만, 해당 계약 체결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목등 :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계약금액. 다만, 제18조제2호에 따른 비목등의 경우에는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결정·지급·정산 및 비목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

#### 제4절의2 한도액계약 <신설 2008.12.31.>

**제20조의2(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이하 "한도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0조의3(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에 각 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소요기관에서 요청한 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격 확정이 가능한 품목 : 예정가격

2. 가격 확정이 곤란한 품목 : 개산가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체결된 품목에 대하여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에 수량·납기·납품장소 등을 확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외의 추가품목에 대한 소요기관의 사용요청시 그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추가품목을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품목의 가격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정하되,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예정가격등의 비율 및 예정가격등에 대한 다른 계약의 낙찰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퍼센트에 도달하는 때 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계약품목의 가격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에 정산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정산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제4항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9.12.]

#### 제5절 중도확정계약

**제2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개발 및 시제품(試製品) 생산 후의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를 획득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이행 중 상당한 비용변동이 예상되지만, 계약이행 기간 중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9.]

#### 제6절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제2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비목 중 일부 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24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비목은 개산가격을 정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중 개산가격으로 정한 금액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확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7절 삭제 <2014.9.12.>**

제25조 삭제 &lt;2014.9.12.&gt;

제26조 삭제 &lt;2014.9.12.&gt;

제27조 삭제 &lt;2014.9.12.&gt;

**제8절 삭제 <2006.4.24.>**

제28조 삭제 &lt;2006.4.24.&gt;

제29조 삭제 &lt;2006.4.24.&gt;

제30조 삭제 &lt;2006.4.24.&gt;

**제9절 일반개산계약**

**제31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가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영 제6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9.]

**제32조(계약금액의 결정)**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5.9.]

**제10절 성과기반계약 <신설 2014.9.12.>**

**제33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성과의 달성이 요구되어 계약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12.]

**제34조(계약금액의 결정)** ①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성과기반계약의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③ 성과기반계약의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는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기준계약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9.12.]

**제35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
2. 계약기간
3. 성과금
4. 기준계약금액
5. 성과평가기준

[본조신설 2014.9.12.]

**제36조(계약대금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금을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정산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정산·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9.12.]

**제11절 장기옵션계약 <신설 2014.9.12.>**

**제37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장기옵션계약(이하 "장기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9.12.]

**제38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장기옵션계약의 품목·수량 및 계약기간
2. 장기옵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방법
3. 장기옵션계약의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4. 장기옵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기옵션계약 미이행시 계약의 불이익, 손해배상금 징수, 장기옵션계약 불이행 정보의 공개 등 조치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옵션계약의 내용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할 때에는 그 계약상대자와 해당 소요물량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을 적용 기준에 따라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 기관에서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등락률을 기초로 한다.

[본조신설 2014.9.12.]

**부칙 <제827호, 201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부칙 제2조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방위사업청 훈령 제39호(2006. 11. 1. 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91호(2009. 2. 3.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45호(2011. 5. 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92호(2014. 7. 2.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24호(2015. 3. 12.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절한 예정가격이 산출되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자료와 적절한 분석을 활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방법을 검토한 후에 계약상대자와 계약 금액 및 계약방법에 대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제3조(물가조정단가계약)** ① 규칙 제8조의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0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목적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최근 계약실적단가의 비목별로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지수동락률 만큼 계약실적단가를 조정할 후 계약수량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한다.

1. 재료비 : 수입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물가 중분류지수, 그 외 재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중분류지수 다만, 중분류지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총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노무비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인상률과 계약상대자의 최근 3개년 임금인상 실적률(기하평균)의 산술평균율
3. 경비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총지수, 단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 등 이연상각하는 직접경비는 직접계산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최근 계약실적단가에서 적용한 일반관리비, 이윤, 투하자본보상비, 수출보전감각상 각비, 제세(관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제외되는 비목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등이 차지하는 실적비율

**제4조(원가절감보상계약)** ① 규칙 제2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계약방법은 계약목적물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가를 절감하고자 할 때에 적용된다.

- ② 규칙 제14조 제1항의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방위산업물자의 생산감독 또는 검사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해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품질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 ③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제안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고,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성과에 대한 평가를 생산감독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한다)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 ④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절감성과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
- ⑤ 규칙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검사기관이 평가의견서를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⑥ 원가절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산정한다.

1.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후 실제발생제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시 적용된 간접노무비율 및 간접경비율을 적용한다.
2. 원가절감액 산정과정에서 계약이행 중 발생된 물가나 환율의 변동 또는 계약수량의 변동 등 원가절감활동이 외의 요인에 의한 원가변동 효과는 배제시켜야 한다.

**제4조의 2(유인 적용대상 비목등의 선정)** ①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인적용대상비목등은 해당사업의 특성, 업체의 통제가능성, 환율 등 원가비목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유인적용대상비목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목표원가의 산출)** ① 규칙 제2조 제5호의 목표원가는 계약상대자의 원가통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가이므로, 원가절감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표원가는 유인적용대상비목등의 계약시 결정된 계약금액 중 이윤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원가절감유인계약의 제비율 적용)** 규칙 제20조의 원가절감유인계약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계약 체결전에 확정하고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체결시 제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제발생원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시 제비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 2(유인이익의 산출)** ① 규칙 제20조의 유인이익 산출에 필요한 실제발생원가를 산정시 제비율, 환율 등 유인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비목 또는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한다.

② 원가절감유인계약에 있어 계약물량 증감에 따른 차이 등 정상적인 원가절감이 아닌 경우에는 유인이익 산출시 원가절감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방법의 명기 및 선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본문에 「방위사업법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규칙 제2장의 각 계약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 계약 기간, 계약 및 생산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획득단계별 계약방법을 선택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의 적용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일반 개산계약
  2. 초도(1차)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 계약
  3. 2차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중도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4. 2차 이후 계속양산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확정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5. 기타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한도액계약은 해당 계약 체결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한다.
- ③ 사업의 특성상 제2항의 획득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방법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규칙 제2장의 각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계종합업체와 방산 주장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주장비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탄약, 포탄 등과 같이 체계업체에서 직구매가 곤란한 경우
2.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탑재 또는 부수장비
3. 생산공정관리에 효율적이고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며 무기체계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제8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39호, 2006. 11. 1. 제정>**

- ① 이 세칙은 '06. 11. 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의 시행지침」(계획45113-58, '00.2.1)은 폐지한다.

**부 칙<제91호, 2009. 2. 3.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5호, 2011.5.6.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24호, 2015.03.12.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방위사업청장(각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참조  
제목 원가절감제안서

1.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3조제1항
2. 위 근거에 의거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가 절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가. 계약대상물품 및 수량 :  
나. 계약금액(견적금액) :  
다. 원가절감(예상)액  
라. 원가절감방법 (기재요령은 뒷면 참조)

① 절감(예상) 원가항목	② 계약 (절감/예정) 수량	③ 원가항목별 단가			⑦ 원가항목별 금액		
		④ 현재원가	⑤ 실제발생 (추정)원가	⑥ 절감 (예상)액	⑧ 현재원가	⑨ 실제발생 (추정)원가	⑩ 절감 (예상)액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⑪ 간접노무비							
⑫ 간접경비							
⑬ 제조원가							

- 붙임 1. 세부원가(또는 추정원가)명세서 1부.
2.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 1부.
3. 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한 소요비용등 기타 참고자료 1부. 끝.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 원가절감(예상)액 기재방법

- ①란 : 원가절감 실적(또는 계획한) 세부 원가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으로 기입한다.
- ②란 : 원가항목별 계약(예정)수량이 원가절감후에도 동일한 경우 이외에 기준 노무공수의 감축등 수량감소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할 계획인 경우에는 계약기준과 절감후 예상되는 기준수량(괄호내)을 함께 표시한다.

예)

재 료 비		
수입부품 A	10개	
직접노무비		
선 반 공	10명 (7명)	

- ③ ~ ⑥ 란 : 원가항목별로 현재의 견적원가를 ④란에, 원가절감후 실제 발생(예상) 원가를 ⑤란에, 그 차액을 ⑥란에 기재한다.
  - ⑦ ~ ⑩ 란 : ⑧ = ② × ④  
 ⑨ = ② × ⑤  
 ⑩ = ⑧ - ⑨  
 ※ ( ) 내의 수량도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 ⑪ 란 : ⑦란에서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당해 업체의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⑧ · ⑨ · 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 ⑬ 란 : ⑦란에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을 합하여 ⑧ · ⑨ · 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 ※ 본 서식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양식을 변형하거나 붙임자료를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방기술품질원장  
 참조  
 제목 원가절감성과 평가 의뢰

- 1.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2제1항
- 2. 위 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가절감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번호, 계약물품 및 수량 :  
 나. 계약금액 :  
 다. 원가절감성과  
 라. 원가절감방법 (기재요령은 뒷면 참조)

① 원가절감 항목	② 계약 (절감) 수량	③ 원가항목별 단가			⑦ 원가항목별 금액		
		④ 계약원가	⑤ 실제발생 (추정)원가	⑥ 절감액	⑧ 계약원가	⑨ 실제발생 (추정)원가	⑩ 절감액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⑪ 간접노무비							
⑫ 간접경비							
⑬ 제조원가							

- 붙임 1. 기술자료 1부.
- 2. 세부적인 원가명세서 1부.
- 3.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 1부.
- 4. 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한 소요비용등 기타 참고자료 1부. 끝.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 원가절감(예상)액 기재방법

- ①란 : 원가를 절감한 세부 원가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으로 기입한다.  
 ②란 : 원가항목별 계약예정수량이 원가절감후에도 동일한 경우 이외에 기준 노무공수의 감축등 수량감소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 경우에는 계약기준과 수량과 변경된 기준수량(괄호내)을 함께 표시한다.

예)

재 료 비		
수입부품 A	10개	
직접노무비		
선 반 공	10명 (7명)	

- ③ ~ ⑥ 란 : 원가항목별로 현재의 계약원가를 ④란에, 원가절감후 실제발생 원가를 ⑤란에, 그 차액을 ⑥란에 기재한다.  
 ⑦ ~ ⑩ 란 : ⑧ = ② × ④  
 ⑨ = ② × ⑤  
 ⑩ = ⑧ - ⑨  
 ※ ( ) 내의 수량도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⑪ 란 : ⑦란에서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당해 업체의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⑧ · ⑨ · 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⑬ 란 : ⑦란에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을 합하여 ⑧ · ⑨ · 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 본 서식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양식을 변형하거나 붙임자료를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방위사업청장(각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참조  
 제목 원가절감성과 보고서 제출

1. 관련근거 :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2제1항
2. 위 근거에 의거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이행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가절감 성과를 보고합니다.
  - 가. 계약번호, 계약물품 및 수량 :
  - 나. 계약금액 :
  - 다. 원가절감성과
  - 라. 원가절감방법 (기재요령은 뒷면 참조)

① 원가절감 항목	② 계약(절감) 수량	③ 원가항목별 단가			⑦ 원가항목별 금액		
		④ 계약원가	⑤ 실제발생 원가	⑥ 절감액	⑧ 계약원가	⑨ 실제발생 원가	⑩ 절감액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⑪ 간접노무비							
⑫ 간접경비							
⑬ 제조원가							

- 붙임 1. 세부적인 원가명세서 1부.  
 2. 원가절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품성능에 미치는 영향 1부.  
 3. 감독검사기관의 기술적 평가의견서 1부.  
 4. 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한 소요비용등 기타 참고자료 1부. 끝.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 원가절감(예상)액 기재방법

- ①란 : 원가를 절감한 세부 원가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으로 기입한다.
- ②란 : 원가항목별 계약예정수량이 원가절감후에도 동일한 경우이외에 기준 노무공수의 감축등 수량감소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 경우에는 계약기준과 수량과 변경된 기준수량(괄호내)을 함께 표시한다.

예)

재 료 비		
수입부품 A	10개	
직접노무비		
선 반 공	10명 (7명)	

- ③ ~ ⑥ 란 : 원가항목별로 현재의 계약원가를 ④란에, 원가절감후 실제발생 원가를 ⑤란에, 그 차액을 ⑥란에 기재한다.
  - ⑦ ~ ⑩ 란 : ⑧ = ② × ④  
 ⑨ = ② × ⑤  
 ⑩ = ⑧ - ⑨  
 ※ ( ) 내의 수량도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 ⑪ 란 : ⑦란에서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당해 업체의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⑧ · ⑨ · 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 ⑬ 란 : ⑦란에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을 합하여 ⑧ · ⑨ · ⑩란에 각각 기입한다.
- ※ 본 서식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해 양식을 변형하거나 붙임자료를 추가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계약당사자)

제목 평가의견서

1. 관련근거

- 가.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2 제2항
- 나. 원가절감(제안서/성과) 평가 의뢰 : 문서번호 및 날짜

2. 위 근거의 "나"에 의해 신청하신 원가절감(제안서/성과)에 대한 평가의견 입니다.

3. 평가의견

※ 업체의 원가절감(계획/성과)에 대하여 기술적인 타당성 및 품질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되 구체적으로 생산성, 성능, 호환성, 내구도, 군수지원,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계획의 실현가능성(또는 그 성과등)에 관한 적절한 논평을 제시한다.

국 방 기 술 품 질 원 장 (인)

##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방위사업청 훈령 제 92호(2009. 2. 3. 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166호(2011. 12. 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198호(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 212호(2012. 12. 27.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21호(2015. 01. 0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64호(2016. 07. 29.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87호(2016. 12. 22.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의거 방산업체의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산업체가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한 제품원가계산을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은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으로서 사전에 정부에 신고한 기준을 말한다.
2. “구분회계”라 함은 방산업체가 민수·방산 또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원가회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민·방산 구분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제명세서, 방산자산목록, 각 제품별 원가계산보고서 등의 작성을 의미한다.
3. “개별비”라 함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4. “공통비”라 함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5. “직접비”라 함은 한 제품에 직접 추적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6. “간접비”라 함은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각각의 제품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7. “집계단위”라 함은 최종원가대상의 원가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원가대상을 말하며, 개인·부서·공정·건물·기계장치·비목·사업·부문(제15조의 세부부문 또는 부문, 민·방산부문 등)·제품군·제품·활동 등을 집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8. “방산매출액”이라 함은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출액을 말하며, 정부에 납품되거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출품의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감정 및 자문)** ①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구분회계보고서가 신고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감정의뢰하고 그 감정의견을 구분회계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방산업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회계처리기준 내용의 공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의견에 의하여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 및 자문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일반관리비에 계상한다.

## 제2장 회계처리기준

**제4조(적용범위 및 시점)** ①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기준은 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회계처리기준 적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보고서 제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변동이 없는 사항은 차기 회계처리기준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회계처리기준 보고서 내용)**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제품별 원가회계 또는 구분회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지1, 별지2와 같다. 이 경우 작성 양식을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관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설계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사조직도)** ① 방산업체는 민·방산전용부서, 제조, 제조지원, 공장지원 및 일반관리부서를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분하고 제조부서는 작업반까지 표시되도록 회사조직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산업체는 조직이 변동되고 그 변동이 원가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품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생산과정설명서)** ①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포함되는 제품생산과정 설명서는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제조 과정에 관한 공정흐름도(FLOW-CHART)와 제품생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은 원가의 집계 및 배부과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방산업체는 제품생산과정설명서에 실질적인 제품 생산과정을 설명하고, 생산과정에 따라 발생한 원가의 성격을 파악·분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및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1. 비용의 집계기준, 집계단위, 배부기준, 부문간 원가배분절차, 비용인식방법, 제품별 원가계산방법, 비용분류 등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에 속하는 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기준의 변경)  
 2. 부문조직의 변경, 기계장치 등의 위치변경, 작업인원의 이동 등 조직내부의 물리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부문조직의 변경으로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부문조직의 변경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내용의 변경)  
 ②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은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다.  
 1. 이미 보고한 회계처리기준 등이 방산업체의 실제 원가흐름과 현저하게 괴리되어 있어 실제발생원가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2.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이 규칙, 시행세칙 및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방산업체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업체에 승인여부 및 적용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예비율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와 적용시기를 통보하며, 이 경우 통보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④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시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 변경전후의 비교표·변경사유·변경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장 구분회계

### 제1절 일반기준

**제10조(적용범위 및 선정기준)** ① 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업체(이하“중점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은 선정년도 직전 2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개년만 다음 각 호 기준에 포함되어도 중점업체로 한다.

1. 방산매출액 300억 이상
2. 방산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총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중 50% 이상
3. 방산매출액 30억 이상이고 총직접노무비 대비 방산직접노무비 비중 50% 이상
4. 수량 대폭증가 예상업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중점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 중점업체이외의 업체는 구분회계에 관하여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원가회계시스템 구축)** 방산업체는 구분회계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원가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원가회계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구분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방산업체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구분회계보고서는 별지2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작성 자료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규칙, 세칙 및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야 한다.

④ 중점업체는 중점업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분회계보고서를 그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15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분회계보고서는 예비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원가의 측정방법)** 원가의 측정방법에는 실제원가계산과 표준원가계산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병용하거나 비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실제원가계산”이라 함은 실제의 가격 및 실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비목을 실제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비용 실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회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표준원가계산”이라 함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가격 및 표준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비목을 표준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원가의 산정 근거, 사후실제원가와와의 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구분회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집계단위)** ① 방산업체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적정하고 세분화된 집계단위를 설정하여 발생원가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 집계단위에 집계된 원가는 원천증거서류에 의하여 파악 가능하여야 한다.

**제15조(원가부문)** ① 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라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제조부문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주조, 기계, 가공,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제조지원부문

제조 또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생산관리, 공무, 창고, 자재,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장관리부문

공장 또는 사업부 전체를 관리 및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공장 총무, 공장 예비군대대, 시설, 경비,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일반관리부문

회사전체 또는 각 사업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기획관리, 본사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16조(제조원가의 공장별 구분)** ① 공장이 다수인 경우 공장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공장별로 실제발생원가를 집계한다. 다만, 전체공장에 공통적인 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장별로 구분한다.

② 제조원가보고서는 공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비용집계)** ①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경우에는 전표 작성시부터 구분하여 별개의 장부(전산처리부 포함)에 가장 하여야 한다.

② 개별비는 별개의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비와 관련한 소비량은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구분회계의 방법)** ① 구분회계는 제품별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동류다종의 제품을 동일업체에서 생산함으로써 각 제품별 배부작업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방산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부문별원가계산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 요소를 직접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직접 각 제품에 배부할 수 있다.

**제19조(부문별원가계산)** ①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다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세부원가 부문별로 집계한 후, 이를 다시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다. 원가를 부문별로 계산하는 때에는 원가요소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을 말한다)에 배부하고, 보조부문비는 직접배부법·단계배부법 또는 상호배부법 등을 적용하여 각 제조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부한다. 원가요소는 원가의 직접적인 집계가능성 여부에 따라 부문개별비나 부문공통비로 구분하여 부문개별비는 당해부문에 직접부과하고, 부문공통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관련부문에 배부한다. 각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다시 각 제품에 배부한다.

② 민·방산으로만 구분하는 경우에도 부문별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배부기준)** ①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일반요건 및 각 배부기준별 일반적인 적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객관성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매년 또는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투입되어야 하며, 실적자료에 기초를 두거나 검증된 표준정보이어야 한다.

2. 계속성

채택한 배부기준은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적용되는 비목과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기준이란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원가가 발생할 때 그 활동과 원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특정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기준은 원가배부기준으로 측정되는 특정활동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원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익관계 기준이란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와 원가대상간의 인과관계나 효익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등 기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분할 수 있으나 원가의 발생과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이 가능한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및 비목별 배부기준을 예시하면 각각 별지1의 표1 및 표2와 같다.

## 제2절 세부기준

**제21조(직접재료비)** ① 재료투입 시 제품별로 기록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생산할 때는 생산량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이하“표준재료소요량”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2조(간접재료비)** ① 간접재료비 투입액이 제품별로 계속기록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발생금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량, 직접재료비 등의 배부기준 중 상관관계가 높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때에는 제품별 표준노무량을 기준하여 구분할 수 있다.

**제23조(관급재료비)** ① 방산업체는 관급재료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급재료비는 투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등 방산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되 계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작업시간의 기록)** ① 작업시간기록표는 방산업체의 특성에 맞게 개인별, 제품별 및 부서별로 파악 가능하도록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시간은 작업일보, 기타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③ 작업시간 기록대상은 민·방산전담부서 및 공통부서의 제조공정에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종업원 및 노동자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④ 집계단위간 작업자의 이동지원이 있는 경우 당해 작업자의 작업시간은 지원되는 집계단위의 작업시간으로 한다.

**제25조(급여명세서)** ①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수당은 상여금 지급 시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을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총당금의 당기 설정액을 말한다.

④ 회계기간중 연평균인원에 의한 부서별 직·간접 인원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직접노무비)** ① 원가대상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개별비로서 구분하고, 공통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되 원가대상별 직접노무량의 집계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각 제품 또는 작업별로 신뢰성 있는 표준작업노무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직접부서의 노무비를 구분할 수 있다. 표준작업노무량은 제조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때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 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7조(간접노무비)** ① 공통비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 개별비의 경우에도 보조부문의 원가는 간접노무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조(관급기계장치)** 방산업체는 관급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장비는 국고보조금 부분만큼 관급장비로 본다.

**제29조(직접경비)**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직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공통비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② 감가상각명세서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원가산정 시 허용되고 있는 방법(정액법, 특별상각,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된 방법으로 환산하여 별도의 감가상각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세서에는 해당자산명, 기초가액, 자산의 당기 증가액 및 감소액, 당기 상각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당기에 새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⑤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입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등이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⑥ 설계비, 특허권사용료, 개발비 등 규칙상 이연상각대상비용은 그 발생 및 상각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세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개발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간접경비)** ① 간접경비의 구분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하고,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기여도 및 비용발생형태의 인과관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 및 배부단계를 거쳐 구분한다.

② 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타계정대체)** ① 타계정대체의 내역은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경비·간접경비 등으로 분류하고, 대체되는 상대 계정과목 및 그 금액을 구분회계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타계정대체의 기준·방법 등을 회계처리기준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32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부문의 제품별 또는 민·방산구분 시 각 비목별로 개별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비로서 구분하여야 하며, 개별적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비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 ② 일반관리부서의 급여명세서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③ 세칙 제26조제3항에 의해 방산업체가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관련자료(사업계획서, 발생비용 등)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비용 조정)** ① 각 비목별로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비원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 ②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수리부속품매출, 상품매출 등의 해당재료비는 방산재료비에서 차감한다.
- ③ 용역매출 관련 비용은 제조비용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타계정대체액은 해당 각 비목으로부터 차감한다.
- ⑤ 기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방산원가 규정 및 회계관행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투하자본)** ① 투하자본은 계속자산, 신규자산, 매각자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② 방산투하자본은 각 자산별로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따라 민·방산을 구분하여 방산투하자본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세칙 제32조의 2 제3항 제1호의 개발비는 비용발생시점부터 상각종료시점까지 투하자본으로 반영한다. 다만,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방산물자 생산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투하자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업체별 경영노력 평가)** ① 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체별 경영노력평가는 방산업체의 경영노력 평가 기준(별지3)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② 평가는 매년마다 최근 2개년도 실적자료 기준으로 실시하되, 종합상대평가에 의한다. 다만, 방산물자 생산실적이 2개년도 미만일 때에는 생산실적이 있는 연도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③ 방산업체로 신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방산제비율을 산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제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비율 산정 직전 2년간 방산물자 또는 방산물자의 부품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방산업체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당해업체 경영노력 평가보고서(별지4)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품질일관성 유지 노력과 생산성경영 노력의 평가점수는 원가계산시점(개산계약의 경우 정산원가계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부서 협조를 통하여 산정한 후 별도 적용한다.
- ⑥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경영노력 평가 점수 가산은 원가계산시점에 산정하여 별도 적용한다. 이때, 평가점수 가산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방산원가 대상물자(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방산원가대상물자를 포함한다)에 한정하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및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인증 취소시 기 지급된 보상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계약관리본부장이 정한다.
- ⑦ 제2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체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의 경영노력 평가점수 감점은 원가계산시점에 산정하여 별도 적용한다.

**제36조(방산자산목록)** ① 방산자산목록은 방산원가 관련 자산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민·방산구분은 각각의 사용 용도에 의하여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한다.

**제37조(다른 지침등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을 적용한다.

**제38조(재검토키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 부칙<제92호, 2009.2.3. 제정>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 ③ (투하자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은 2008년 발생분 부터 적용하여 투하자본을 산정한다.
- ④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구분회계지침(방위사업청 훈령 제41호, '06.11.1)과 공시보고지침(방위사업청 훈령 제42호, '06.11.1)”은 폐지한다.

## 부칙<제166호, 2011.12.9.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지3의 공통기준 1의 8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부터 적용하며 별지3 공통기준 1의 9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198호, 2012.10.26.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지3의 공통기준 1의 8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212호, 2012. 12. 27. 일부개정>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지3의 공통기준 1의 8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제321호, 2015. 01. 0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 ② 별지3의 공통기준 1의 제8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기준 시행 전에 가산금 환수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제387호, 2016. 12. 2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기준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정산에 관하여는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 ② 별지3의 항목별평가기준 11의 4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지 1】

〈표 1〉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배 부 기 준	적 용 요 건
직접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수량을 계속 파악하고 원가법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여 직접재료비의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원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재료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비목이 직접재료의 가격보다는 주로 수량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li> <li>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재료수량을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표준 재료소요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별로 표준재료소요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li> <li>표준재료소요량은 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li> <li>제품별로 불량율이 높거나 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등 제품별 실발생 재료비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바람직하다.</li> </ul>
직접 노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일보, 기타 확인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부서별·제품별로 노무량이 집계되고 당해 노무량이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li> <li>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되어 직접 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li> </ul>
총 발생 노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총발생노무량이 부서별로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li> </ul>
표준 노무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별, 공정별, 부품별로 표준노무공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li> <li>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표준노무량의 타당성이 정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li> <li>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되어 표준 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li> </ul>
직접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비목이 부문별 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보다는 직접노무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li> <li>부문 또는 제품별로 직접노무비가 집계되어야 한다.</li> </ul>
기계 가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문 또는 공정별로 기계장치의 집계 및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li> <li>부문(또는 공정)별·기계장치별·제품별로 기계가동시간이 집계되어야 하고 반장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li> <li>표준기계가동시간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의 기계가동시간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li> </ul>

배 부 기 준	적 용 요 건
종업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비목이 종업원의 기본급이나 호봉 및 노무량과는 상관없이 종업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종업원 수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li> <li>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관련종사자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li> </ul>
건물 점유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비목이 건물점유면적에 의하여 산정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li> <li>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점유면적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li> </ul>
취득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완료 등으로 관련 감가상각비가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설명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한다.</li> <li>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자산의 취득금액의 집계 가능하여야 한다.</li> </ul>
제조 지시서 작성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비목이 제조지시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한다.</li> <li>제조지시서의 작성·집계 및 관리가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i> </ul>
제조 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비목이 투입된 총원가와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한다.</li> <li>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투입된 제조원가의 집계 가능하여야 한다.</li> </ul>
매출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발생금액에 의하거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에 의하여 배분하기 곤란하고 매출액과 원가발생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li> <li>배부기준으로서의 방산매출액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의 방산물자 및 제18조 제4항의 연구 또는 시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관납물자 또는 수출품등 방산물자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방산전용 기계장치나 시설을 사용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한다.</li> <li>방산물자와 제조과정이 유사한 관납물자 및 방산매출액에 대한 타매출액 비중이 과소한 일반물자 등 제조원가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매출액은 방산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li> <li>방산매출액과 민수매출액 및 방산제품별 매출액을 구분하여야 하며, 제2항 내지 제3항의 방산매출액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그 구분기준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li> <li>제조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수리 부속품 매출액, 상품매출액, 용역매출액 등 방산제조과정과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민수매출액 때에는 민수매출액에만 포함하여야 한다.</li> <li>구분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표와 같이 배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요건을 설정하여 제20조제1항에 의한 일반요건과 이 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채택·운용하여야 한다.</li> <li>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 이외의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의 적용요건에 준하는 적용요건을 설정하여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li> </ol>	

〈표 2〉비목별 배부기준 예시

비목	적 용 요 건
직접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함이 원칙</li> <li>•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을 집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료소요량에 의하여 구분</li> <li>• 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li> </ul>
간접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함이 원칙</li> <li>• 재료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재료비를 기준</li> <li>• 소모공구·기구·비품이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일반공구·기구와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소모공구·기구·비품비는 일반공구·기구의 감가상각비를 기준</li> <li>• 제13조제1항의 조건을 충족시 직접노무량 등의 기준도 가능</li> </ul>
직접 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공정별·제품별 직접노무량을 기준</li> <li>• 직접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노무량을 기준</li> <li>•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li> </ul>
간접 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노무량, 직접노무비, 재료투입량, 재료비, 작업횟수(제조지시서 작성횟수), 매출액 등의 배부기준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기준을 선택</li> </ul>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기계작업횟수 등을 기준하되 각 기계장치마다 다른 기준 적용 가능</li> <li>•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li> </ul>
공기구, 금형, 계측기 및 구축물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선택</li> <li>•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 임차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경우 그 배부기준을 준용 가능</li> </ul>

배부 기준	적 용 요 건	
설계비, 공사비, 시험검사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개발비, 외주가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li> </ul>	
전력비, 수도광열비, 건물·차량·운반구 등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보험료, 수리수선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경상개발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li> <li>•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기계작업횟수, 재료투입량, 제품생산량, 타비목, 매출액 등의 배부기준중 제2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li> <li>• 비목별 또는 동일 비목내에서도 집계 단위에 따라 다른 배부기준 적용 가능</li> </ul>	
운반비, 보관비, 용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li> <li>•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적용</li> <li>• 직접재료비와 관련시 직접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수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재료투입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li> </ul>	
복리후생비	식당부대비나 식대, 자녀학자금, 통근버스 이용료등 단순히 종업원수에 영향을 받는 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업원수를 기준</li> <li>•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대상별 노무비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li> </ul>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의 방산업체 부담 분등 봉급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대상별 노무비를 기준으로 함이 바람직</li> </ul>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수, 노무비 등의 배부기준 중에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배부 기준을 선택</li> </ul>	
기 타 간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조제1항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적용 이를 충족시키는 배부기준의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노무량을 기준</li> </ul>	
이 표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배부기준 사용시 제20조제1항 및 별지 1 표1의 배부기준 적용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2】  
제1호 서식

방산원가 구분총괄표

비 목		금 액			비 고
		전 체	방 산	민 수	
재료비	직접재료비	(3)	(4)	(5)	
	간접재료비	(6)	(7)	(8)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10)	(11)	(12)	
	간접노무비	(13)	(14)	(15)	
	소 계				
경 비	직접 경비	(16)	(17)	(18)	
	간접 경비	(22)	(23)	(24)	
	소 계				
제 조 원 가					
일 반 관 리 비		(25)	(26)	(27)	
총 원 가					
매 출 액		(1)	(2)	(1)-(2)	
관 급 재 료 비		(9)	(9)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2. 작성요령

가. 제2호 서식 내지 제14호 서식의 해당 번호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나. 제15호 서식의 제조원가 타계정대체명세서의 비목별 금액을 차감한 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호 서식

방산 매출액 명세서

구 분	제 품 명		금 액
방산물자			
소 계			(가)
관납물자			
소 계			(나)
수출물자			
소 계			(다)
기 타			
소 계			(라)
방산매출액 계(2)			(가)+(나)+(다)+(라)
민수매출액 계(1)-(2)			
전체 매출액	(1)	방산매출액비율	$\frac{(2)}{(1)} \%$

1. 작성요령

가. 관납물자 및 수출물자라 함은 별지 1 표1의 방산매출액항목 제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나. 기타 란에는 별지 1 표1의 방산매출액 항목 제3항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재한다.

다. 전체매출액은 공인회계사의 수정후 매출액을 기재한다.

라. 방산매출액 비율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2자리까지 계산한다.

마. 제품명은 암호명으로 기재한다.

바. 각 물자의 매출액은 민·방산으로 구분하고 제조·용역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도 구분하여 민·방산 매출액 구성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배 부 기 준 표

민·방산 또는 제품간 배부기준	배부율	배부율 계산내역	적용부문 및 비목		비 고
			금년도	전년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					
·					
·					
·					
·					

**1. 작성요령**

- 가. 배부기준 적용비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이유를 비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나. 전년도 기준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재료비 구분 명세서

구 분	배부기준	금 액		
		전 체	방 산	민 수
직 접 재료비	주 재료비			
	구입부품비			
	포장재료비			
	기 타			
	소 계		(3)	(4)
간 접 재료비	보조재료비			
	소모공구· 기구·비품비			
	기 타			
	소 계		(6)	(7)
계				

**1. 첨부서류**

- 가. 표준재료소요량에 의하여 직접재료비를 구분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한다.
- 나.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 다. 설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 가. 수입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입과 수입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관급재료비명세서

관급 재료명	관급 업체	기초재고			당기입고			기말잔액			당기사용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2. 작성요령**

가. 외국수입관급품인 경우는 실구입가격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구입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관급시점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되 재무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노무비총괄표

급여내역	구분	직 접			간 접			합 계			
		전체	방산	민수	전체	방산	민수	전체	방산	민수	
기 본 급(A)											
제 수 당	상여 지급 대상	○○ 수당									
		○○ 수당									
		소계(B)									
	기타 수당	○○ 수당									
		○○ 수당									
		소계(C)									
합 계											
상여금지급대상(A+B)											
상 여 금(D)											
소 계(A+B+C+D)											
퇴 직 급 여											
잡 급											
합 계		(10)	(11)	(12)	(13)	(14)	(15)				

**1. 첨부서류**

가. 부서별·월별 인원현황  
 나. 퇴직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규정 및 계산내역  
 다.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

**2. 작성요령**

가. 제수당은 세부내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조노무비구분명세표**

부서명	배부 기준	급여 분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합계
			직접 노무비계	방산	민수	간접 노무비계	방산	민수	
방산 전용 부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잡 급							
		소 계							
민수, 방산 공통 부서		·							
		·							
		·							
민수 전용 부서		·							
		·							
계									

**1. 첨부서류**

가. 공장별 · 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 · 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2. 작성요령**

가.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집계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서별 월간작업시간 집계표**

부서명 : ( )월말 현재 직접인원 : 명

작업반명	제품코드	월간생산수량	작업시간	
			방 산	민 수

**1. 작성요령**

가. 부서별로 일일작업시간 기록표를 집계하여 매월 작성한다.

나. 재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진척도를 기록한다.

다. 동일제품 생산시 소요작업시간은 민수 · 방산부문이 같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전체 제품별 월간작업시간 집계표**

( )월말 현재 방산관련 직접인원 : 명

제품코드	월간생산수량	작업시간	
		방 산	민 수

**회사전체 부서별 연간작업시간 집계표**

부서명	부서별 평균인원	작업 시간	
		방 산	민 수

**1. 작성요령**

- 가. 부서별로 일일작업시간 기록표를 집계하여 매월 작성한다.
- 나. 재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진척도를 기록한다.
- 다. 동일제품 생산시 소요작업시간은 민수 · 방산부문이 같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전체 제품별 연간작업시간 집계표**

제품코드	연간생산수량	작업 시간	
		방 산	민 수

**직접경비 구분명세표**

구 분	배부기준	금 액			
		전 체	방 산	민 수	
직 접 감 가 상각비	전 용	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 형			
		검사용계기			
		구 축 물			
	병 용	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 형			
		검사용계기			
		소 계			
지 급 임 차 료					
기 타 직접경비		(19)	(20)	(21)	
직접 경비 계		(16)	(17)	(18)	
간접 감가 상각비	구 축 물				
	비 품				
	건 물				
	차량운반구				
	소 계				
일반 관리 감가 상각비	구 축 물				
	비 품				
	건 물				
	차량운반구				
	소 계				

**1. 첨부서류**

- 가. 감가상각명세서
- 나. 자산 재평가내역
- 다. 건설자금이자 산정내역
- 라. 공장별 · 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 · 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

**2. 작성요령**

- 가. 감가상각비는 자산명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직접경비 구분명세표**

비 목	배부기준	금 액		
		전 체	방 산	민 수
설 계 비 공 사 비 시 험 검 사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개 발 비 외 주 가 공 비 보 관 비 설 치 비 및 시 운 전 비 공 식 행 사 비 기 타				
계		(19)	(20)	(21)

**1. 첨부서류**

- 가. 각 비목별 세부내역
- 나.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

**2. 작성요령**

- 가. 방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간접경비를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비목은 기타란에 기재하고, 사유를 별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연 상각 명세표**

구분	발생 연월일	세부 내역	발생금액		상각연수		당기상각액			상각 누계	잔존가액	
			결산서	조정	결산서	조정	전체	배부율	방산		전체	방산
방산												
민수 방산 공통												
민수 전용												

**1. 첨부서류**

-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

**2. 작성요령**

- 가. 발생건별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급장비명세서**

장비명	관급연월일	관 급 가 액			내용연수	연상각액
		총액	비율	관급		
관급장비				100%		
국고보조금 취득장비				00%		
계						

**1. 작성요령**

- 가. 외화장비인 경우 환율적용은 관급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나. 국고보조금 취득장비인 경우 국고보조금 부분만큼을 관급으로 본다.

**간접경비구분명세서**

비 목	배부기준	금 액			
		결산서	제 시	방 산	민 수
계			(22)	(23)	(24)

**1. 첨부서류**

-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일반관리비구분명세서**

비 목	배부기준	금 액			
		결산서	제 시	방 산	민 수
노무비 기본급 제 수 당 상 여 금 퇴직급여  수도광열비 . . . .					
계			(25)	(26)	(27)

**1. 첨부서류**

-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 나. 본사 및 지방영업소의 부서별 연평균 인원현황

**2. 작성요령**

- 가. 노무비는 임원분과 비임원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조원가 타계정대체 명세서**

대체 분개번호	대체상대 계정비목	건물	공기구	제품	· ·	계	작업 부서	배부 기준	방산	민수
	비 목									
	재 료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소 계									

**1. 첨부서류**

-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 나. 타계정대체의 근거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 가. 대체분개번호별로 기재한다.
- 나. 작업부서별, 비목별로 이 지침에서 제시한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 다. 직·간접경비는 구체적인 비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라. 대체상대계정비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세부내역**

거래처	내역	합 계		개 별 비			공 통 비			비고
		전체	방산	계	민수	방산	계	배부율 및 배부기준	방산	

**1. 첨부서류**

가. 공장별·제품별 구분회계의 경우에는 공장별·방산제품별 구분명세서를 추가한다.

**자 산 목 록**

자산코드	자 산 명	결 산 서	조 정(방산업체·제시)	
			회사전체	방 산
	I. 유형자산			
	II. 이연자산			
	자산 계			

**1. 첨부서류**

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시기, 지번, 면적, 용도 등의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원시 취득가액, 재평가차액, 자본적 지출 및 건설자금이자 발생일자와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명세서를 추가하여야 한다.

**2. 작성요령**

가. 투자자본 해당자산은 투자자본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 1. 공통기준

- 평가항목상“(재)”(재무상태표),“(손)”(손익계산서) 및“제”(제조원가명세서)로 표시된 계정과목이 외감법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경우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의 동일 계정과목 혹은 동일명의 계정과목이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계정과목의 금액을 말하며, 외감법상 감사대상이 아닌 업체 또는 적정이 외의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서 같음한다.
- 연도별 증가율 = (해당년도율-직전년도율)/직전년도율
- 2개년 평균율이라 함은 매년 산정된 율을 2년으로 산술평균하는 것이다.  
단, 1개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당해 연도 산정된 율을 말한다.
- 상대평가라 함은 제비율 산정업체별로 특정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순위를 정한 후 평가지표 평가표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실적이 없는 업체는 순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절대평가라 함은 특정 평가지표가 평가표의 일정 등급에 해당할 경우 해당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실적이 없는 업체는 등급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 평가자료는 방산부문에 해당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 당해업체의 경영노력 평가보고서 작성 세부기준은 제비율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도 이내(개산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 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점수 합계에서 20점을 감점한다.
-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평가점수 합계에 10점을 가산한다. 다만, 제비율 산정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합계에 15점을 가산한다.
- 제비율 산정년도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노력, 수출확대노력, 품질일관성유지노력, 생산성 경영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 직전연도의 수출액이 최초로 다음의 일정금액 기준을 초과한 업체(단, 최근 5년 이내에 일정금액 기준을 초과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한다) 또는 수출액이 직전 2년간의 수출액 산술평균값 대비 30% 이상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합계(10호 반영 후)에 5점을 가산한다. 이때 수출액은 Ⅱ. 항목별 평가기준 2. 수출 확대노력 라. 평가방법 설명에 따른다.

구 분	일정금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1억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5억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0억원

- 8~9호에 따른 평가점수는 원가계산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개산계약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호에 따른 평가점수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표 1-1〉 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등급	점수
1	연구개발노력	30	1	30
			2	28
			3	26
			4	24
			5	22
			6	20
			7	18
			8	16
			9	14
			10	12
			11	10
			12	8
			13	7
			14	6
			15	5
2	수출 확대노력	30	1	30
			2	28
			3	26
			4	24
			5	22
			6	20
			7	18
			8	16
			9	14
			10	12
			11	10
			12	8
			13	7
			14	6
			15	5
			16	3
3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10	(공란)	10
4	생산성 경영 노력	10	Level 4	5
			Level 5	7.5
			Level 6 이상	10
합 계		80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노력, 수출확대노력, 품질일관성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한다.

## II. 항목별 평가기준

### 1. 연구개발 노력

가. 평가목적 : 업체 수익규모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

나. 평가지표 :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2개년 평균을

다. 평가방법

-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 (연구 및 개발비 / 방산매출액(손)) × 100
- 평가 방식 :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라. 평가방법 설명

- 연구 및 개발비라 함은 개발비 당기발생액(재), 경상개발비(손, 제), 연구비(손)의 합계액을 말한다.

업체별 상대평가 (실적업체 순위/실적업체수)		평가등급
0% 초과	3% 미만	1
3% 이상	6% 미만	2
6% 이상	10% 미만	3
10% 이상	16% 미만	4
16% 이상	23% 미만	5
23% 이상	30% 미만	6
30% 이상	40% 미만	7
40% 이상	60% 미만	8
60% 이상	70% 미만	9
70% 이상	77% 미만	10
77% 이상	84% 미만	11
84% 이상	90% 미만	12
90% 이상	94% 미만	13
94% 이상	94% 미만	14
97% 이상	100%	15

### 2. 수출확대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위산업체의 가동율 상승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출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에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

나. 평가지표 :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다. 평가방법

-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수출실적은 없으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방산 전시회 참가경력이 있는 경우 16등급으로 평가한다.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가등급
40% 이상		1
37% 이상	40% 미만	2
33% 이상	37% 미만	3
30% 이상	33% 미만	4
27% 이상	30% 미만	5
23% 이상	27% 미만	6
20% 이상	23% 미만	7
17% 이상	20% 미만	8
14% 이상	17% 미만	9
12% 이상	14% 미만	10
10% 이상	12% 미만	11
8% 이상	10% 미만	12
5% 이상	8% 미만	13
3% 이상	5% 미만	14
0% 초과	3% 미만	15
수출실적 없으나,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국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실적 있음		16

라. 평가방법 설명

- 수출액은 방산물자의 수출액과 국방과학기술 수출액(「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의 범위에 플랜트, 상품, 부품 및 원재료 등의 수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방산매출액에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방산매출액에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을 더한 금액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산물자의 품질 보장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업체의 노력을 평가하여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나. 평가방법

- 국방품질경영시스템(KDS0050-9000) 인증 여부
- 해당 사업의 분야(연구개발, 양산, 정비 등을 말한다)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상의 인증범위(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정한 대분류 까지를 의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지침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업체는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개산계약(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생산성 경영 노력

가. 평가목적 : 방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노력을 평가하여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나. 평가방법 : 「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한 생산성 경영 인증 여부

다. 평가지침 : 생산성경영 인증 업체에는 인증 등급에 따라 다음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개산계약(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의 방산제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계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분	평가점수			
	Level 3	Level 4	Level 5	Level 6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5	7.5	10	10
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5	7.5	10

#### 【별지 4】

#### 제1호 서식

### 경영노력평가항목별 점수 총괄표

번호	평가항목	등급	점수
1	연구개발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2	수출확대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3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	(공란)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4	생산성 경영 노력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소계(A)	(공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여부 (B)	(공란)	(중소기업 등은 50% 가산후)
	원가부정행위 유무(C)	(공란)	
	최초수출 또는 30% 이상 수출증가(D)	(공란)	
	총계(A+B+C+D)	(공란)	

#### 제2호 서식

### 1. 연구개발노력

단위 : 천원, %

구 분	연구 및 개발비			방산매출액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X-1년	X년	계	X-1년	X년	계	X-1년	X년	평균
연구개발 노력									

1. 연구 및 개발비 : 개발비 당기 발생액, 경상개발비(손, 제), 연구비(손)의 합계액

2. 방산매출액 대비 연구 및 개발비율 = (연구 및 개발비 / 방산매출액(손)) × 100

## 2. 수출확대노력

단위 : 천원, %

구 분	수출액			방산매출액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X-1년	X년	계	X-1년	X년	계	X-1년	X년	평균
수출확대 노력									

- 수출액 : 방산물자 수출액(제비율의 수익과 대응되는 수출액) 및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방과학기술 수출액
- 방산매출액에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방산매출액에 국방과학기술 수출액을 더한 금액 대비 수출액 비율

## 방산물자 감손을 산정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70호(2006. 12. 28.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17호(2008. 6. 11.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8호(2012. 7.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6호(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23호(2013. 3. 25.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366호(2017. 3. 20.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7조에 의한 단위당 재료소요량 산정을 위한 방산물자 감손을 산정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산물자 감손율(이하 감손율이라고 한다.) 산정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감손율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편람 발간
- 감손율 산정업무와 방산업체에 대한 감손업무 관련 교육
-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선정·관리 및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에게 조사 의뢰
- 기품원장에게 통보받은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결과 반영
- 감손율 산정관련 기술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기품원장에게 기술지원요청 및 사실 확인 의뢰
- 적용년도 개시 전까지 관련기관에 감손율 산정결과 통보
- 원가검증시 제10조에 의한 실발생 감손율 반영
- 원가검증시 작업설물의 매각가치액을 평가하여 반영

② 재정정보화기획관은 감손율 산정관련 전산정보처리업무를 지원한다.

③ 기품원장은 감손율 산정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④ 방산업체는 감손율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증빙한다.

### 제 2 장 감손율 산정 대상 및 방법

**제5조(감손율 산정대상 및 인정범위)** ① 감손율 산정대상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한 실적에 있는 품목의 완제품, 부품, 반제품으로 한다.

② 정상적 감손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정상적 감손은 제외한다.

- 작업자(작업환경포함) 부주의로 인한 감손
- 저급재료, 마모된 절단공구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감손
- 정비불량 등 기계의 비능률적인 작동으로 발생하는 감손
- 재료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감손
- 기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을 때 통제가 가능한 감손 등

③ 감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
2. 완전 폐기되는 품질 불합격 수량
3. 재사용이 불가능한 파괴시료. 단, 계약금액으로 지불된 시료는 제외.

**제6조(산정주기)** 감손을 산정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회 이하 제출실적이 있는 품목은 매년 산정한다.
2. 7회 이상 제출실적이 있는 품목은 매3년마다 산정한다. 다만, 기술변경 등 제조환경의 변화로 감손량이 현저히 증감된 경우에는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산정 단위)** ① 감손을 산정단위는 원가검증시 적용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손실률은 불량률과 시료율 산정단위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감손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4자리까지 표시하고, 단위당 재료 소요량은 소수점 6자리까지 표시한다.

**제8조(감손율 산정구분 및 방법)** ① 감손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 감손유형별 : 손실률, 공정불량률, 조립불량률, 규격시료율, 규격외 시료율
2. 생산방법별 : 화학공정, 기계가공, 외부구입, 외주가공.
- ② 단위당 재료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감손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실률은 손실량을 제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손실량은 원재료의 투입량과 제품수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2. 불량률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불량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시료율은 당기 조사대상 기간 중 발생한 시료량을 완성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제13조의 신뢰도를 적용하여 감손율을 산정할 때에는 손실률은 손실량에, 불량률은 불량량에, 시료율은 시료량에 신뢰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9조(적용년도 감손율 산정)**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방산업체로부터 매 산정년도(X-1년) 7월 31일까지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받아 적용년도(X년) 감손율을 산정한다. 다만,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감손율을 산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년도 감손율을 산정한다.

1. 손실률 : 과거 산정실적 중 최저치를 상한으로 하여 산정
2. 시료율 : 국방규격 시료량을 인정하여 산정(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불량률 : 불인정
- ③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지연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 제출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료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는지 여부
  4.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였는지 여부
- ④ 감손율 조사표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받으며, 필요시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방산업체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원가정산품목 등 감손율 산정)** ①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기품원장의 감손발생 사실을 확인받아 원가검증시 산정·반영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개산계약 형태의 원가정산품목
2. 함 건조 및 항공기 제작, 시험제작 등과 같은 주문생산품목
3. 소량생산품목
4. 신규품목
- ②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제 3 장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와 신뢰도 계산

**제11조(표본추출과 중점관리대상품목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표본추출은 원가회계검증단장이 수행하며, 업체가 제출한 전체품목(부품)을 대상으로 [별표2]의 표본추출기준표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하고, 조사표에서 생산방법별로 불량금액을 계산하여 이 값을 내림치순으로 분류한 후 전체품목(부품) 중 50% 순위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② 중점관리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공정, 기계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10% 이상인 품목
2. 외부구입, 외주가공은 불량률, 시료율이 5% 이상인 품목
3. 실적대비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이 10% 이상 높아졌거나 그 금액이 현저히 증가된 품목

③ 표본으로 추출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기품원장에게 통보된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은 수정할 수 없다.

**제12조(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① 기품원장(담당부서장)은 원가회계검증단장이 통보한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지침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검증 및 감손발생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해당업체는 관련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② 기품원장(담당부서장)은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결과를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품목내역서에 수정·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별표3]의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사의뢰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신뢰도)** ① 제12조에 의한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를 업체별, 감손유형별, 생산방법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신뢰도 계산은 표본조사품목 조사결과 값의 합에 업체 제출 자료 값의 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계산된 신뢰도가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조정한다.

### 제 4 장 감손율의 확정 및 적용

**제14조(인정손실률)** ① 인정손실률은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은 제8조 제2항 제1호,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인정불량률)** ① 인정불량률은 신규품목(부품)과 기존품목(부품),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은 제8조 제2항 제2호,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산된 불량률에 신규품목(부품)은 [별표4]를 적용하고, 기존품목(부품)은 [별표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6조(인정시료율)** ① 인정시료율은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과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은 제8조 제2항 제3호,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감손율의 적용)** ①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감손율은 직접재료비에 적용한다. 다만, 시험제작품목 생산시 발생한 감손량은 당해 직접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에 포함한다.

② 작업설물은 그 매각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원가검증시 차감한다.

③ 방산물자 복수지정업체의 경우에는 업체별 감손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립불량률은 지정업체 중 최저 불량률을 적용한다.

**제18조(단위당 재료소요량)** 단위당 재료소요량은 제품순량×감손율로 생산방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화학공정은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하고, 단위당 원부자재투입량은 자재 구입 총투입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기계가공은 제품순량×(1+인정손실률)×(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3. 외부구입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4. 외주가공은 제품순량×(1+인정불량률+인정시료율)로 산정한다. 단, 재료를 주문업체가 관리하고 손실률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계가공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제19조(직접재료비의 계산)** 직접재료비의 계산은 단위당 재료소요량×납품예정수량×재료의 단위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 제 5 장 산정결과 통보 및 기타

**제20조(감손율 산정내역서 작성 및 결과통보)** ① 이 지침에 따라 산정된 감손율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세부산정 내역서를 출력하여 업체별 감손율 산정 내역서를 작성한다.

② 산정결과는 산정년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 및 업체에 통보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게시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지나서 감손율 조사표를 제출한 방산업체에 대한 산정결과는 산정이 완료된 후에 통보·게시한다.

**제21조(감손율 적용의 예외)** ① 방산업체가 원가검증 시점까지 감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② 제12조 제1항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해당품목(부품)의 감손율 적용을 배제한다.

**제22조(불량률 산정방법의 개정주기)** 신규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별표4]과 기존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 [별표5]의 개정주기는 5년 이하로 한다.

**제23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86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23호, 2013. 3. 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366호, 2017. 3. 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손"이라 함은 공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실, 불량, 시료로 구분되며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유·무형의 상태로 소진된 것을 말한다.
2. "감손율 조사표"라 함은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감손율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처리장치내의 일정한 양식을 말한다.
3. "기계가공"이라 함은 생산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공구를 이용해서 투입된 재료를 절삭, 단조 등의 수단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주로 가공후에는 설물이 발생한다.
4. "기술변경"이라 함은 규격제정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등의 변경을 말한다.
5. "기존부품(품목)"이라 함은 초도양산이후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을 말한다.
6. "불량"이라 함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형태, 성질, 기능이 본래 목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제품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불량과 조립 및 최종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립불량으로 구분한다.
7. "비정상적 감손"이라 함은 능률적인 작업조건하에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감손을 말한다.
8. "산정년도(X-1년)"라 함은 전년도(X-2년) 생산실적에 대한 조사표를 제출하는 연도를 말한다.
9. "손실"이라 함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이 될 때까지 증발 또는 설물로 발생된 것으로 제품 1단위당 투입량과 제품순량의 차를 말한다.
10. "시료"라 함은 시험이나 검사분석을 하기 위해 로트로부터 채취되는 검사단위로서 규격시료와 규격의 시료로 나눌 수 있으며, 규격시료는 해당장비규격(국방규격, MIL-SPEC등)에 의한 일정량의 시료이고 규격의 시료는 품질향상 등을 위해 기여되는 시료를 말한다.
11. "신규업체"라 함은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자료를 처음 제출하거나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제도를 처음 적용 받고자 하는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12. "신규품목"이라 함은 제품의 형태, 용도, 재질, 기능등이 새로운 규격서에 의해 계약되어 생산하는 제품의 품목으로 처음으로 방산물자의 감손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품목을 말한다.
13. "신뢰도"라 함은 표본조사한 부품들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 정도를 말한다.
14. "실발생 불량"이라 함은 원자재 및 재료의 투입시점부터 제품이 완전 조립되어 합격통지서가 업체에 통보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공정특성상 정상적으로 발생된다고 인정된 불량을 말한다.
15. "완성품"이라 함은 완성품으로 최종 합격된 수량으로 당해 연도 총생산량에서 불량수량과 시료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말한다.
16. "외부구입(외부도입)"이라 함은 생산업체가 기업 외부로부터 국내구입 또는 수입등의 수단으로 부품 또는 결합체를 조립하여 생산하는 활동으로 조립불량과 시료만이 발생한다.
17. "외주가공"이라 함은 계약품목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계약업체 외부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가공처리하게 하는 활동으로 주로 조립불량과 시료가 발생하며 계약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18. "인정불량률"이라 함은 업체에서 제출한 감손율자료가 감손율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된 불량률을 말한다.
19. "인정손실률"이라 함은 업체에서 제출한 감손율자료가 감손율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실률을 말한다.
20. "인정시료율"이라 함은 업체에서 제출한 감손율자료가 감손율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된 시료율을 말한다.
21. "작업설물"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중 또는 가공후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원재료의 쓰레기·절삭편·가루 등 재료의 폐물로 작업폐물을 말한다.
22. "적용년도(X년)"라 함은 산정년도에 산정된 감손율을 적용하는 연도를 말한다.
23. "정상적 감손"이라 함은 능률적인 작업조건하에서 발생하는 감손으로 대체로 제품생산시에 수반되는 감손을 말한다.
24. "제품순량"이라 함은 정미량, 순중량, 부품순량과 같은 의미로 재료를 투입하여 제품 또는 부품을 가공하였을 때 투입한 재료가 제품 또는 부품에 구성된 순수한 양을 말한다.
25. "표본 수"라 표본추출기준표에 의한 표본의 수를 말한다.
26. "표본조사 부품"이라 함은 표본으로 추출되어 표본조사한 부품을 말한다.
27. "화학공정"이라 함은 생산업체가 구입한 원료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또 다른 원료, 재료, 부품 또는 구성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주로 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28. "원가검증"이라 함은 대상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제반 비용요소에 대한 분석, 비교, 확인 작업을 통해 그 합리성(reasonability)과 적정성(propriety)을 입증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 행위를 말한다.



【별지 2】

**표본추출 기준표**

※ 모집단의 수 = 업체가 제출한 품목수

모집단의 수	표본수	모집단의 수	표본수	모집단의 수	표본수
1	1	55	29	(800)	57
2	1	59	30	(1000)	57
3	2	63	31	1025	58
4	3	67	32	1463	59
5	4	72	33	(1500)	59
6	5	77	34	(2000)	59
7	6	82	35	2494	60
8	7	87	36	2750	60
10	8	93	37	3500	60
11	9	100	38	4500	60
12	10	107	39	5500	60
14	11	115	40	6750	60
15	12	124	41	7824	61
17	13	133	42	8000	61
19	14	144	43	9500	61
20	15	155	44	11000	61
22	16	168	45		
24	17	183	46		
26	18	200	47		
28	19	219	48		
30	20	242	49		
32	21	268	50		
35	22	300	51		
37	23	338	52		
40	24	385	53		
43	25	444	54		
46	26	522	55		
49	27	629	56		
52	28	783	57		

【별표 3】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검토의견서

**방산물자 감손율 표본조사품목 및 중점관리대상품목 조사 검토의견서**

1. 조사대상업체 :
2. 조사센터 :
3. 자료접수일 :
4. 조사기간 :
5. 조사담당자 : (전화번호 : )
6. 조사대상품목(부품)수 :

구분	계	화학공정	기계가공	외부구입	외주가공
표본조사 품목(부품)					
중점관리 대상품목(부품)					

7. 확인결과(수정사항)

【별지 4】

**신규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

범 위	화학공정 기계가공 외부구입(외주가공)		적 용 공 식
	7.0 6.0 2.5	X	
0.0 < X < 6.0			$Y = 1.0 X$
7.0 < X < 11.0			$Y = 0.75 X + 1.750$ $Y = 0.75 X + 1.500$ $Y = 0.75 X + 0.625$
14.0 < X < 67.5			$Y = 0.6121 X + 3.6806$ $Y = 0.6239 X + 2.8871$ $Y = 0.6298 X + 1.1059$
67.5 < X < 30.0			$Y = 45.0$ $Y = 20.0$

※ 실발생 불량률 : X, 인정 불량률 : Y

【별지 5】

**기존품목(부품)의 불량률 산정방법**

범 위	적 용 공 식		
	1 단계	2 단계	
$X < D$	$Z = \max [X, D/3]$	$Y = \min [Z, a]$	
$X = D$	$Z = D$		
$X > D$	화학,기계 ( $D < 2.0408$ )		$Z = \min [1.5D + 3, X]$
	외부구입(외주가공) ( $D < 1.0101$ )		$Z = \min [1.5D + 1.5, X]$
$X > D$	화학,기계 ( $D \geq 2.0408$ )	$Z = \min [(3 X + D)/4, 3 D]$	
	외부구입(외주가공) ( $D \geq 1.0101$ )		

〈용어설명〉

- 전년도 불량률 : D
- 실발생 불량률 : X
- 인정 불량률 : Y

- 불량률 상한값 : a =

- 화학공정 : 45%
- 기계가공 : 45%
- 외부구입 : 20%
- 외주가공 : 20%

단, 전년도 자료 미제출 및 중단품목인 경우(조사표의 '제출회차'란에 88로 기재한 경우) 신규품목(부품) 산정공식을 적용하며 불량률 상한 값은 화학공정 7%, 기계가공 6%, 외부구입, 외주가공 2.5%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에 수록된 내용 중 의문점이 있거나 보완할 사항 또는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함정항공원가분석팀

• **전 화** : 02-2079-4883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 발간을 위하여  
다음 분들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 **편 집 위 원 장** : 원가회계검증단장 고위공무원 김형택

◆ **책임편집위원** : (서기관) 손은주

◆ **편 집 위 원** : (서기관) 이정식, (사무관) 김필중, (사무관) 박현기,  
(주무관) 최효경, (주무관) 이윤한, (주무관) 장복동,  
(주무관) 양승호, (주무관) 정윤정, (소 령) 김 강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처 : 방위사업청

인쇄처 : 인애의창 (02)793-4332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 내 서**

